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의장

람

제1846호 2024. 6. 10.(월)

차 례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17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1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18호 도시관리계획(인천검단지구택지개발사업(준공1·2단계)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6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19호 도시관리계획(당하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75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159호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차량 공고 ————— 115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4-117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6. 1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변경·폐지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반월로 97-1 외 16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변경·폐지 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 유
		별 도 열 략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4. 6. 10.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24-6-10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330	인천광역시 서구 반월로 97-1 (오류동)	20090922	반월이라는 옛 마을이름에서 유래	
2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329	인천광역시 서구 반월로 97 (오류동)	20090922	반월이라는 옛 마을이름에서 유래	
3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218-24	인천광역시 서구 드림로 193 (백석동)	20150806	경인 아라뱃길(수로) 건설로 일부구간을 철거 및 폐쇄하고 신규 우회하는 도로 개설로 인한 도로구간 변경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조서

고시일 : 2024-06-10

연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1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246번길 7 (오류동)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246번길 5 (오류동)	소유자 신청	20081231	원당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4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조서

고시일 : 2024-06-10

연번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10번길 16 (마전동)	건물말소	20081231	완정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	인천광역시 서구 드림로 374 (당하동)	건물말소	20150806	경인 아라뱃길(수로) 건설로 일부구간을 철거 및 폐쇄하고 신규 우회하는 도로 개설로 인한 도로구간 변경	
3	인천광역시 서구 드림로 366 (당하동)	건물말소	20150806	경인 아라뱃길(수로) 건설로 일부구간을 철거 및 폐쇄하고 신규 우회하는 도로 개설로 인한 도로구간 변경	연일종합철강
4	인천광역시 서구 드림로 386 (당하동)	건물말소	20150806	경인 아라뱃길(수로) 건설로 일부구간을 철거 및 폐쇄하고 신규 우회하는 도로 개설로 인한 도로구간 변경	
5	인천광역시 서구 탁옥로51번길 13-15 (심곡동)	건물말소	20090922	탁옥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1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6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 45-27 (석남동)	건물대장 말소	20090922	이 도로의 종점 부근이 옛 건지골을 지나므로 명명(건지는 옛날 이 지역에 있던 마른 연못)	
7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95번길 1 (석남동)	건물대장 말소	20090922	건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9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8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77번길 16 (가좌동)	건물대장 말소	20090922	가정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가좌1치안센터
9	인천광역시 서구 신석로 37 (석남동)	건축물 철거	20090922	도로구간 내의 신현동과 석남동의 머릿글자를 따 명명	
10	인천광역시 서구 신석로 39 (석남동)	건축물 철거	20090922	도로구간 내의 신현동과 석남동의 머릿글자를 따 명명	
11	인천광역시 서구 을도로42번길 36-5 (석남동)	건축물 철거	20090922	을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2	인천광역시 서구 을도로42번길 36-7 (석남동)	건축물 철거	20090922	을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3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149-1 (오류동)	가설건축물 철거	20090710	검데이'가 검단으로 변천한 것으로 옛 지명 부여 및 검단신도시 중심을 가로 지르는 도로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4-118호

도시관리계획(인천검단지구택지개발사업(준공1·2단계)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준공1·2단계)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서구청(도시계획과, ☎ 032-560-6873)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4. 6. 1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I. 결정(변경)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마목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II.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1318-3번지 일원

III.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금회 변경되는 부분만 표시하며 인천검단지구 준공1·2단계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는 별도 첨부

1.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없음)

나.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가)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 없음)

나)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1) 교통시설(변경)

(가) 도로(변경)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1	205	11	국지도로	84	중로2-451 (당하동 1319도)	2호 어린이공원 (당하동 1318-9공)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변경	소로	1	205	11	국지도로	100	중로2-451 (당하동 1319도)	2호 어린이공원 (당하동 1318-9공)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 도로 결정(변경) 조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소로 1-205	소로 1-205	· 회차공간 조성 · 폭원 : 11.0m · 연장 : 84.0m(기정) → 100.0m(변경) 증) 16.0m (회차면적: 182.3㎡)	· 소로1-205호선의 원활한 차량순환을 위하여 회차공간 조성

(2) 공간시설(변경)

(가) 광장(변경없음)

(나) 공원(변경)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2	해든공원	어린이 공원	인천시 서구 당하동 1318-9 공	8,251.8	감)182.3	8,069.5	국고2015-760 (15.10.27)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번호	공원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2	해든공원	· 공원면적 축소 (감 182.3㎡) - 면적 : 8,251.8㎡(기정)→ 8,069.5㎡(변경)	· 소로1-205호선의 회차공간 조성에 따른 공원면적 축소

2)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없음)

3) 특별계획구역의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없음)

IV. 지형도면: 게재 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1·2단계)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전체	1,2단계	전체	1,2단계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불로동, 원당동, 마전동 일원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원당동, 마전동 일원	11,105,908.4	4,124,783.4	-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2-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2-1-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2-1-1-1 용도지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 계		4,124,783.4	100.0	
주 거 지 역	소 계	3,083,726.6	74.8	
	제1종전용주거지역	60,474.9	1.5	
	제1종일반주거지역	223,628.0	5.5	
	제2종일반주거지역	14,173.7	0.3	
	제3종일반주거지역	2,248,101.6	54.5	
	준주거지역	537,348.4	13.0	
상 업 지 역	소 계	236,279.8	5.7	
	일반상업지역	236,279.8	5.7	
녹 지 지 역	소 계	804,777.0	19.5	
	보전녹지지역	27,640.2	0.7	
	자연녹지지역	777,136.8	18.8	

2-1-1-2 용도지구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제한내용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보호지구	역사문화환경 보호지구	인천시 서구 원당동 산82-1임 일원	인천시 도시계획조례 제58조 제1항에 따름	18,383	-	18,383	국고제2021-1171호 (21.10.26.)	

2-1-2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2-1-2-1 교통시설(변경)

(1) 도로(변경)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광로	3	23	40 (40~52)	주간선도로	7,167 (2,932)	동측행정구역계 (원당동 8-2답)	중 2-495 (마전동 499-3도)	일반도로		인고98-118 (98.6.12)	선형변경 교통광장81 중복결정
기정	대로	2	61	30 (20~39)	주간선도로	12,035 (2,885)	계양구 평동 25-5 김포시계	서구 왕길동 63-9	일반도로		인고98-118 (98.6.12)	
기정	대로	2	78	33.5 (33.5~54.3)	주간선도로	5,496	남측 지구계 (당하동 478-1잡)	광 3-27 (블로동 505-6답)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기정	대로	3	154	26.5 (26.5~29.5)	보조간선도로	465	대 2-78 (원당동 1017도)	동측 지구계 (원당동 산1-1입)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기정	중로	1	408	20 (20~22)	집산도로	1,571	대 2-78 (당하동 1277도)	중 1-413 (원당동 1087도)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하천1 중복결정
기정	중로	1	409	20	집산도로	379	대 2-78 (당하동 1277도)	중 1-411 (당하동 1273도)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기정	중로	1	410	20	국지도로	332	중 1-411 (당하동 1273도)	중 1-513 (당하동 1271도)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기정	중로	1	411	23.5 (23.5~30.5)	보조간선도로	1,287	광 3-23 (당하동 1228도)	대 2-61 (당하동 661-17대)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하천2 중복결정
기정	중로	1	412	23.5	보조간선도로	541	대 2-78 (당하동 1238도)	중 1-411 (당하동 1234도)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기정	중로	1	413	23.5 (23.5~30)	보조간선도로	1,061	대 2-78 (당하동 1238도)	대 3-153 (원당동 2-8답)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하천1 중복결정 중로2-944 호선 중복결정
기정	중로	1	414	20 (20~26)	집산도로	470	광 3-23 (원당동 1036도)	중 1-413 (원당동 1087도)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하천1 중복결정
기정	중로	1	415	21	집산도로	304	대 2-78 (원당동 1017도)	중 1-418 (원당동 1025도)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기정	중로	1	416	20 (20~21)	집산도로	434	대 2-78 (원당동 1017도)	중 1-417 (원당동 1019도)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기정	중로	1	417	23.5 (23.5~29.5)	보조간선도로	994	광 3-23 (원당동 1044도)	대 2-78 (원당동 1017도)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기정	중로	1	418	23.5 (23.5~30.6)	집산도로	538	광 3-23 (원당동 1036도)	중 1-421 (원당동 1023도)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기정	중로	1	419	23.5 (23.5~26.5)	집산도로	1,179	동측지구계 (원당동 11-2답)	대 3-154 (원당동 988도)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기정	중로	1	420	20	집산도로	31	중 1-419 (원당동 1013도)	대 김포3-8 (원당동 1010도)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기정	중로	1	421	20 (20~26)	집산도로	364	대 2-78 (원당동 1017도)	중 1-419 (원당동 1013도)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기정	중로	1	422	20	집산도로	393	대 2-78 (원당동 1017도)	중 1-417 (원당동 1019도)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기정	중로	1	423	26.5	집산도로	436	중 1-421 (원당동 1023도)	대 3-154 (원당동 988도)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기정	중로	1	502	20	집산도로	606	광 3-23 (마전동 520-5도)	대 2-61 (당하동 847-1전)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기정	중로	1	503	20	집산도로	610	대 2-61 (당하동 835-4구)	남측지구계 (당하동 1003-9구)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기정	중로	1	512	23.5 (23.5~29.5)	국지도로	1,368	중 1-411 (당하동 1234도)	중 1-504 (당하동 750-11잡)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기정	중로	1	513	21	집산도로	614	대 2-61 (당하동 666-2답)	중 1-512 (당하동 1255도)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2	449	16 (16~19)	집산도로	436	대2-78 (당하동 1277도)	중 1-408 (당하동 1307도)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하천1 중복결정
기정	중로	2	450	16	집산도로	386	대2-78 (당하동 1277도)	중 2-449 (당하동 1315도)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기정	중로	2	451	16 (16~18)	집산도로	467	대2-78 (당하동 1277도)	중 1-411 (당하동 1273도)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기정	중로	2	452	16	국지도로	314	중 1-412 (당하동 1244도)	중 2-451 (당하동 1319도)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기정	중로	2	453	15	국지도로	483	중 1-413 (원당동 1087도)	중1-414 (원당동 1062도)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하천1 중복결정
기정	중로	2	454	16.5	집산도로	435	대2-78 (원당동 1017도)	중 1-414 (원당동 1062도)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기정	중로	2	455	16.5	집산도로	85	광 3-23 (원당동 1036도)	중 2-454 (원당동 1066도)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기정	중로	2	456	16.5	집산도로	266	대2-78 (당하동 1238도)	광 3-23 (당하동 1228도)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기정	중로	2	457	16.5	국지도로	238	중 1-418 (원당동 1025도)	중 2-458 (원당동 1029도)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기정	중로	2	458	16.5	집산도로	167	광 3-23 (원당동 1036도)	중 1-415 (원당동 1027도)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기정	중로	2	459	16.5	국지도로	273	중 2-457 (원당동 1034도)	중 2-458 (원당동 1029도)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기정	중로	2	460	16.5	국지도로	515	중 1-416 (원당동 1037도)	중 1-416 (원당동 1037도)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기정	중로	2	461	16.5	국지도로	214	중 2-460 (원당동 1039도)	중 2-460 (원당동 1039도)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기정	중로	2	462	15	국지도로	248	중 1-419 (원당동 1013도)	동측지구계 (원당동 1010도)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기정	중로	2	496	16	국지도로	213	중1-502 (마전동 203-1입)	서측지구계 (당하동 910-4장)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기정	중로	2	819	15	국지도로	291	중1-503 (당하동 805-1도)	중2-498 (당하동 765-33대)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기정	중로	3	551	12.5	국지도로	262	중 2-450 (당하동 1285도)	소3-242 (당하동 1286-12도)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기정	중로	3	552	12.5	국지도로	300	중 1-413 (당하동 1279도)	중 2-450 (당하동 1285도)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기정	중로	3	553	13	국지도로	326	중 3-555 (당하동 1245도)	중 3-553 (당하동 1247도)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기정	중로	3	554	13	국지도로	20	중 3-555 (당하동 1245도)	중 3-553 (당하동 1247도)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기정	중로	3	555	12.5	국지도로	262	중 1-412 (당하동 1244도)	중 1-411 (당하동 1234도)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기정	중로	3	556	13	국지도로	22	중 1-419 (원당동 1013도)	중3-557 (원당동 996도)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기정	중로	3	557	13	국지도로	183	중 2-462 (원당동 994도)	소 3-239(원당) (원당동 1009도)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기정	중로	3	572	12	국지도로	180	중1-502 (마전동 522-5대)	소 1-209(마전) (마전동 545-4대)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기정	소로	1	209	10	국지도로	162	22호 경관녹지 (마전동 542답)	22호 경관녹지 (마전동 산81-14입)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마전
기정	소로	1	201	10	특수도로	106	원당동 1082-3대 (원당동 1082-3대)	4호 어린이공원 (원당동 1067-6공)	보행자도로		국고15-760 (15.10.27)	원당 하천1 중복결정
기정	소로	1	202	10	특수도로	56	당하동 1241-1대 (당하동 1241-1대)	2호 일반광장 (당하동 1235-5장)	보행자도로		국고15-760 (15.10.27)	원당 하천2 중복결정
기정	소로	1	203	10	국지도로	23	중 2-456 (당하동 1236도)	2호 일반광장 (당하동 1235-5장)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원당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1	204	10	특수도로	108	13호 경관녹지 (당하동 1235-11공)	광 3-23 (당하동 1228도)	보행자도로		국고15-760 (15.10.27)	원당
기정	소로	1	205	10	특수도로	48	광 3-23 (원당동 1044도)	중 2-460 (원당동 1039도)	보행자도로		국고15-760 (15.10.27)	원당
기정	소로	1	206	10	특수도로	193	중 2-460 (원당동 1039도)	3호 일반광장 (원당동 1043잡)	보행자도로		국고15-760 (15.10.27)	원당
기정	소로	1	207	10	특수도로	41	광 3-23 (원당동 1044도)	중 2-460 (원당동 1039도)	보행자도로		국고15-760 (15.10.27)	원당
기정	소로	1	208	10	특수도로	50	대 2-78 (원당동 1017도)	중 2-460 (원당동 1039도)	보행자도로		국고15-760 (15.10.27)	원당
기정	소로	1	209	10	특수도로	93	중 2-458 (원당동 1029도)	대 2-78 (원당동 1017도)	보행자도로		국고15-760 (15.10.27)	원당
기정	소로	1	210	10	특수도로	94	중 1-419 (원당동 1013도)	대 (김포)3-8 (원당동 1010도)	보행자도로		국고15-760 (15.10.27)	원당
기정	소로	1	214	10	특수도로	160	중 2-460 (원당동 1039도)	중 1-417 (원당동 1019도)	보행자도로		국고18-335 (18.06.18)	원당
기정	소로	1	219	10	특수도로	60	중1-414 (원당동 1062도)	7호 어린이공원 (원당동 1065-1공)	보행자도로		국고19-967 (20.1.16)	원당
기정	소로	1	201	10	국지도로	13	대 2-61 (당하동 661-12도)	남측지구계 (당하동 660-4답)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당하
기정	소로	1	202	11	국지도로	63	중 1-408 (당하동 1307도)	동측지구계 (당하동 416도)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당하
기정	소로	1	203	11	국지도로	140	대2-78 (당하동 1277도)	6호 소공원 (당하동 1276-3공)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당하
기정	소로	1	204	12.5	국지도로	161	대2-78 (당하동 1238도)	중 1-412 (당하동 1244도)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당하
기정	소로	1	205	11	국지도로	84	중 2-451 (당하동 1319도)	2호 어린이공원 (당하동 1318-9공)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당하
변경	소로	1	205	11	국지도로	100	중 2-451 (당하동 1319도)	2호 어린이공원 (당하동 1318-9공)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당하
기정	소로	1	206	10	특수도로	149	중 1-411 (당하동 1273도)	4호 근린공원 (당하동 1272-1공)	보행자도로		국고15-760 (15.10.27)	당하
기정	소로	1	208	11 (8~11)	국지도로	74	소 1-209(당하) (당하동 1253도)	원당지구 동측구역계 (당하동 391도)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당하
기정	소로	1	209	11	국지도로	733	중 1-411 (당하동 1234도)	원당지구 동측구역계 (당하동 354답)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당하
기정	소로	1	211	11	국지도로	195	중1-503 (당하동 789대)	중2-819 (당하동 794전)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당하
기정	소로	1	212	11	국지도로	144	중1-503 (당하동 788대)	당하동 820-2대 (당하동 820-2대)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당하
기정	소로	1	213	10	특수도로	65	광 3-23 (당하동 1228도)	소 1-209(당하) (당하동 1253도)	보행자도로		국고19-967 (20.1.16)	당하 하천2
기정	소로	2	201	8	국지도로	443	중 1-414 (원당동 1062도)	중2-201(원당) (원당동 1080도)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원당
기정	소로	2	203	8	국지도로	68	소 2-201(원당) (원당동 1080도)	소 2-201(원당) (원당동 1080도)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원당
기정	소로	2	204	8	국지도로	61	소 2-201(원당) (원당동 1080도)	소 2-201(원당) (원당동 1080도)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원당
기정	소로	2	205	8	국지도로	50	소 2-201(원당) (원당동 1080도)	소 2-201(원당) (원당동 1080도)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원당
기정	소로	2	207	8 (8~11)	국지도로	383	광 3-23 (당하동 1044도)	소 2-208(원당) (원당동 1057도)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원당
기정	소로	2	208	8	국지도로	126	소 2-207(원당) (원당동 1046도)	원당지구 동측구역계 (원당동 신87묘)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원당
기정	소로	2	209	8	국지도로	89	소 2-207(원당) (원당동 1046도)	소 2-207(원당) (원당동 1046도)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원당
기정	소로	2	210	8	국지도로	73	소 2-207(원당) (원당동 1046도)	소 2-207(원당) (원당동 1046도)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원당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2	211	8	국지도로	53	소 2-207(원당) (원당동 1046도)	소 2-207(원당) (원당동 1046도)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원당
기정	소로	2	212	8	국지도로	18	소 2-207(원당) (원당동 1046도)	원당지구 동측구역계 (원당동 산87묘)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원당
기정	소로	2	215	8	국지도로	246	중3-557 (원당동 996도)	중 2-462 (원당동 994도)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원당
기정	소로	2	216	8	국지도로	72	중3-557 (원당동 996도)	소 2-215(원당) (원당동 999도)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원당
기정	소로	2	217	8	국지도로	101	소 2-216(원당) (원당동 1006도)	소 2-219(원당) (원당동 998도)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원당
기정	소로	2	218	8	국지도로	84	소 2-215(원당) (원당동 999도)	소 2-219(원당) (원당동 998도)	보행자 우선도로		국고15-760 (15.10.27)	원당
기정	소로	2	219	8	국지도로	153	중 3-557 (원당동 996도)	소 2-215(원당) (원당동 999도)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원당
기정	소로	2	220	8	국지도로	225	중 2-462 (원당동 994도)	소 2-221(원당) (원당동 990도)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원당
기정	소로	2	221	8	국지도로	268	중 2-462 (원당동 994도)	소 2-220(원당) (원당동 992도)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원당
기정	소로	2	222	8	국지도로	20	중2-454 (원당동 1066도)	소 2-201(원당) (원당동 1080도)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원당
기정	소로	2	223	8	국지도로	20	중2-454 (원당동 1066도)	소 2-201(원당) (원당동 1080도)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원당
기정	소로	2	201	8	국지도로	110	소 2-202(당하) (당하동 1296도)	소 2-204(당하) (당하동 1294도)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당하
기정	소로	2	202	8	국지도로	91	중 2-449 (당하동 1315도)	소 2-204(당하) (당하동 1296도)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당하
기정	소로	2	203	8	국지도로	108	소 2-202(당하) (당하동 1296도)	소 2-204(당하) (당하동 1303도)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당하
기정	소로	2	204	8	국지도로	137	중 2-450 (당하동 1285도)	중3-551 (당하동 1287도)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당하
기정	소로	2	205	8	국지도로	133	소 2-204(당하) (당하동 1294도)	소 2-206(당하) (당하동 1294도)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당하
기정	소로	2	206	8	국지도로	113	중3-551 (당하동 1287도)	소 2-204(당하) (당하동 1296도)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당하
기정	소로	2	207	8	국지도로	101	소 2-204(당하) (당하동 1303도)	소 2-206(당하) (당하동 1294도)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당하
기정	소로	2	208	8	국지도로	38	소 2-210(당하) (당하동 1257도)	원당지구 동측구역계 (당하동 188구)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당하
기정	소로	2	209	8	국지도로	61	소 2-210(당하) (당하동 1257도)	원당지구 동측구역계 (원당동 332-2전)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당하
기정	소로	2	210	8	국지도로	327	소 1-209(당하) (당하동 1253도)	소 1-209(당하) (당하동 1253도)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당하
기정	소로	2	211	8	국지도로	41	소 2-212(당하) (당하동 1259도)	소 2-210(당하) (당하동 1257도)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당하
기정	소로	2	212	8	국지도로	199	소 1-209(당하) (당하동 1253도)	소 1-209(당하) (당하동 1253도)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당하
기정	소로	2	213	8	국지도로	42	소 2-212(당하) (당하동 1259도)	소 2-210(당하) (당하동 1257도)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당하
기정	소로	2	214	8	국지도로	40	소 2-210(당하) (당하동 1257도)	원당지구 동측구역계 (원당동 188-1도)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당하
기정	소로	2	215	8	국지도로	171	소 1-209(당하) (당하동 1253도)	소 1-209(당하) (당하동 1253도)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당하
기정	소로	2	230	8	국지도로	58	소 2-231(당하) (당하동 817답)	소 1-212(당하) (당하동 817답)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당하
기정	소로	2	231	8	국지도로	202	소 1-212(당하) (당하동 815답)	소 1-212(당하) (당하동 820-4대)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당하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2	232	8	국지도로	237	중2-450 (당하동 1285도)	중2-450 (당하동 1285도)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당하
기정	소로	2	238	8	국지도로	20	소 2-203(당하) (당하동 1293도)	중 3-551 (당하동 1293도)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당하
기정	소로	3	285	6	국지도로	357	중 1-502 (마전동 526-4탑)	남서측지구계 (마전동 산99-9임)	일반도로		국고19-967 (20.1.16)	마전
기정	소로	3	286	6 (2~6)	국지도로	160	소3-285(마전) (마전동 526-7도)	남서측지구계 (마전동 산97-8임)	일반도로		국고19-967 (20.1.16)	마전
기정	소로	3	203	6	특수도로	156	광 3-23 (원당동 337-7탑)	중 2-453 (원당동 1064도)	보행자도로		국고15-760 (15.10.27)	원당
기정	소로	3	204	6	국지도로	13	소 2-201(원당) (원당동 1080도)	소 3-205(원당) (원당동 1067-12도)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원당
기정	소로	3	205	6	특수도로	7	소 3-204(원당) (원당동 1067-13도)	소 1-201(원당) (원당동 1067-11도)	보행자도로		국고15-760 (15.10.27)	원당
기정	소로	3	206	6	특수도로	20	중 2-454 (원당동 1066도)	소 2-201(원당) (원당동 1080도)	보행자도로		국고15-760 (15.10.27)	원당
기정	소로	3	208	6	특수도로	39	광 3-23 (원당동 1036도)	중 2-457 (원당동 1034도)	보행자도로		국고15-760 (15.10.27)	원당
기정	소로	3	209	6	특수도로	30	중 2-457 (원당동 1034도)	소 3-210(원당) (원당동 1033-6도)	보행자도로		국고15-760 (15.10.27)	원당
기정	소로	3	210	6	특수도로	191	중 2-459 (원당동 1032도)	중 2-458 (원당동 1029도)	보행자도로		국고15-760 (15.10.27)	원당
기정	소로	3	211	6	특수도로	30	중 2-459 (원당동 1032도)	소 3-210(원당) (원당동 1033-6도)	보행자도로		국고15-760 (15.10.27)	원당
기정	소로	3	212	6	특수도로	33	중 2-459 (원당동 1032도)	중 1-415 (원당동 1027도)	보행자도로		국고15-760 (15.10.27)	원당
기정	소로	3	213	6	특수도로	15	중 1-418 (원당동 1025도)	소 3-214(원당) (원당동 1031도)	보행자도로		국고15-760 (15.10.27)	원당
기정	소로	3	214	6	국지도로	17	중 2-459 (원당동 1032도)	소 3-213(원당) (원당동 1030-9도)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원당
기정	소로	3	215	6	특수도로	44	광 3-23 (원당동 1044도)	중 2-460 (원당동 1039도)	보행자도로		국고15-760 (15.10.27)	원당
기정	소로	3	216	6	특수도로	42	중 2-460 (원당동 1039도)	소 1-206(원당) (원당동 1043-8도)	보행자도로		국고15-760 (15.10.27)	원당
기정	소로	3	217	6	특수도로	32	중 2-461 (원당동 1042도)	소 1-206(원당) (원당동 1043-8도)	보행자도로		국고15-760 (15.10.27)	원당
기정	소로	3	218	6	특수도로	32	중 1-416 (원당동 1037도)	중 2-461 (원당동 1042도)	보행자도로		국고15-760 (15.10.27)	원당
기정	소로	3	219	6	특수도로	115	중 1-423 (원당동 1015도)	3호 근린공원 (원당동 1016공)	보행자도로		국고18-335 (18.06.18)	원당
기정	소로	3	220	6	특수도로	21	6호 근린공원 (원당동 986공)	소 2-207(원당) (원당동 1046도)	보행자도로		국고15-760 (15.10.27)	원당
기정	소로	3	221	6	특수도로	15	소 3-239(원당) (원당동 1009도)	소 1-210(원당) (원당동 1000-4도)	보행자도로		국고15-760 (15.10.27)	원당
기정	소로	3	222	6	특수도로	30	소 2-215(원당) (원당동 999도)	대 김포3-8 (원당동 1010도)	보행자도로		국고15-760 (15.10.27)	원당
기정	소로	3	223	6	특수도로	40	소 2-217(원당) (원당동 1004도)	소 2-218(원당) (원당동 1002도)	보행자도로		국고15-760 (15.10.27)	원당
기정	소로	3	224	6	특수도로	40	중 3-557 (원당동 996도)	소 2-217(원당) (원당동 1004도)	보행자도로		국고15-760 (15.10.27)	원당
기정	소로	3	225	6	특수도로	22	중 1-419 (원당동 1013도)	중 3-557 (원당동 996도)	보행자도로		국고15-760 (15.10.27)	원당
기정	소로	3	226	6	특수도로	20	소 2-219(원당) (원당동 998도)	중 2-462 (원당동 994도)	보행자도로		국고15-760 (15.10.27)	원당
기정	소로	3	227	6	특수도로	20	중 2-462 (원당동 994도)	소 2-220(원당) (원당동 992도)	보행자도로		국고15-760 (15.10.27)	원당
기정	소로	3	228	6	특수도로	40	소 2-220(원당) (원당동 992도)	소 2-221(원당) (원당동 990도)	보행자도로		국고15-760 (15.10.27)	원당
기정	소로	3	229	6	특수도로	22	대 3-154 (원당동 988도)	소 3-238(원당) (원당동 992도)	보행자도로		국고15-760 (15.10.27)	원당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3	230	6	특수도로	115	중 1-423 (원당동 1015도)	3호 근린공원 (원당동 1016공)	보행자도로		국고15-760 (15.10.27)	원당
기정	소로	3	235	6	특수도로	7	중 2-454 (원당동 1066도)	소 3-240(원당) (원당동 1071-4도)	보행자도로		국고15-760 (15.10.27)	원당
기정	소로	3	236	6	특수도로	7	중 2-454 (원당동 1066도)	소 3-241(원당) (원당동 1067-8도)	보행자도로		국고15-760 (15.10.27)	원당
기정	소로	3	237	7	국지도로	67	대3-154 (원당동 988도)	7호 근린공원 (원당동 986공)	일반도로		국고19-967 (20.1.16)	원당
기정	소로	3	238	6	국지도로	5	소2-220(원당) (원당동 992도)	소3-229(원당) (원당동 989-1도)	일반도로		국고19-967 (20.1.16)	원당
기정	소로	3	239	6	국지도로	8	중3-557 (원당동 996도)	소3-221(원당) (원당동 1000-10도)	일반도로		국고19-967 (20.1.16)	원당
기정	소로	3	203	6	국지도로	13	소 2-201(당하) (당하동 1294도)	소 3-246(당하) (당하동 1292-5도)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당하
기정	소로	3	205	6	특수도로	22	중 3-551 (당하동 1287도)	대 2-78 (당하동 1277도)	보행자도로		국고15-760 (15.10.27)	당하
기정	소로	3	206	6	특수도로	15	중 2-450 (당하동 1285도)	소 2-205(당하) (당하동 1294도)	보행자도로		국고15-760 (15.10.27)	당하
기정	소로	3	207	6	특수도로	22	중 3-551 (당하동 1287도)	소 2-207(당하) (당하동 1294도)	보행자도로		국고15-760 (15.10.27)	당하
기정	소로	3	208	6	특수도로	12	대 2-78 (당하동 1277도)	소 3-241(당하) (당하동 1286-3도)	보행자도로		국고15-760 (15.10.27)	당하
기정	소로	3	209	6	특수도로	38	대 2-78 (당하동 1277도)	중 3-552 (당하동 1281도)	보행자도로		국고15-760 (15.10.27)	당하
기정	소로	3	210	6	특수도로	20	소 2-210(당하) (당하동 1257도)	5호 근린공원 (당하동 1256-10공)	보행자도로		국고15-760 (15.10.27)	당하
기정	소로	3	230	4	특수도로	40	소 2-212(당하) (당하동 1259도)	소 2-210(당하) (당하동 1257도)	보행자도로		국고15-760 (15.10.27)	당하
기정	소로	3	231	6	특수도로	22	중1-503 (당하동 789-2대)	소 1-211(당하) (당하동 781대)	보행자도로		국고15-760 (15.10.27)	당하
기정	소로	3	232	6	특수도로	29	소 1-211(당하) (당하동 787-2답)	21호 경관녹지 (당하동 783-3답)	보행자도로		국고15-760 (15.10.27)	당하
기정	소로	3	233	6	특수도로	199	중1-503 (당하동 792-2대)	21호 경관녹지 (당하동 861전)	보행자도로		국고15-760 (15.10.27)	당하
기정	소로	3	234	6	특수도로	7	소 3-235(당하) (당하동 861전)	소 3-233(당하) (당하동 821전)	보행자도로		국고15-760 (15.10.27)	당하
기정	소로	3	235	6	국지도로	13	소 1-212(당하) (당하동 820-2대)	소 3-234(당하) (당하동 861전)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당하
기정	소로	3	236	6	국지도로	8	소 2-231(당하) (당하동 820-11대)	21호 경관녹지 (당하동 1003-9구)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당하
기정	소로	3	237	6	특수도로	20	중 2-450 (당하동 1285도)	소 2-232(당하) (당하동 1283도)	보행자도로		국고15-760 (15.10.27)	당하
기정	소로	3	238	6	특수도로	20	중 2-450 (당하동 1285도)	소 2-232(당하) (당하동 1283도)	보행자도로		국고15-760 (15.10.27)	당하
기정	소로	3	239	5	특수도로	123	4호 근린공원 (당하동 1272-1공)	중 1-513 (당하동 1271도)	보행자도로		국고19-967 (20.1.16)	당하
기정	소로	3	240	5	특수도로	123	4호 근린공원 (당하동 1272-1공)	중 1-513 (당하동 1271도)	보행자도로		국고18-335 (18.06.18)	당하
기정	소로	3	242	6	국지도로	10	중3-551 (당하동 1293도)	소3-245(당하) (당하동 1286-13도)	일반도로		국고19-967 (20.1.16)	당하
기정	소로	3	243	6	국지도로	10	중3-553 (당하동 1247도)	소3-247(당하) (당하동 1246-1도)	일반도로		국고19-967 (20.1.16)	당하
기정	소로	3	245	6	특수도로	10	중2-449 (당하동 1315도)	소3-242 (당하동 1286-12도)	보행자도로		국고19-967 (20.1.16)	당하
기정	소로	3	247	6	특수도로	11	중3-555 (당하동 1245도)	소3-243 (당하동 1251도)	보행자도로		국고19-967 (20.1.16)	당하
기정	소로	3	251	6	국지도로	10	중 3-553 (당하동 1247도)	소3-252(당하) (당하동 1246-5도)	일반도로		국고19-967 (20.1.16)	당하
기정	소로	3	252	6	특수도로	11	중 1-411 (당하동 1234도)	소3-251(당하) (당하동 1252도)	보행자도로		국고19-967 (20.1.16)	당하

주) ()는 사업지구내 연장임.

○ 도로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 1-205	소로 1-2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차공간조성 폭원 11.0m 9변경없음 연장 : 84.0m(기정) → 100.0m(변경) 증) 16.0m (회차면적: 18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로1-205호선의 원활한 차량순환을 위하여 회차공간 조성

2-1-2-2 공간시설

(1) 광장(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5,458.4	-	5,458.4	-	3개소
기정	2	광장	일반광장 (근린광장)	인천시 서구 당하동 1235-5 잡	2,581.4	-	2,581.4	국고2015-760 (15.10.27)		
기정	3	광장	일반광장 (근린광장)	인천시 서구 원당동 1043 잡	1,702.0	-	1,702.0	국고2015-760 (15.10.27)		
기정	4	광장	일반광장 (근린광장)	인천시 서구 원당동 1033 잡	1,175.0	-	1,175.0	국고2015-760 (15.10.27)		

(2) 공원(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399,165.9	-	399,165.9	-	19개소
소계					-	352,401.7	-	352,401.7	-	7개소
기정	1	새별공원	근린공원	인천시 서구 당하동 1310 공 일원	34,663.6	-	34,663.6	국고2015-760 (15.10.27)		
기정	2	아라 센트럴파크	근린공원	인천시 서구 당하동 1276 공	55,690.3	-	55,690.3	국고2015-760 (15.10.27)		
기정	3	도담공원	근린공원	인천시 서구 원당동 1016 공	28,592.8	-	28,592.8	국고2015-760 (15.10.27)		
기정	4	아라노을 공원	근린공원	인천시 서구 당하동 1272-1 공 일원	48,206.9 (105,818.9)	-	48,206.9 (105,818.9)	국고2015-760 (15.10.27)		
기정	5	맑은물빛 공원	근린공원	인천시 서구 당하동 1269-3 공 일원	32,687.5	-	32,687.5	국고2015-760 (15.10.27)		
기정	6	아라보타닉 파크	근린공원	인천시 서구 원당동 986 공	88,897.2 (219,475.2)	-	88,897.2 (219,475.2)	국고2015-760 (15.10.27)		대로2-78 중복결정 17,001㎡
기정	7	산들바람 공원	근린공원	인천시 서구 원당동 986 공	63,663.4 (223,781.4)	-	63,663.4 (223,781.4)	국고2015-760 (15.10.27)		
소계					-	30,078.1	-	30,078.1	-	8개소
기정	1	가람풍경 공원	어린이 공원	인천시 서구 당하동 1282-12 공	2,912.3	-	2,912.3	국고2015-760 (15.10.27)		
변경	2	해든공원	어린이 공원	인천시 서구 당하동 1318-9 공	8,251.8	감)182.3	8,069.5	국고2015-760 (15.10.27)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3	동굴동굴 나이테공원	어린이 공원	인천시 서구 원당동 1094-1 공	2,283.2	-	2,283.2	국고2015-760 (15.10.27)	
기정	4	재미한창 공원	어린이 공원	인천시 서구 원당동 1067-6 공	1,763.9	-	1,763.9	국고2015-760 (15.10.27)	
기정	5	윗목 어린이공원	어린이 공원	인천시 서구 원당동 1020-4 공	4,699.1	-	4,699.1	국고2015-760 (15.10.27)	
기정	6	아랫목 어린이공원	어린이 공원	인천시 서구 원당동 1001 공	2,159.9	-	2,159.9	국고2015-760 (15.10.27)	
기정	7	바래미공원	어린이 공원	인천시 서구 원당동 1065-1 공	3,794.0	-	3,794.0	국고2015-760 (15.10.27)	
기정	14	공원	어린이 공원	인천시 서구 당하동1337-9공	4,213.9	-	4,213.9	국고2015-760 (15.10.27)	
소계					-		2,216.7		2개소
기정	6	광명큰나무 공원	소공원	인천시 서구 당하동 1276-3 공	941.0	-	941.0	국고2019-967 (20.1.6)	
기정	7	아름드리 공원	소공원	인천시 서구 당하동 1246-9 공	1,275.7	-	1,275.7	국고2019-967 (20.1.6)	
소계					-		12,677.6		1개소
기정	1	두물머리 공원	수변 공원	인천시 서구 당하동 1278-1 공 일원	12,677.6	-	12,677.6	국고2015-760 (15.10.27)	유수지② 6,256㎡ 중복결정
소계					-		1,791.8		1개소
기정	1	활력공원	문화 공원	인천시 서구 원당동 1061 공	1,791.8	-	1,791.8	-	

주) ()는 전체 면적임

(3) 녹지(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272,121.0		19개소
소계					-		35,719.5		7개소
기정	3	녹지	완충 녹지	인천시 서구 원당동 1020-7 공	3,388.9	-	3,388.9	국고2015-760 (15.10.27)	
기정	4	녹지	완충 녹지	인천시 서구 원당동1058 공 일원	3,585.2	-	3,585.2	국고2015-760 (15.10.27)	
기정	5	녹지	완충 녹지	인천시 서구 당하동 1229-5 공	1,957.9	-	1,957.9	국고2015-760 (15.10.27)	
기정	6	녹지	완충 녹지	인천시 서구 원당동 1020 공	7,749.0	-	7,749.0	국고2015-760 (15.10.27)	
기정	7	녹지	완충 녹지	인천시 서구 원당동 987-2 공	8,700.0	-	8,700.0	국고2015-760 (15.10.27)	
기정	12	녹지	완충 녹지	인천시 서구 당하동 1335-1공	6,317.5	-	6,317.5	국고2015-760 (15.10.27)	
기정	13	녹지	완충 녹지	인천시 서구 당하동 1327-2공	4,021.0	-	4,021.0	국고2015-760 (15.10.27)	
소계					-		185,856.5		12개소
기정	1	녹지	경관 녹지	인천시 서구 원당동 1041-13공	3,728.4	-	3,728.4	국고2015-760 (15.10.27)	
기정	6	녹지	경관 녹지	인천시 서구 당하동 1333-1공	40,444.5 (65,545.5)	-	40,444.5 (65,545.5)	국고2018-335 (18.06.18)	중로1-504 중복결정 780㎡
기정	7	녹지	경관 녹지	인천시 서구 당하동 1350-1공	9,774.9 (12,897.9)	-	9,774.9 (12,897.9)	국고2019-967 (20.1.6)	
기정	8	녹지	경관 녹지	인천시 서구 당하동 1314-1공 일원	7,139.7	-	7,139.7	국고2019-967 (20.1.6)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9	녹지	경관 녹지	인천시 서구 당하동 1282공 일원	26,536.7 (26,970.7)	-	26,536.7 (26,970.7)	국고2019-967 (20.1.6)	
기정	10	녹지	경관 녹지	인천시 서구 당하동 1094-4 공 일원	33,269.4	-	33,269.4	국고2019-967 (20.1.6)	
기정	11	녹지	경관 녹지	인천시 서구 원당동 1088-1 공 일원	14,927.3 (15,478.3)	-	14,927.3 (15,478.3)	국고2019-967 (20.1.6)	
기정	12	녹지	경관 녹지	인천시 서구 당하동 1241 공 일원	10,403.3	-	10,403.3	국고2019-967 (20.1.6)	
기정	13	녹지	경관 녹지	인천시 서구 당하동 1235-11 공 일원	11,407.3	-	11,407.3	국고2019-967 (20.1.6)	
기정	14	녹지	경관 녹지	인천시 서구 원당동 989-2 공 일원	7,970.5 (29,306.5)	-	7,970.5 (29,306.5)	국고2019-967 (20.1.6)	
기정	21	녹지	경관 녹지	인천시 서구 당하동 1348공 일원	13,946.1	-	13,946.1	국고2019-967 (20.1.6)	
기정	22	녹지	경관 녹지	인천시 서구 당하동 1322공 일원	6,308.4	-	6,308.4	국고2019-967 (20.1.6)	

주) ()는 전체 면적임

2-1-2-3 유통 및 공급시설(변경없음)

(1) 가스공급설비(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6,190	-	6,190	-	1개소
기정	4	가스공급설비	인천시 서구 당하동 749-31주 일원	6,190	-	6,190	국고2015-760 (15.10.27)	당하관리소

2-1-2-4 공공문화체육시설 (변경없음)

(1) 학교(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계			-	-	140,059.6	-	140,059.6	-	10개소
초등학교 소계			-	-	70,052.1	-	70,052.1	-	5개소
기정	1	학교	초등 학교	인천시 서구 당하동 1272-6 학	14,000.0	-	14,000.0	국고2015-760 (15.10.27)	
기정	2	학교	초등 학교	인천시 서구 당하동 1318 학	14,000.0	-	14,000.0	국고2015-760 (15.10.27)	
기정	3	학교	초등 학교	인천시 서구 원당동 1094-2 학	14,001.0	-	14,001.0	국고2015-760 (15.10.27)	
기정	4	학교	초등 학교	인천시 서구 원당동 1020-2 학	14,026.6	-	14,026.6	국고2015-760 (15.10.27)	
기정	5	학교	초등 학교	인천시 서구 원당동 1016-5 학	14,024.5	-	14,024.5	국고2015-760 (15.10.27)	
중학교 소계			-	-	28,000.2	-	28,000.2	-	2개소
기정	1	학교	중학교	인천시 서구 당하동 1272-8 학	14,000.0	-	14,000.0	국고2015-760 (15.10.27)	
기정	2	학교	중학교	인천시 서구 원당동 1016-3 학	14,000.2	-	14,000.2	국고2015-760 (15.10.27)	
고등학교 소계			-	-	30,007.3	-	30,007.3	-	2개소
기정	1	학교	고등 학교	인천시 서구 당하동 1272학	15,007.0	-	15,007.0	국고2015-760 (15.10.27)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2	학교	고 등 학교	인천시 서구 원당동 1016-1학	15,000.3	-	15,000.3	국고2015-760 (15.10.27)	
특수학교 소계					12,000.0	-	12,000.0	-	1개소
기정	1	학교	특수 학교	인천시 서구 당하동 779-4대 일원	12,000.0	-	12,000.0	국고2015-760 (15.10.27)	

2-1-2-5 방재시설(변경없음)

(1) 하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연장 (km)	폭원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	-	5.55	-	215,256.5	감) 40.0	215,216.5	-	2개소
기정	1	계양천	지방2 급하천	계양구 목상동 (당하동 964-7구)	서구 원당동 17-6답	매천 합류점	2.09	24~50	102,090.7	-	102,090.7	인고252 (03.12.29)	지구내
기정	2	매천	소하천	서구 당하동 1228도	서구 당하동 1304천	-	1.27	15~35	31,907.8	-	31,907.8	인고80 (99.6.23)	지구내

※ 천1에 도로중복 면적 5,724㎡(도로중복 4,906㎡, 보행자전용도로 중복 818㎡) 포함
 - 도로중복 : 중로1-408, 중로1-413, 중로1-414, 중로2-449, 중로2-453
 - 보행자중복 : 소로1-201(원당), 소로3-244(당하)
 ※ 천2에 도로중복 면적 2,652㎡(도로중복 2,092㎡, 보행자전용도로 중복 560㎡) 포함
 - 도로중복 : 광로3-23, 대로2-78, 중로1-411
 - 보행자중복 : 소로 1-202(원당), 소로1-213(당하)

(2) 유수지(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37,543.0	-	37,543.0	-	4개소
기정	1	유수지	저류시설	인천시 서구 당하동 1312-5 유	10,956.0	-	10,956.0	국고2015-760 (15.10.27)	
기정	2	유수지	저류시설	인천시 서구 당하동 1278 유	6,256.0	-	6,256.0	국고2015-760 (15.10.27)	수변공원① 중복결정

2-1-2-6 환경기초시설(변경없음)

(1) 하수도(변경없음)

(가) 오수중계펌프장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오수중계펌프장	인천시 서구 원당동 1088-2 잡	4,620	-	4,620	인고4 (05.1.5)	

2-2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2-2-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2-2-1-1 일반형 단독주택용지 (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필지			비고
			번호	위치	면적(㎡)	
E1	①	1,712.3	1	당하동 1260-12 대	244.8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2	당하동 1260-11 대	245.2	
			3	당하동 1260-10 대	244.8	
			4	당하동 1260-9 대	244.0	
			5	당하동 1260-8 대	243.9	
			6	당하동 1260-7 대	244.8	
			7	당하동 1260-6 대	244.8	
	②	1,178.3	1	당하동 1260-4 대	234.5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당하동 1260-3 대	235.0	
				당하동 1260-2 대	235.0	
				당하동 1260-1 대	236.5	
				당하동 1260 대	237.3	
	③	1,107.6	1	당하동 1229-10 대	223.9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당하동 1229-9 대	221.0	
				당하동 1229-8 대	221.0	
				당하동 1229-7 대	220.9	
				당하동 1229-6 대	220.8	
	④	2,659.4	1	당하동 1258-2 대	241.9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당하동 1258-3 대	241.7	
				당하동 1258-4 대	241.9	
				당하동 1258-5 대	242.2	
				당하동 1258-6 대	241.6	
				당하동 1258-7 대	237.6	
				당하동 1258-12 대	241.0	
				당하동 1258-11 대	241.8	
				당하동 1258-10 대	241.9	
				당하동 1258-9 대	243.1	
				당하동 1258-8 대	244.7	
	⑤	973.9	1	당하동 1264-4 대	243.6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당하동 1264-5 대	243.2	
				당하동 1264-3 대	246.0	
				당하동 1264-2 대	241.1	
	⑥	885.3	1	당하동 1264-6 대	219.5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당하동 1264-7 대	221.9	
				당하동 1264-8 대	222.6	
				당하동 1264 대	221.3	
	⑦	3,248.8	1	당하동 1261-7 대	250.4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당하동 1261-8 대	249.9	
				당하동 1261-9 대	250.3	
				당하동 1261-10 대	250.5	
				당하동 1261-11 대	249.6	
				당하동 1261-12 대	249.5	
당하동 1261 대				250.5		
당하동 1261-6 대				250.4		
당하동 1261-5 대				248.9		
당하동 1261-4 대				249.1		
당하동 1261-3 대				249.4		
당하동 1261-2 대				248.6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필지			비고
			번호	위치	면적(㎡)	
E2	⑧	2,285.2	13	당하동 1261-1 대	251.7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1	당하동 1231-5 대	254.2	
			2	당하동 1231-6 대	254.0	
			3	당하동 1231-7 대	254.0	
			4	당하동 1231-8 대	253.9	
			5	당하동 1231 대	254.0	
			6	당하동 1231-4 대	252.5	
			7	당하동 1231-3 대	254.1	
			8	당하동 1231-2 대	254.2	
	9	당하동 1231-1 대	254.3			
	⑨	1,104.2	1	당하동 1256-4 대	220.6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2	당하동 1256-3 대	220.7	
			3	당하동 1256-2 대	220.7	
			4	당하동 1256-1 대	220.2	
5			당하동 1256 대	222.0		
⑩	1,104.3	1	당하동 1267-4 대	221.5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2	당하동 1267-3 대	219.6		
		3	당하동 1267-2 대	220.9		
		4	당하동 1267-1 대	220.3		
		5	당하동 1267 대	222.0		
⑪	714.4	1	당하동 1269-6 대	240.4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2	당하동 1269-5 대	237.3		
		3	당하동 1269-4 대	236.7		
⑫	666.8	1	당하동 1269-2 대	221.8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2	당하동 1269-1 대	221.8		
		3	당하동 1269 대	223.2		
⑬	2,227.4	1	당하동 1262-9 대	248.5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2	당하동 1262-8 대	247.2		
		3	당하동 1262-7 대	247.3		
		4	당하동 1262-6 대	247.3		
		5	당하동 1262-5 대	247.3		
		6	당하동 1262-4 대	247.2		
		7	당하동 1262-3 대	246.9		
		8	당하동 1262-2 대	247.2		
		9	당하동 1262-1 대	248.5		
⑭	1,044.2	1	당하동 1229-4 대	260.9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2	당하동 1229-3 대	261.1		
		3	당하동 1229-2 대	261.1		
		4	당하동 1229-1 대	261.1		
E2	①	2,399.0	1	원당동 1048 대	240.2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2	원당동 1048-1 대	240.0	
			3	원당동 1048-2 대	240.2	
			4	원당동 1048-3 대	240.6	
			5	원당동 1048-4 대	240.0	
			6	원당동 1048-5 대	240.0	
			7	원당동 1048-6 대	240.1	
			8	원당동 1048-7 대	240.5	
			9	원당동 1048-8 대	238.9	
			10	원당동 1048-9 대	238.5	
②	1,228.3	1	원당동 1047-1 대	245.5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2	원당동 1047 대	245.9		
		3	원당동 1047-2 대	245.8		
		4	원당동 1047-3 대	245.2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필지			비고		
			번호	위치	면적(㎡)			
F1	③	1,886.5	5	원당동 1047-4 대	245.9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1	원당동 1050-3 대	205.9			
			2	원당동 1050-2 대	249.1			
			3	원당동 1050-1 대	249.1			
			4	원당동 1050 대	239.5			
			5	원당동 1050-4 대	261.8			
			6	원당동 1050-5 대	224.1			
			7	원당동 1050-6 대	224.1			
	④	2,335.9	1	원당동 1052-4 대	209.6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2	원당동 1052-3 대	242.4			
			3	원당동 1052-2 대	242.4			
			4	원당동 1052-1 대	242.4			
			5	원당동 1052 대	233.4			
			6	원당동 1052-5 대	256.5			
			7	원당동 1052-6 대	225.1			
			8	원당동 1052-7 대	225.3			
			9	원당동 1052-8 대	225.3			
			10	원당동 1052-9 대	233.5			
	⑤	3,116.4	1	원당동 1056-5 대	238.7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2	원당동 1056-4 대	239.7			
			3	원당동 1056-3 대	240.3			
			4	원당동 1056-2 대	240.0			
			5	원당동 1056-1 대	240.3			
			6	원당동 1056 대	240.3			
			7	원당동 1056-6 대	239.0			
			8	원당동 1056-7 대	239.7			
			9	원당동 1056-8 대	239.6			
			10	원당동 1056-9 대	239.7			
			11	원당동 1056-10 대	239.6			
			12	원당동 1056-11 대	239.6			
			13	원당동 1056-12 대	239.9			
	⑥	2,038.4	1	원당동 1045 대	255.2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2	원당동 1045-1 대	254.1			
			3	원당동 1045-2 대	253.8			
			4	원당동 1045-3 대	254.1			
			5	원당동 1045-4 대	253.9			
			6	원당동 1045-5 대	254.0			
			7	원당동 1045-6 대	256.7			
			8	원당동 1045-7 대	256.6			
	⑦	468.6	1	원당동 1055-1 대	234.2	• 연접한 2필지 합병가능 및 분할불가		
			2	원당동 1055-2 대	234.4			
	①	882.0	1	당하동 1290-2 대	294.0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2	당하동 1290-1 대	294.0			
3			당하동 1290 대	294.0				
②			2,189.5	1	당하동 1290-4 대		271.5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2	당하동 1290-5 대		274.0	
				3	당하동 1290-6 대		274.0	
				4	당하동 1290-7 대		274.0	
				5	당하동 1290-8 대		274.0	
				6	당하동 1290-9 대		274.0	
				7	당하동 1290-10 대		274.0	
				8	당하동 1290-11 대		274.0	
③	3,105.0	1	당하동 1297-1 대	260.0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2	당하동 1297-2 대	259.0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필지			비고			
			번호	위치	면적(㎡)				
			3	당하동 1297-3 대	259.0				
			4	당하동 1297-4 대	259.0				
			5	당하동 1297-5 대	259.0				
			6	당하동 1297-6 대	260.0				
			7	당하동 1297 대	258.0				
			8	당하동 1297-11 대	259.0				
			9	당하동 1297-10 대	258.0				
			10	당하동 1297-9 대	258.0				
			11	당하동 1297-8 대	258.0				
			12	당하동 1297-7 대	258.0				
			④	2,574.0	1		당하동 1295-1 대	259.0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2		당하동 1295-2 대	258.0	
3	당하동 1295-3 대	257.0							
4	당하동 1295-4 대	257.0							
5	당하동 1295-5 대	258.0							
6	당하동 1295 대	256.0							
7	당하동 1295-9 대	257.0							
8	당하동 1295-8 대	257.0							
9	당하동 1295-7 대	257.0							
10	당하동 1295-6 대	258.0							
⑤	1,327.0	1	당하동 1288-4 대	267.0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2	당하동 1288-3 대	265.0					
		3	당하동 1288-2 대	265.0					
		4	당하동 1288-1 대	265.0					
		5	당하동 1288 대	265.0					
⑥	1,270.0	1	당하동 1292 대	254.0					
		2	당하동 1292-1 대	254.0					
		3	당하동 1292-2 대	254.0					
		4	당하동 1292-3 대	254.0					
		5	당하동 1292-4 대	254.0					
⑦	2,357.8	1	당하동 1299-1 대	261.8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2	당하동 1299-2 대	262.0					
		3	당하동 1299-3 대	262.0					
		4	당하동 1299-4 대	262.0					
		5	당하동 1299-5 대	262.0					
		6	당하동 1299 대	262.0					
		7	당하동 1299-8 대	262.0					
		8	당하동 1299-7 대	262.0					
		9	당하동 1299-6 대	262.0					
⑧	2,288.6	1	당하동 1300-1 대	253.8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2	당하동 1300-2 대	254.0					
		3	당하동 1300-3 대	254.0					
		4	당하동 1300-4 대	254.0					
		5	당하동 1300 대	257.0					
		6	당하동 1300-8 대	254.0					
		7	당하동 1300-7 대	254.0					
		8	당하동 1300-6 대	254.0					
		9	당하동 1300-5 대	253.8					
⑨	1,338.3	1	당하동 1292-7 대	268.0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2	당하동 1292-8 대	267.0					
		3	당하동 1292-9 대	267.0					
		4	당하동 1292-10 대	268.0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필지			비고
			번호	위치	면적(㎡)	
F2	⑩	1,413.5	5	당하동 1292-11 대	268.3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1	당하동 1286-18 대	283.0	
			2	당하동 1286-17 대	283.0	
			3	당하동 1286-16 대	283.0	
			4	당하동 1286-15 대	283.0	
	⑪	723.7	1	당하동 1284 대	241.7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2	당하동 1284-1 대	241.0	
			3	당하동 1284-2 대	241.0	
	⑫	1,269.0	1	당하동 1284-4 대	253.0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2	당하동 1284-5 대	254.0	
			3	당하동 1284-6 대	254.0	
			4	당하동 1284-7 대	254.0	
			5	당하동 1284-8 대	254.0	
	⑬	1,102.0	1	당하동 1284-10 대	275.0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2	당하동 1284-11 대	275.0	
			3	당하동 1284-12 대	276.0	
			4	당하동 1284-13 대	276.0	
	⑭	1,341.0	1	당하동 1282-7 대	269.0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2	당하동 1282-8 대	268.0	
			3	당하동 1282-9 대	268.0	
4			당하동 1282-10 대	268.0		
5			당하동 1282-11 대	268.0		
①	1,929.8	1	원당동 1071-5 대	276.0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2	원당동 1071-6 대	275.8		
		3	원당동 1071-7 대	276.0		
		4	원당동 1071-8 대	276.0		
		5	원당동 1071-9 대	275.0		
		6	원당동 1071-10 대	275.0		
		7	원당동 1071-11 대	276.0		
	②	731.0	1	원당동 1071-2 대	244.0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2	원당동 1071-1 대	243.0	
			3	원당동 1071 대	244.0	
	③	720.0	1	원당동 1069-6 대	240.0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2	원당동 1069-5 대	240.0	
			3	원당동 1069-4 대	240.0	
	④	873.0	1	원당동 1073-1 대	291.0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2	원당동 1073-3 대	291.0	
			3	원당동 1073-2 대	291.0	
	⑤	1,986.0	1	원당동 1075-1 대	248.0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2	원당동 1075-2 대	248.0	
			3	원당동 1075-3 대	248.0	
			4	원당동 1075-4 대	248.0	
5			원당동 1075 대	249.0		
6			원당동 1075-7 대	248.0		
7			원당동 1075-6 대	248.0		
8			원당동 1075-5 대	249.0		
⑥	1,701.0	1	원당동 1077-1 대	283.0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2	원당동 1077-2 대	284.0		
		3	원당동 1077-3 대	283.0		
		4	원당동 1077 대	284.0		
		5	원당동 1077-5 대	283.0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필지			비고
			번호	위치	면적(㎡)	
F3	⑦	1,113.0	6	원당동 1077-4 대	284.0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1	원당동 1079-1 대	278.0	
			2	원당동 1079-2 대	279.0	
			3	원당동 1079 대	278.0	
	⑧	3,688.6	1	원당동 1067-27 대	265.0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2	원당동 1067-26 대	263.0	
			3	원당동 1067-25 대	263.0	
			4	원당동 1067-24 대	263.0	
			5	원당동 1067-23 대	263.0	
			6	원당동 1067-22 대	263.0	
			7	원당동 1067-21 대	263.0	
			8	원당동 1067-20 대	263.0	
			9	원당동 1067-19 대	262.8	
			10	원당동 1067-18 대	262.8	
			11	원당동 1067-17 대	263.0	
			12	원당동 1067-16 대	264.0	
			13	원당동 1067-15 대	264.0	
			14	원당동 1067-14 대	266.0	
	⑨	702.0	1	원당동 1069-2 대	234.0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2	원당동 1069-1 대	234.0	
3			원당동 1069 대	234.0		
⑩	607.0	1	원당동 1067-10 대	304.0	• 연접한 2필지 합병가능	
		2	원당동 1067-9 대	303.0		
F3	①	1,089.7	1	원당동 989-3 대	272.0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2	원당동 989-4 대	272.0	
			3	원당동 989-5 대	272.9	
			4	원당동 989-6 대	272.8	
	②	3,364.2	1	원당동 991-8 대	258.4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2	원당동 991-9 대	258.9	
			3	원당동 991-10 대	259.3	
			4	원당동 991-7 대	259.6	
			5	원당동 991-6 대	258.7	
			6	원당동 991-5 대	259.2	
			7	원당동 991-4 대	259.1	
			8	원당동 991-3 대	259.4	
			9	원당동 991-11 대	258.5	
			10	원당동 991-12 대	258.2	
			11	원당동 991-13 대	258.3	
			12	원당동 991-14 대	258.2	
			13	원당동 991-15 대	258.4	
	③	1,390.3	1	원당동 991-1 대	278.1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2	원당동 991 대	278.3	
			3	원당동 991-16 대	277.9	
4			원당동 991-17 대	278.0		
5			원당동 991-18 대	278.0		
⑤	1,792.6	1	원당동 993-14 대	255.2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2	원당동 993-13 대	255.2		
		3	원당동 993-12 대	256.2		
		4	원당동 993-11 대	256.6		
		5	원당동 993-10 대	256.4		
		6	원당동 993-9 대	256.6		
		7	원당동 993-8 대	256.4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필 지			비 고
			번호	위치	면적(㎡)	
⑥	1,824.6	1	원당동 993-6 대	259.9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2	원당동 993-5 대	259.8		
		3	원당동 993-4 대	260.9		
		4	원당동 993-3 대	261.0		
		5	원당동 993-2 대	260.8		
		6	원당동 993-1 대	261.1		
		7	원당동 993 대	261.1		
⑦	1,328.4	1	원당동 997-10 대	266.8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2	원당동 997-9 대	265.6		
		3	원당동 997-8 대	265.8		
		4	원당동 997-7 대	264.9		
		5	원당동 997-6 대	265.3		
⑧	986.0	1	원당동 997-4 대	246.1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2	원당동 997-3 대	246.0		
		3	원당동 997-2 대	246.9		
		4	원당동 997-1 대	247.0		
⑨	880.0	1	원당동 989-7 대	294.0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2	원당동 989-8 대	292.9		
		3	원당동 989-9 대	293.1		
⑩	1,065.0	1	원당동 1003-2 대	266.3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2	원당동 1003-3 대	266.1		
		3	원당동 1003-5 대	266.1		
		4	원당동 1003-4 대	266.5		
⑪	2,530.3	1	원당동 1005-1 대	258.5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2	원당동 1005-2 대	252.7		
		3	원당동 1005-3 대	252.6		
		4	원당동 1005-4 대	252.6		
		5	원당동 1005-5 대	252.7		
		6	원당동 1005 대	250.4		
		7	원당동 1005-14 대	252.7		
		8	원당동 1005-13 대	252.7		
		9	원당동 1005-12 대	252.6		
		10	원당동 1005-11 대	252.8		
⑫	1,173.4	1	원당동 1005-7 대	293.7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2	원당동 1005-8 대	293.1		
		3	원당동 1005-10 대	293.4		
		4	원당동 1005-9 대	293.2		
⑬	2,079.0	1	원당동 1008-4 대	258.6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2	원당동 1008-3 대	259.0		
		3	원당동 1008-2 대	259.2		
		4	원당동 1008-1 대	258.2		
		5	원당동 1008 대	258.1		
		6	원당동 1008-5 대	261.7		
		7	원당동 1008-6 대	262.1		
		8	원당동 1008-7 대	262.1		
⑭	1,937.6	1	원당동 1000 대	276.9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2	원당동 1000-28 대	277.0		
		3	원당동 1000-27 대	277.0		
		4	원당동 1000-26 대	277.0		
		5	원당동 1000-25 대	277.0		
		6	원당동 1000-24 대	276.0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필지			비고
			번호	위치	면적(㎡)	
	⑮	3,255.9	7	원당동 1000-23 대	276.7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1	원당동 1000-22 대	274.2	
			2	원당동 1000-21 대	275.0	
			3	원당동 1000-20 대	276.0	
			4	원당동 1000-19 대	276.0	
			5	원당동 1000-18 대	276.0	
			6	원당동 1000-17 대	275.9	
			7	원당동 1000-16 대	276.0	
			8	원당동 1000-15 대	275.9	
			9	원당동 1000-14 대	262.7	
			10	원당동 1000-13 대	262.0	
			11	원당동 1000-12 대	263.1	
			12	원당동 1000-11 대	263.1	
F15	①	1,716.6	1	당하동 1337-8대	245.0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2	당하동 1337-7대	245.0	
			3	당하동 1337-6대	245.0	
			4	당하동 1337-5대	245.0	
			5	당하동 1337-4대	245.0	
			6	당하동 1337-3대	244.8	
			7	당하동 1337-2대	246.8	
	②	947.0	1	당하동 1342대	316.0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2	당하동 1342-1대	315.0	
			3	당하동 1342-2대	316.0	
	③	2,953.1	1	당하동 1340-1대	268.0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2	당하동 1340-2대	268.0	
			3	당하동 1340-3대	268.0	
			4	당하동 1340-4대	268.0	
			5	당하동 1340-5대	268.0	
			6	당하동 1340대	269.0	
			7	당하동 1340-10대	269.0	
			8	당하동 1340-9대	269.0	
			9	당하동 1340-8대	269.1	
			10	당하동 1340-7대	269.0	
			11	당하동	268.0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필 지			비 고
			번호	위치	면적(㎡)	
	④	2,555.0		1340-6대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1	당하동 1336대	255.0	
			2	당하동 1336-1대	255.0	
			3	당하동 1336-2대	255.0	
			4	당하동 1336-3대	255.0	
			5	당하동 1336-4대	255.0	
			6	당하동 1336-5대	256.0	
			7	당하동 1336-6대	256.0	
			8	당하동 1336-7대	256.0	
			9	당하동 1336-8대	256.0	
	10	당하동 1336-9대	256.0			
	⑤	2,426.9	1	당하동 1343-8대	270.0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2	당하동 1343-7대	270.0	
			3	당하동 1343-6대	268.9	
			4	당하동 1343-5대	269.0	
			5	당하동 1343-4대	269.0	
			6	당하동 1343-3대	269.0	
			7	당하동 1343-2대	268.0	
			8	당하동 1343-1대	271.0	
			9	당하동 1343대	272.0	

2-2-1-2 근린생활시설용지 (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필 지			비 고
			번호	위치	면적(㎡)	
근생1	①	1,947.0	1	당하동 1286 대	649.0	• 필지분할불가,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2	당하동 1286-1 대	649.0	
			3	당하동 1286-2 대	649.0	
	②	1,876.2	1	당하동 1286-5 대	626.3	• 필지분할불가,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2	당하동 1286-6 대	624.9	
			3	당하동 1286-7 대	625.0	
	③	1,763.9	1	당하동 1286-9 대	588.0	• 필지분할불가,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2	당하동 1286-10 대	588.0	
			3	당하동 1286-11 대	587.9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필지			비고	
			번호	위치	면적(㎡)		
근생2	①	2,329.0	1	당하동 1282-2 대	777.0	• 필지분할불가,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2	당하동 1282-3 대	776.0		
			3	당하동 1282-4 대	776.0		
근생3	①	5,114.0	1	당하동 1280 대	1,101.0	• 필지분할불가,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2	당하동 1280-1 대	1,003.0		
			3	당하동 1280-2 대	1,003.0		
			4	당하동 1280-3 대	1,003.0		
			5	당하동 1280-4 대	1,004.0		
	②	6,408.5	1	당하동 1280-6 대	1,053.5	• 필지분할불가,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2	당하동 1280-7 대	1,052.0		
			3	당하동 1280-8 대	1,052.0		
			4	당하동 1280-9 대	1,051.0		
			5	당하동 1280-11 대	1,100.0		
근생4	①	3,511.3	1	당하동 1243 대	877.9	• 필지분할불가,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2	당하동 1243-1 대	877.9		
			3	당하동 1243-2 대	878.5		
			4	당하동 1243-3 대	877.0		
근생5	①	1,693.8	1	당하동 1248 대	570.0	• 필지분할불가,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2	당하동 1248-1 대	567.0		
			3	당하동 1248-2 대	556.8		
	②	639.5	1	당하동 1246-10 대	639.5	• 필지분할불가	
	③	1,438.6	1	당하동 1250-1 대	719.6	• 필지분할불가, 연접한 2필지에 한하여 합병허용	
				2	당하동 1250-2 대		719.0
	④	615.3	1	당하동 1246 대	615.3	• 필지분할불가	
	⑤	2,037.5	1	당하동 1246-2 대	679.6	• 필지분할불가,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2	당하동 1246-3 대		679.8
				3	당하동 1246-4 대		678.1
	⑥	2,916.6	1	당하동 1246-6 대	1,000.0	• 필지분할불가,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2	당하동 1246-7 대		958.3
3				당하동 1246-8 대	958.3		
근생6	①	2,409.1	1	당하동 1256-6 대	603.0	• 필지분할불가,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2	당하동 1256-7 대	601.8		
			3	당하동 1256-8 대	602.1		
			4	당하동 1256-9 대	602.2		
근생7	①	1,619.9	1	당하동 1229-12 대	540.0	• 필지분할불가,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2	당하동 1229-13 대	539.9		
			3	당하동 1229-14 대	540.0		
근생8	①	1,361.5	1	원당동 989 대	746.9	• 필지분할불가, 연접한 2필지에 한하여 합병허용	
			2	원당동 989-10 대	614.6		
	②	1,977.9	1	원당동 995 대	659.9	• 필지분할불가,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2	원당동 995-1 대		659.0
				3	원당동 995-2 대		659.0
	③	565.2	1	원당동 995-4 대	565.2	• 필지분할불가	
	④	1,408.9	1	원당동 1000-8 대	704.8	• 필지분할불가, 연접한 2필지에 한하여 합병허용	
				2	원당동 1000-9 대		704.1
근생24	①	1,966.0	1	당하동 1346대	656	• 필지분할불가,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2	당하동 1346-1대	655		
			3	당하동 1346-2대	655		
	②	1,063.0	1	당하동 1346-4대	531	• 필지분할불가, 연접한 2필지에 한하여 합병허용	
				2	당하동 1346-5대		532
	③	2,065.0	1	당하동 1348-6대	689	• 필지분할불가,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필지			비고
			번호	위치	면적(m ²)	
			2	당하동 1348-5대	688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3	당하동 1348-4대	688	
근생27	①	3,600.0	1	원당동 1018-1 대	1,800.0	• 필지분할불가, 연접한 2필지에 한하여 합병허용
			2	원당동 1018-2 대	1,800.0	

2-2-1-3 공동주택용지 (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AA1	-	43,894.0	당하동 1314-2 대	43,89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지 분할 불허, 합병 불허 • 영구임대 (AA5, AA10-2, AA19, AA35-2) • 국민임대 (AA5, AA7, AA10-2, AA19, AA34, AA35-2) • 임대 (AA26, AA27, AA30, AA31) • 행복주택 (AA9, AA35-1)
AA2	-	68,818.0	당하동 1276-2 대	68,818.0	
AA3	-	40,736.0	당하동 1318-8 대	40,736.0	
AA4	-	57,122.0	당하동 1272-2 대	57,122.0	
AA5	-	32,871.0	당하동 1272-4 대	32,871.0	
AA6	-	40,514	-	40,514	
AA7	-	35,941	-	35,941	
AA8	-	18,169.0	당하동 1305-1 대	18,169.0	
AA9	-	47,962.0	원당동 1094 대	47,962.0	
AA10-1	-	82,176.5	원당동 1026-1 대	82,176.5	
AA10-2	-	38,625.0	원당동 1026 대	38,625.0	
AA11	-	76,618.0	원당동 1014 대	76,618.0	
AA12-1	-	42,974.0	원당동 987 대	42,974.0	
AA12-2	-	88,622.0	원당동 987-1 대	88,622.0	
AA13-1	-	42,566.0	원당동 1020-6 대	42,566.0	
AA13-2	-	57,531.0	원당동 1020-5 대	57,531.0	
AA14	-	55,091.5	원당동 1020-1 대	55,091.5	
AA34	-	55,778.0	당하동 1327-1 대	55,778.0	
AA35-1	-	30,257.0	당하동 1335-3 대	30,257.0	
AA35-2	-	42,492.0	당하동 1335-2 대	42,492.0	
AB1	-	34,047.0	당하동 1311-1 대	34,047.0	
AB2	-	57,524.0	당하동 1314 대	57,524.0	
AB3-1	-	41,342.0	당하동 1316-2 대	41,342.0	
AB3-2	-	65,934.0	당하동 1316-1 대	65,934.0	
AB4	-	69,448.0	당하동 1318-6 대	69,448.0	
AB5	-	44,971.0	당하동 1274 대	44,971.0	
AB6	-	45,732.0	당하동 1254-1 대	45,732.0	
AB9	-	31,541.0	원당동 1082-3 대	31,541.0	
AB10	-	31,188.0	원당동 1084-1 대	31,188.0	
AB11	-	21,818.0	원당동 1063 대	21,818.0	
AB12	-	19,487.0	원당동 1065-2 대	19,487.0	
AB13	-	47,099.0	원당동 1063-2 대	47,099.0	
AB14	-	74,574.0	원당동 1024 대	74,574.0	
AB15-1	-	65,087.0	원당동 1022-1 대	65,087.0	
AB15-2	-	59,667.0	원당동 1022 대	59,667.0	
AB16	-	85,540.0	원당동 1018 대	85,540.0	

2-2-1-4 주상복합용지 (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RC1	-	19,759.0	원당동 1061-1 대	19,759.0	• 필지 분할 불허 공동주택의 비율 : 70%이상, 80%미만
RC3	-	18,448.0	당하동 1235 대	18,448.0	• 필지 분할 불허, 공동주택의 비율 : 80%이상, 90%미만
RC4	-	19,958.0	당하동 1233-1 대	19,958.0	• 필지 분할 불허, 공동주택의 비율 : 80%이상, 90%미만

2-2-1-5 상업용지 (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필 지			비 고
			번호	위치	면적(㎡)	
계		123,883.6	-		123,883.6	
C1	①	12,975	1	원당동 1059-2 대	4,273.0	• 필지분할불가, 연접한 3필지에 한하여 합병허용 대지분할가능선 지정획지는 그선에 따라 분할가능
			2	원당동 1059-1 대	4,529.0	
			3	원당동 1059 대	4,173.0	
C2	①	8,444.0	1	원당동 1067-4 대	1,718.0	• 필지분할불가, 연접한 2필지에 한하여 합병허용
			2	원당동 1067-3 대	1,718.0	
			3	원당동 1067-2 대	1,717.0	
			4	원당동 1067-1 대	1,717.0	
			5	원당동 1067 대	1,574.0	
C3	①	10,010.6	1	당하동 1237-4 대	1,959.9	• 필지분할불가, 연접한 2필지에 한하여 합병허용
			2	당하동 1237-3 대	2,010.7	
			3	당하동 1237-2 대	2,013.3	
			4	당하동 1237-1 대	2,013.1	
			5	당하동 1237 대	2,013.6	
C4	①	6,190.5	1	당하동 1235-10 대	1,548.9	• 필지분할불가, 연접한 2필지에 한하여 합병허용
			2	당하동 1235-9 대	1,546.9	
			3	당하동 1235-8 대	1,547.1	
			4	당하동 1235-7 대	1,547.6	
C5	①	7,651.0	1	당하동 1235-2 대	2,551.0	• 필지분할불가, 연접한 2필지에 한하여 합병허용
			2	당하동 1235-3 대	2,550.0	
			3	당하동 1235-4 대	2,550.0	
C6	①	2,392.0	1	원당동 1030-10 대	798.0	• 필지분할불가, 연접한 2필지에 한하여 합병허용
			2	원당동 1030-11 대	798.0	
			3	원당동 1030-12 대	796.0	
	②	3,951.0	1	원당동 1030-8 대	963.0	• 필지분할불가, 연접한 2필지에 한하여 합병허용
			2	원당동 1030-7 대	996.0	
			3	원당동 1030-6 대	996.0	
			4	원당동 1030-5 대	996.0	
	③	3,698.0	1	원당동 1030-3 대	924.0	• 필지분할불가, 연접한 2필지에 한하여 합병허용
			2	원당동 1030-2 대	925.0	
			3	원당동 1030-1 대	924.0	
			4	원당동 1030 대	925.0	
	C7	①	1,080.0	1	원당동 1033-4 대	1,080.0
②		2,182.0	1	원당동 1033-2 대	1,091.0	• 필지분할불가, 연접한 2필지에 한하여 합병허용
			2	원당동 1033-1 대	1,091.0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필 지			비 고		
			번호	위치	면적(m ²)			
	③	2,135.0	1	원당동 1033-7 대	1,067.0	• 필지분할불가, 연접한 2필지에 한하여 합병허용		
			2	원당동 1033-8 대	1,068.0			
	④	2,182.0	1	원당동 1033-10 대	1,091.0			
			2	원당동 1033-11 대	1,091.0			
C8	①	4,951.0	1	원당동 1035-5 대	1,651.0	• 필지분할불가, 연접한 2필지에 한하여 합병허용		
			2	원당동 1035-4 대	1,650.0			
			3	원당동 1035-3 대	1,650.0			
	②	3,854.0	1	원당동 1035-1 대	1,927.0			
			2	원당동 1035 대	1,927.0			
C9	①	5,279.0	1	원당동 1028 대	5,279.0	• 필지분할불가		
	②	9,734.5	1	원당동 1028-2 대	9,734.5	• 필지분할불가		
C10	①	3,820.0	1	원당동 1040-5 대	1,274.0	• 필지분할불가, 연접한 2필지에 한하여 합병허용		
			2	원당동 1040-4 대	1,273.0			
			3	원당동 1040-3 대	1,273.0			
	②	2,887.0	1	원당동 1040-1 대	1,443.0			
			2	원당동 1040 대	1,444.0			
C11	①	3,842.0	1	원당동 1043-7 대	960.0	• 필지분할불가, 연접한 2필지에 한하여 합병허용		
			2	원당동 1043-6 대	961.0			
			3	원당동 1043-5 대	960.0			
			4	원당동 1043-4 대	961.0			
	②	2,060.0	1	원당동 1043-2 대	1,030.0			
			2	원당동 1043-1 대	1,030.0			
	③	3,427.0	1	원당동 1043-10 대	1,714.0			
			2	원당동 1043-11 대	1,713.0			
	④	2,735.0	1	원당동 1043-13 대	1,367.0			
			2	원당동 1043-14 대	1,368.0			
	C12	①	4,044.0	1	원당동 1041 대		2,022.0	• 필지분할불가, 연접한 2필지에 한하여 합병허용
				2	원당동 1041-1 대		2,022.0	
②		4,702.0	1	원당동 1041-3 대	2,340.0			
			2	원당동 1041-4 대	2,362.0			
③		5,495.0	1	원당동 1041-6 대	1,832.0			
			2	원당동 1041-7 대	1,831.0			
			3	원당동 1041-8 대	1,832.0			
④		4,162.0	1	원당동 1041-10 대	2,081.0			
			2	원당동 1041-11 대	2,081.0			

2-2-1-6 업무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업무1	-	2,410.0	인천시 서구 당하동 1318-5 대	2,410.0	•3필지 이내 분할가능
업무2	-	1,700.0	인천시 서구 당하동 1318-4 대	1,700.0	•3필지 이내 분할가능
업무3	-	23,306.0	인천시 서구 당하동 1241-1 대	23,306.0	•3필지 이내 분할가능
업무4	-	23,306.0	인천시 서구 당하동 1241-2 대	23,306.0	•3필지 이내 분할가능
업무5	-	2,617.0	인천시 서구 원당동 1065 대	2,617.0	•3필지 이내 분할가능
업무6	-	2,768.0	인천시 서구 원당동 1018-3 대	2,768.0	•3필지 이내 분할가능
업무16	-	19,268.9	인천시 서구 당하동 1322-1대	19,268.9	•3필지 이내 분할가능
업무17	-	16,723.0	인천시 서구 당하동 1329대	16,723.0	•3필지 이내 분할가능

2-2-1-7 교육시설용지 (변경없음)

(1) 유치원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유1	-	5,340.0	인천시 서구 당하동 1272-5 학	5,340.0	
유2	-	1,236.0	인천시 서구 당하동 1318-2 학	1,236.0	
유3	-	2,147.0	인천시 서구 원당동 1094-3 학	2,147.0	
유4	-	4,202.0	인천시 서구 원당동 1065-4 학	4,202.0	
유5	-	1,210.0	인천시 서구 당하동 1256-11 대	1,210.0	
유11	-	2,700.3	인천시 서구 원당동 1003 대	2,700.3	

(2) 초등학교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초1	-	14,000.0	인천시 서구 당하동 1272-6 학	14,000.0	
초2	-	14,000.0	인천시 서구 당하동 1318 학	14,000.0	
초3	-	14,001.0	인천시 서구 원당동 1094-2 학	14,001.0	
초4	-	14,026.6	인천시 서구 원당동 1020-2 학	14,026.6	
초5	-	14,024.5	인천시 서구 원당동 1016-5 학	14,024.5	

(3) 중학교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중1	-	14,000.0	인천시 서구 당하동 1272-8 학	14,000.0	
중2	-	14,000.2	인천시 서구 원당동 1016-3 학	14,000.2	
중3	-	15,000	인천시 서구 불로동 산85임 일원	15,000	
중4	-	14,930	인천시 서구 불로동 306-22학 일원	14,930	불로중학교
중5	-	15,000	인천시 서구 마전동 산179-6임 일원	15,000	
중6	-	15,000	인천시 서구 불로동 247-16잡 일원	15,000	

(4) 고등학교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고1	-	15,007.0	인천시 서구 당하동 1272 학	15,007.0	
고2	-	15,000.3	인천시 서구 원당동 1016-1 학	15,000.3	

(5) 교육연구시설 (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교육1	-	15,411.0	인천시 서구 당하동 350-2대 일원	15,411.0	인천영어마을
교육2	-	6,878.0	인천시 서구 당하동 549학 일원	6,878.0	서구영어마을

(6) 특수학교 (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특1	-	12,000.0	인천시 서구 당하동 1348-7대	12,000.0	

2-2-1-8 기타시설용지 (변경없음)

(1) 주차장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주2	-	1,225.0	인천시 서구 당하동 1302 차	1,225.0	
주3	-	901.0	인천시 서구 당하동 1288-6 차	901.0	
주5	-	1,419.0	인천시 서구 당하동 1282-1 차	1,419.0	
주6	-	2,846.0	인천시 서구 원당동 1088-7 차	2,846.0	
주7	-	2,255.3	인천시 서구 원당동 1086-2 차	2,255.3	
주8	-	3,477.0	인천시 서구 원당동 1067-5 차	3,477.0	
주9	-	2,311.2	인천시 서구 당하동 1250 차	2,311.2	
주10	-	1,921.8	인천시 서구 당하동 1235-6 차	1,921.8	
주11	-	1,055.0	인천시 서구 원당동 1033-5 차	1,055.0	
주12	-	1,175.0	인천시 서구 원당동 1033-12 차	1,175.0	
주13	-	1,682.0	인천시 서구 원당동 1043-9 차	1,682.0	
주14	-	3,784.0	인천시 서구 원당동 1038-1 차	3,784.0	
주15	-	1,868.9	인천시 서구 원당동 1048-11 차	1,868.9	
주16	-	1,761.1	인천시 서구 당하동 1258 차	1,761.1	
주17	-	3,092.0	인천시 서구 원당동 1000-7 차	3,092.0	
주18	-	778.7	인천시 서구 원당동 997 차	778.7	
주36	-	1,313.0	인천시 서구 당하동 1348-2차	1,313.0	
주47	-	1,060.7	인천시 서구 원당동 1073차	1,060.7	
주53	-	653.0	인천시 서구 당하동 1342-3차	653.0	

(2) 종교시설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종2	-	1,964.0	인천시 서구 당하동 1318-1 종	1,964.0	
종3	-	1,330.0	인천시 서구 당하동 1310-1 종	1,330.0	
종4	-	1,659.0	인천시 서구 원당동 1092 종	1,659.0	
종5	-	3,414.0	인천시 서구 원당동 1088 종	3,414.0	
종6	-	2,263.0	인천시 서구 원당동 1086-1 종	2,263.0	
종8	-	2,695.1	인천시 서구 원당동 1020-3 종	2,695.1	
종9	-	3,280.3	원당동 1000-6 종	3,280.3	
종16	-	1,340.0	인천시 서구 당하동 1348-1대	1,340.0	

(3) 문화복합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문복1	-	4,899.4	인천시 서구 원당동 1038 대	4,899.4	

(4) 문화재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문1	-	18,383.0	인천시 서구 원당동 산82-1임 일원	18,383.0	

(5)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위1	-	1,919.1	인천시 서구 원당동 1086-3 주	1,919.1	가스충전소
위2	-	1,448	인천시 서구 원당동 2전 일원	1,448	주유소
위4	-	1,525	인천시 서구 당하동 665답 일원	1,525	주유소
위5	-	1,443.0	인천시 서구 당하동 1333-3대	1,443.0	주유소
위6	-	1,470.0	인천시 서구 당하동 1333-4대	1,470.0	가스충전소



(6) 가스공급설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가2	-	25.0	인천시 서구 원당동 1041-14 잡	25.0	

(7) 하수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오1	-	4,620.0	인천시 서구 원당동 1088-2 잡	4,620.0	오수중계펌프장

(8) 유수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저1	-	10,956.0	인천시 서구 당하동 1312-5 유	10,956.0	저류시설
저2	-	6,256.0	인천시 서구 당하동 1278 유	6,256.0	저류시설 (수변공원1 중복결정)

(9) 하천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천1	-	102,090.7	인천시 서구 원당동 1081 천 일원	102,090.7	계양천(지방2급)
천2	-	31,907.8	인천시 서구 당하동 11232 천 일원	31,907.8	소하천(매천)

※ 천1에 도로중복 면적 5,724㎡(도로중복 4,906㎡, 보행자전용도로 중복 500㎡) 포함

※ 천2에 도로중복 면적 2,662㎡(도로중복 2,092㎡, 보행자전용도로 중복 560㎡) 포함

(10) 도시지원시설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	필 지			비 고
			번 호	위 치	면 적(㎡)	
도시16	-	35,550	1	당하동 1325-1대	3,338	• 필지간 공동건축 가능
			2	당하동 1325대	9,895	
			3	당하동 1325-3대	9,431	
			4	당하동 1325-2 대	12,886	

(11) 물류유통시설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	필 지 / 획 지			비 고
			번호	위 치	면 적(㎡)	
유통1-1	-	54,474.6	1	당하동 1312 대	14,804.6	• 필지/획지간 공동건축 가능
			2	당하동 1312-1 대	20,963.0	
			3	당하동 1312-2 대	18,707.0	
유통1-2	-	37,016.0	1	당하동 1312-3 대	15,693.0	• 필지/획지간 공동건축 가능
			2	당하동 1312-4 대	21,323.0	
유통2	-	36,499.1	-	당하동 1350대	36,499.1	
유통3	-	66,064.0	-	당하동 1333대	66,064.0	• 대지분할가능선 지정획지는 그 선에 따라 분할가능

(12) 통신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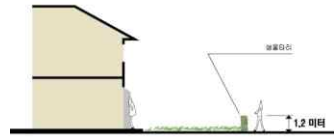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통신1	-	94.7	원당동 1020-8 잡	94.7	

2-2-2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2-2-2-1 일반형 단독주택용지

도 면 번 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E1~E2, F1~F3, F15	E1~E2, F1~F3, F15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 용도는 <별표 1-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며, 지하층의 용도는 교육용 근린생활시설 및 독립된 가구의 거주공간과 욕실, 취사시설의 설치를 불허함 “일반형 단독주택용지”의 건축물 용도표시는 RD1(일반형), RD2(점포형) 로 구분하며, <별표 1-1>에 따라 허용용도로 지정된 점포겸용 주택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행지침 1편 [1-1-5-9](점포겸용 주택)’의 규정을 따름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 1-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기준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 1-1><별표 1-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높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층수는 <별표 1-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3층 이하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물의 1층 전체를 건물의 주출입구, 계단, 주차장, 조경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로 이용할 경우 해당 층을 층수산정에서 제외함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남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법’제61조 및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이격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의 1/2 이상
		배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로미관 증진 및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전면도로변, 완충녹지 등에 면하여 1미터의 건축한계선을 지정한다. 건축한계선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건축물 배치시 주방향은 채광, 통풍, 일조권, 진출입구 등을 고려함
E1~E10, F1~F18	E1~E10, F1~F18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벽 재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 전면과 측, 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조성하여야 하며, 주변 건축물과도 조화를 유지하여야 하고,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함 -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의 외벽이나 기초벽 등 도로에 면하는 건물 기단부는 지상층의 외벽과 동일하게 처리함 - 도로 또는 공원변에 면한 점포겸용주택 건축물의 1층을 근린생활시설용도로 사용할 경우 전면부의 외벽면은 50퍼센트 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하고, 셔터는 투시형 셔터를 설치함 단독주택용지 건축물의 외벽은 가급적 페인트 사용을 지양하여 재료의 물성, 색상이 그대로 드러나게 한다. 단, 필요에 의하여 채색을 할 경우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 단독주택용지 건축물의 외벽 재료는 목재, PC콘크리트 판, 내후성 강판, 벽돌, 점토 판, 유리, 무광 금속판재, 외장합판 등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되도록 권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료의 본질적인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재료 - 시간에 따라 변해가는 자연재료 - 사용된 재료의 물성을 유지하고 있는 공업 생산재 - 상기 재료가 조합된 공업 생산제품 - 첨단기술에 의해 생겨난 재료 단독주택용지 건축물 내·외장재는 환경 친화적 자재 및 천연자연자재 사용을 권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 친화적 자재’라 함은 자원재활용 에너지 절감 환경오염 저감 등을 위하여 도입하는 것으로서 환경마크 또는 GR마크를 획득한 자재를 말함 - 천연자연재료’는 건축 재료로 사용한 후에도 재활용 재사용이 가능한 재료로 흙, 목재, 석재, 천연직물 등이 있으며 환경부하 저감 재료도 이에 포함함 1층 바닥높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층에 여러 개의 점포가 있는 경우, 보행자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개별 점포로의 출입만을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를 설치를 불허함. 단, 경사지 등 지형적인 이유로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함 - 1층 바닥의 마감높이는 지형적 이유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도로의 평균 지반고 이상으로의 차이가 20센티미터 이하로 설치함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붕 및 옥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포겸용 주택의 경우에는 경사지붕을 원칙으로 적용함 - 평지붕은 전체 지붕면적의 10분의 40내에서 허용하며, 평지붕으로 계획된 부분은 옥상녹화를

도면번호	위치(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권장함 - 경사지붕으로 계획된 경우에는 경사도는 1:1 ~ 1:3 범위로 하고, 실외기 설치공간을 계획시 반드시 고려하며 또한, 난간높이의 경사지붕면을 평지붕 외곽에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며, 박공 또는 모임, 외쪽형식의 경사지붕으로 설치함 - 평지붕으로 계획된 경우에는 테라스 혹은 정원의 개념으로 사용하며, 옥상녹화를 권장하며, 가로경관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실외기, 안테나 등을 설치가능 함 - 경사의 방향은 가로방향에 대해 가급적 직교방향으로 계획하며, 인접건물이 경사지붕인 경우 시각적(경사방향, 경사각도 등), 실용적(우수처리 등) 조화를 이루어 설치함 - 계단실, 물탱크 등의 옥탑 지붕 상부의 돌출을 불허하며 단, 점포겸용 주택에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될 경우 지붕높이 및 옥상층의 부대시설(계단탑, 물탱크탑을 제외한 옥탑, 광고돌출물, 철탑 등)은 4.5미터 혹은 평균 1개 층고 이하로 허용하며, 각종설비(실외기 및 안테나 등)는 전면 가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뒷면 지붕에 설치함 - 지붕의 형태 및 색상을 고려하여 조화로운 차폐시설의 계획을 권장함 • 담장, 대문에 관한 사항 - 건축물의 담장 및 대문의 높이는 1.2미터 이하로 하며, 생울타리, 자연재료 등 투시성이 높은 재료를 사용함
		색채	• 색채 및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 - 건축물 색채는 '시행지침 제3편 [3-6 도시색채]'의 기준을 적용함 -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은 '시행지침 제3편 [3-8 옥외광고물]' 기준을 적용함 - 점포겸용 주택의 광고물은 가로형 광고물 설치를 원칙으로하고, 지상1층 상단 정면에 한하여 설치하며 단, 지하층을 점포로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며, 지하층 출입구 상단에 가로형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음
		건축선	• 건축한계선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가구수	• <별표 1-1>에 따름



<별표 1-1> 단독주택용지 건축물 허용용도·건폐율·용적률·최고층수·세대수

구분		단독주택용지	
도면표시		RD1 (일반형)	RD2 (점포형)
건축물 용도	허용 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서점, 사진관, 표구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학원, 독서실, 노래연습장 ※ 근린생활시설 설치기준 • 위치 : 1층 또는 지하 1층 • 규모 : 총 연면적(지하 1층 포함)의 40% 이하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시설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시설
	건폐율(%)	• 50% 이하	• 60% 이하
기준용적률(%)	• 80% 이하	• 180% 이하	
최고층수	• 2층 이하	• 4층 이하	
해당블록	• E1, E2	• F1~F3, F15	
1필지당 가구수	• 2가구 이하	• 5가구 이하	

<별표 1-2> 일반형 단독주택용지 면적, 세대수, 인구수, 평균면적, 용적률

필지번호	필지면적(㎡)	세대수(호)	인구수(인)	평균면적(㎡)	용적률(%)
E1	20,912.1	87	218	240	80% 이하
E2	13,473.1	56	140	241	80% 이하

필지번호	필지면적(m ²)	세대수 (호)	인구수 (인)	평균면적 (m ²)	용적률(%)
F1	23,181.4	88	220	263	180% 이하
F2	14,051.4	53	133	265	180% 이하
F3	24,697.0	93	232	266	180% 이하
F15	10,598.6	40	100	265	180% 이하

2-2-2-2 근린생활시설용지 (변경없음)

도 면 번호	위 치 (가 구 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근생1~ 근생8, 근생24, 근생27	근생1~ 근생8, 근생24, 근생27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 용도는 <별표 2-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며, 필지별 세부기준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건축물의 용도표시는 NL1(간선형), NL2(일반형), NL3(수변형)로 구분함
		건 폐 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2-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기 준 용 적 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기준용적률은 <별표 2-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높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층수는 <별표 2-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배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NL3(수변형)은 3층 이상 건축한계선과 2층이하 벽면지정선을 지정하여 입면 다양성을 도모함 건축한계선 및 벽면지정선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사지붕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붕은 평지붕 또는 경사지붕을 선택하여 건축할 수 있으나, 인접 주거지역 건축물과의 경관상 조화를 고려하여 지붕형태를 결정하도록 함 NL3(수변형)의 지붕은 옥상공간의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평지붕으로 설치하되, 지붕수평투영면적의 20퍼센트 이내 면적에서 경사구배 10분의 4이상의 경사지붕을 설치할 수 있음 경사지붕 및 평지붕 조성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2-1-5-3]의 내용에 따름 외벽의 재료,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 전면과 측, 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함 근린생활시설용지내 건축물의 1층 전면부의 외벽면은 50퍼센트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하고, 서터는 투시형 서터를 설치함 옥상 및 지붕에는 투시형 또는 철재 파라펫, 옥상조경을 활용하여 옥상시설물을 차폐하여야 하며, 안전시설도 함께 설치함 옥외계단 등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다양한 재료와 색채를 사용하여 건축물과 일체감 있게 계획함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단,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로 인한 보행 안전성 문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1.2미터 이하의 담장, 대문 등을 설치 할 수 있음 실외기의 설치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을 설계할 때부터 냉방기 실외기를 설치하는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여 가능한 외부에 실외기를 설치를 지양함 1층부에 실외기의 설치를 금지하고 실외기에 부속되는 배관이 노출되지 않도록 실외기 설치 위치와 연계하여 덕트나 샤프트를 설치함 노대에 냉방기 실외기를 설치할 경우 가능한 건축물 정면의 후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실외기가 보이지 않도록 차폐함 차폐시설은 형태 · 재료 · 색채적 요소의 특화를 통해 디자인 요소로서 계획하고 입면 재료와 유사성을 가지도록 하여 건축물과 일체감이 있게 조성함 노대에 많은 수의 실외기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총별로 실외기를 설치할 충분한 공간을 확보함 쓰레기 적치장 및 분리수거장 등은 가로환경, 미관, 악취, 방충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 보행동선에서 차폐 및 분리하고 각 건물별로 통합하여 설치하여야 함 설치장소는 해당 건물의 주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공간에 설치하며, 작업동선이 효율적이고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함 원활한 생활폐기물 수거 및 처리를 위하여 해당 건축물의 폐기물 발생량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적재함을 구비하여야 함
색 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색채 및 옥외광고물 		

도면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색채는 '시행지침 3편 [3-6도시색채]'의 기준을 따름 -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은 '시행지침 3편 [3-8 옥외광고물]'의 기준을 따름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한계선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별표 2-1> 근린생활시설용지 건축물 허용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구분		근린생활시설용지
건축물 용도	도면표시	NL1(간선형)
	권장용도	-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판매시설 중 상점 -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제외)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 용도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0% 이하
기준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0% 이하
최고층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층 이하
해당블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생3*5

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위치한 근린생활시설용지의 경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은 불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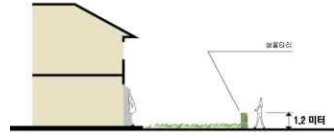
<별표 2-1> 근린생활시설용지 건축물 허용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계속)

구분		근린생활시설용지
건축물 용도	도면표시	NL2(일반형)
	권장용도	-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2종 근린생활시설(게임제공업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제외) - 노유자시설 중 어린이집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 시설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0% 이하
기준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 이하
최고층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층 이하
해당블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생1, 근생6*8, 근생24, 근생27

주) NL2(일반형) 근린생활시설 중 근생13(정송빌딩)의 경우 존치되는 동안에는 존치결정 당시 설치된 시설의 건축물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한시적으로 유지하며, 신축 및 개축시에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건축물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기준을 적용

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E1~E2, F1~F3, F15	E1~E2, F1~F3, F15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 용도는 <별표 1-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며, 지하층의 용도는 교육용 근린생활시설 및 독립된 가구의 거주공간과 욕실, 취사시설의 설치를 불허함 “일반형 단독주택용지”의 건축물 용도표시는 RD1(일반형), RD2(점포형)로 구분하며, <별표 1-1>에 따라 허용용도로 지정된 점포겸용 주택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행지침 1편 [1-1-5-9](점포겸용 주택)’의 규정을 따름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 1-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기준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 1-1><별표 1-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높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층수는 <별표 1-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3층 이하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물의 1층 전체를 건물의 주출입구, 계단, 주차장, 조경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로 이용할 경우 해당 층을 층수산정에서 제외함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남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법’제61조 및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이격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의 1/2 이상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로미관 증진 및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전면도로변, 완충녹지 등에 면하여 1미터의 건축한계선을 지정한다. 건축한계선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건축물 배치시 주방향은 채광, 통풍, 일조권, 진출입구 등을 고려함 		
E1~E2, F1~F3, F15	E1~E2, F1~F3, F15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벽 재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 전면과 측, 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조성하여야 하며, 주변 건축물과도 조화를 유지하여야 하고,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함 -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의 외벽이나 기초벽 등 도로에 면하는 건물 기반부는 지상층의 외벽과 동일하게 처리함 - 도로 또는 공원변에 면한 점포겸용주택 건축물의 1층을 근린생활시설용도로 사용할 경우 전면부의 외벽면은 50퍼센트 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하고, 셔터는 투시형 셔터를 설치함 단독주택용지 건축물의 외벽은 가급적 페인트 사용을 지양하여 재료의 물성, 색상이 그대로 드러나게 한다. 단, 필요에 의하여 채색을 할 경우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 단독주택용지 건축물의 외벽 재료는 목재, PC콘크리트 판, 내후성 강판, 벽돌, 점토 판, 유리, 무광 금속판재, 외장합판 등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되도록 권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료의 본질적인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재료 - 시간에 따라 변해가는 자연재료 - 사용된 재료의 물성을 유지하고 있는 공업 생산재 - 상기 재료가 조합된 공업 생산제품 - 첨단기술에 의해 생겨난 재료 단독주택용지 건축물 내·외장재는 환경 친화적 자재 및 천연자연자재 사용을 권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 친화적 자재’라 함은 자원재활용 에너지 절감 환경오염 저감 등을 위하여 도입하는 것으로서 환경마크 또는 GR마크를 획득한 자재를 말함 - 천연자연재료’는 건축 재료로 사용한 후에도 재활용 재사용이 가능한 재료로 흙, 목재, 석재, 천연직물 등이 있으며 환경부하 저감 재료도 이에 포함함 1층 바닥높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층에 여러 개의 점포가 있는 경우, 보행자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개별 점포로의 출입만을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를 설치를 불허함. 단, 경사지 등 지형적인 이유로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함 - 1층 바닥의 마감높이는 지형적 이유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도로의 평균 지반고 이상으로의 차이가 20센티미터 이하로 설치함 		
		E1~E10, F1~F18	E1~E10, F1~F18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붕 및 옥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포겸용 주택의 경우에는 경사지붕을 원칙으로 적용함 - 평지붕은 전체 지붕면적의 10분의 4이내에서 허용하며, 평지붕으로 계획된 부분은 옥상녹화를 권장함 경사지붕으로 계획된 경우에는 경사도는 1:1 ~ 1:3 범위로 하고, 실외기 설치공간을 계획시 반드시 고려하며 또한, 난간높이의 경사지붕면을 평지붕 외곽에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며, 박공 또는 모임, 외쪽형식의 경사지붕으로 설치함 평지붕으로 계획된 경우에는 테라스 혹은 정원의 개념으로 사용하며, 옥상녹화를 권장하며, 가로경관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실외기, 안테나 등을 설치가능 함 경사의 방향은 가로방향에 대해 가급적 직교방향으로 계획하며, 인접건물이 경사지붕인 경우 시각적(경사방향, 경사각도 등), 실용적(우수처리 등) 조화를 이루어 설치함

도면번호	위치 (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단실, 물탱크 등의 옥탑 지붕 상부의 돌출을 불허하며 단, 점포겸용 주택에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될 경우 지붕높이 및 옥상층의 부대시설(계단탑, 물탱크탑을 제외한 옥탑, 광고돌출물, 철탑 등)은 4.5미터 혹은 평균 1개 층고 이하로 허용하며, 각종설비(실외기 및 안테나 등)는 전면 가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뒷면 지붕에 설치함 - 지붕의 형태 및 색상을 고려하여 조화로운 차폐시설의 계획을 권장함 • 담장, 대문에 관한 사항 - 건축물의 담장 및 대문의 높이는 1.2미터 이하로 하며, 생울타리, 자연재료 등 투시성이 높은 재료를 사용함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색채 및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 - 건축물 색채는 '시행지침 제3편 [3-6 도시색채]'의 기준을 적용함 -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은 '시행지침 제3편 [3-8 옥외광고물]' 기준을 적용함 - 점포겸용 주택의 광고물은 가로형 광고물 설치를 원칙으로하고, 지상1층 상단 정면에 한하여 설치하며 단, 지하층을 점포로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며, 지하층 출입구 상단에 가로형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음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한계선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가구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표 1-1>에 따름



<별표 2-1> 근린생활시설용지 건축물 허용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계속)

구분		근린생활시설용지
건축물 용도	도면표시	NL3(수변형)
	권장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잡화, 의류, 완구, 서적),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 판매시설 중 상점 (복합유통계입제공업의 시설 제외)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2종 근린생활시설(게임제공업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제외)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 시설
건폐율(%)		• 60% 이하
기준용적률(%)		• 200% 이하
최고층수		• 4층 이하
해당블록		• 근생2

2-2-2-3 공동주택용지 (변경없음)

도 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AA1~ AA5, AA8~ AA14, AA34~ AA35, AB1~ AB6, AB9~ AB16	AA1~ AA5, AA8~ AA14, AA34~ AA35, AB1~ AB6, AB9~ AB16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 용도는 <별표 3-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며, 필지별 세부기준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공동주택용지의 건축물 용도표시는 RM(아파트용지)로 표시함 부대복리시설은 주민편익시설로서 '주택법'제2조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의 부대복리시설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요구하는 주민공동시설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때, 부대복리시설 중 단지내 상가, 분산상가 등은 '학교보건법' 등 기타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는 제한함
		건폐율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용적률, 건폐율, 세대수 등은<별표 3-2> 공동주택용지의 주택 규모, 건폐율, 용적률, 세대수, 높이 계획을 참조함. 단 주택건설사업권자(또는 건축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여된 세대수 범위 내에서 정해진 주택의 규모보다 작은 면적의 규모로 계획할 수 있음 공동주택용지의 필지별 건폐율, 용적률, 높이는 <별표 3-2>에서 규정한 내용을 초과할 수 없음. 단 확정측량시 대지면적 감소에 따라 특정블록의 용적률이 지구단위계획에서 규정된 용적률을 초과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용적률을 충족한 것으로 봄 공동주택용지내 건축물의 층수가 획일적으로 조성되지 않도록 지구단위계획에서 최고층수를 지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층수를 계획하도록 유도함, 단 건축물 1개동 내에서의 층수 변화의 경우 입면의 지나친 고저차를 지양하기 위하여 3개층 범위 내에서 조화롭게 계획할 것을 권장함 인접 주거공간(주거동의 외벽간 최단거리가 10미터 미만인 경우)의 층수변화는 다음과 같이 규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접주거동 중 가장 낮은 층이 15층 이하일 경우에는 인접 주거공간에 2개층이상 층수변화를 주어야하며 단, 가장 낮은 층이 10층 이하일 경우에는 예외로 함
		높 이	
		건축기준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지내 공지(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 조성에 따른 기준용적률의 완화항목과 내용은 '시행지침 제1편 [1-2-4-2]'의 규정을 따름
		배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층(10층이하)배치구간"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르며, 배치기준은 '시행지침 제1편 [1-1-5-28]'의 규정을 따름 "중층(11층~15층)배치구간"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르며, 배치기준은 '시행지침 제1편 [1-1-5-29]'의 규정을 따름 "탑상형 배치구간"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르며, 배치기준은 '시행지침 제1편 [1-1-5-30]'의 규정을 따름 "건축물 직각배치구간"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르며, 그 조성방법은 다음사항을 따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각배치구간에 관한 배치기준은 '시행지침 제1편 [1-1-5-31]'의 기준에 따름 단, 대지형상이 건축물 배치사항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직각을 준수하지 못하더라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기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함 "통경구간"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르며, 배치기준은 '시행지침 제1편 [1-1-5-33]'의 규정을 따름 "부대복리시설 배치구간"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르며, 배치기준은 '시행지침 [1-1-5-34]'의 규정을 따름 부대복리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주택단지의 특화요소로서 "부대복리시설"의 위치를 계획하여야하며,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의 제25조 내지 제55조의2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 단지내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함 부대시설 중 근린생활시설 등의 설치기준은 "근린생활시설"등은 각 블록마다 1개소가 배치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1개소에 집중하여 배치할 것을 권장함. 다만, 규모가 큰 블록으로서
AA1~ AA5, AA8~	AA1~ AA5, AA8~	배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대시설 중 근린생활시설 등의 설치기준은 "근린생활시설"등은 각 블록마다 1개소가 배치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1개소에 집중하여 배치할 것을 권장함. 다만, 규모가 큰 블록으로서

도 면 번 호	위 치 (가 구 번 호)	구 분	계 획 내 용
AA14, AA34~ AA35, AB1~ AB6, AB9~ AB16	AA14, AA34~ AA35, AB1~ AB6, AB9~ AB16		<p>이용상 불편이 초래될 우려가 있을 경우, 소규모 분산 상가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으며 이때, 보행자도로와의 연계를 고려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근린생활시설 등의 면적(전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말함)은 매세대당 6제곱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됨. 다만 그 비율로 산정한 근린생활시설 등의 면적이 5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50제곱미터까지 할 수 있음 - 복리시설 중 주민운동시설, 노인정 등은 공공보행통로나 보행자전용도로변과 같이 보행 접근성이 양호한 위치에 배치할 것을 권장함 • 건축물의 배치를 위한 단차 발생시 1.5미터 이하의 단차는 구배 50퍼센트 이하의 자연 법면으로 조성하도록 하며, 1.5미터를 초과하는 단차는 자연법면과 옹벽설치가 가능하며, 옹벽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5미터 높이를 초과하는 옹벽은 설치를 불허함 - 단, 대지의 형상 및 주변여건 등으로 인해 4.5미터를 초과하는 옹벽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3미터이상 높이의 옹벽설치시 벽면디자인 또는 벽면녹화를 함 - 옹벽 및 법면이 계단식으로 반복될 경우 연속하여 3단 이상의 조성은 불허함 • 옹벽과 마주보는 주거동 최저층 세대의 실내바닥높이가 옹벽 상단부 높이보다 높게하여 옹벽에 의해 최저층 세대의 일조권 및 조망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함 단, 옹벽과 주거동의 이격거리가 옹벽 높이의 3배 이상이며 옹벽전면부에 식재 또는 벽면녹화 등의 경관향상을 위한 조치를 할 경우 단위세대로 사용가능 함
AA1~ AA5, AA8~ AA14, AA34~ AA35,	AA1~ AA5, AA8~ AA14, AA34~ AA35,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호한 일조 및 조망의 확보, 원활한 통행의 보장, 경관 차폐감의 저감 및 질서 있는 스카이라인의 조성 등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1개 층의 호수 및 길이(이하 '주거동의 길이'라 함)를 제한하며 단, 국민임대주택 및 영구임대주택, 행복주택은 예외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층 이하의 주거동은 8호 이하 또는 100미터 이하로 함 - 11층 이상 15층 이하의 주거동은 6호 이하 또는 60미터 이하로 함 - 16층 이상의 주거동은 4호 이하 또는 60미터 이하로 함 -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의 공동주택의 경우 판상형 아파트 주거동의 길이는 60미터 이내로 계획하며, 탑상형 아파트는 주거환경을 고려하여 5호 조합 이내로 계획함 • 주거동의 입면은 최상층부, 기준층부, 지상층부로 구분하며, 각 부분 간에는 재질 변화, 색채 변화, 외관의 디자인 변화 중 최소 2가지 이상을 함께 적용하여 입면변화를 이루며 이때, 최상층부는 재질, 색채, 외관디자인 등이 지붕과 일체감 있게 디자인함 • 공동주택용지내 1개 주동의 입면적은 3,500 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건축하되, 25층 이상 입면적은 20% 범위 내 완화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동의 입면적에 대한 사항은 '시행지침[1-1-5-36]'의 기준에 따라 산정함 • 지붕의 형태는 크게 경사지붕, 곡선지붕, 평지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사지붕으로 설치할 경우 경사도는 10분의 4 이상 10분의 7 이하로 함 - 10층 이하 아파트의 지붕(옥탑부 포함)은 경사지붕을 권장함 - 11층 이상 아파트의 지붕은 평지붕의 옥상녹화를 권장함 • 향후 생활여건의 변화, 주민의 다양한 거주환경요구 등의 증가에 따라 기존주택의 개선이 불가피할 경우 이를 원활히 수용할 수 있는 건축구조 및 설비구조의 "융통형 구조"로 할 것을 권장하며, 그 구조기준은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구조체의 전면철거 없이 리노베이션이 가능한 구조 - 단위세대의 평면 변화가 용이한 구조 - 인접세대와의 부분 또는 전체 통합이 가능한 구조 - 설비구조의 교체가 용이한 구조

도 면 번 호	위 치 (가 구 번 호)	구 분	계 획 내 용
AB1~ AB6, AB9~ AB16	AB1~ AB6, AB9~ AB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로티”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동에 의한 옥외공간의 단절, 보행동선의 우회, 시각적 폐쇄감 해소가 필요한 곳에는 필로티 구조 설치를 권장함 - 필로티구조에 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편 [1-1-5-37]’의 규정을 따름 • 담장 및 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용지내 담장 조성시 담장의 높이는 1.2미터 이하로 하며, 생울타리, 자연재료 등 투시성이 높은 재료를 사용함 - 보행자 전용도로변이나 공원 등의 공공옥외공간시설과 접한 부분에는 담장을 대신하여 식수대 또는 둔덕 등을 조성하여 경계부를 자연스럽게 처리하도록 하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경사로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방음벽 설치시, 가로미관을 고려하여 방음벽의 재료와 형태를 결정함 -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를 위하여 미끄럼방지를 위한 소재를 사용함 • 발코니의 설치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저층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개방형 발코니, 돌출형 발코니, 측면 발코니 등 다양한 유형을 활용하여 입면을 변화있게 계획하는 것을 권장함 - 마감 재료는 외벽과 차이를 두어 조성하도록 권장함 • 기타 건축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층 아파트(10층 이하)의 경우에는 옥탑 높이를 최대한 낮추고, 옥탑부의 입면을 주동의 입면과 차별화하여 디자인 함 - 물탱크 등의 부속시설 설치 시에는 외부로의 노출을 금지함 - 공동주택에서 실외기를 설치하는 공간을 발코니에 만들어 차폐함
		색 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색채 및 옥외광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색채는 ‘시행지침 제3편 [3-6 도시색채]’의 기준을 따름 -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은 ‘시행지침 제3편 [3-8 옥외광고물]’의 기준을 따름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르며, 그 조성 방법은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용지의 대지외곽 경계 중 공원, 도로변 등의 공공공간과 인접한 경우에는 ‘프라이버시 보호와 주행차량 소음저감을 위한 조치’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자 6미터 이상의 건축한계선을 지정함 - 공동주택용지의 대지외곽 경계 중 모퉁이 변에는 결절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준하여 건축한계선을 지정함 -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건축한계선은 주거동에 한하며 그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름. 단,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와 부대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별표2 (대지안의 공지 기준)를 따름

<별표 3-1> 공동주택용지 건축물 용도

구 분		공동주택용지
건축물 용도	도면표시	RM (아파트용지)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 용도
해당블록		AA1~AA5, AA8~AA14, AA34~AA35, AB1~AB6, AB9~AB16

<별표 3-2> 공동주택(아파트)의 주택규모, 건폐율, 용적률, 세대수, 높이, 분양형태

획지번호	주택유형	획지면적(㎡)	세대수(호)	최고층수	건폐율(%)	기준 용적률(%)	배치구간	비 고
AA1	소계	43,894.0	721	25	50% 이하	185% 이하	탑상형, 건축물 직각배치	
	60㎡~85㎡	28,566.0	503					
	85㎡ 초과	15,328.0	218					
AA2	소계	68,818.0	1,131	25	50% 이하	185% 이하		
	60㎡~85㎡	44,784.0	789					
	85㎡ 초과	24,034.0	342					
AA3	60㎡~85㎡	40,736.0	717	25 (일부 해발고도 105m 미만)	50% 이하	185% 이하	저층배치	
AA4	소계	57,122.0	938	25	50% 이하	185% 이하	탑상형, 중층배치	
	60㎡~85㎡	37,149.0	654					
	85㎡ 초과	19,973.0	284					
AA5	소계	32,871.0	1,001	25 (일부 해발고도 105m 미만)	50% 이하	175% 이하	탑상형, 중층배치	영구임대 국민임대
	60㎡ 이하	6,075.0	251					
	60㎡ 이하	26,796.0	750					
AA8	소계	18,169.0	404	25	50% 이하	195% 이하	탑상형배치	
	60㎡ 이하	10,899.0	269					
	60㎡~85㎡	7,270.0	135					
AA9	60㎡ 이하	47,962.0	1,971	25	50% 이하	185% 이하	탑상형배치	행복주택
AA10-1	소계	82,176.5	1,458	25	50% 이하	185% 이하	탑상형, 중층배치	
	60㎡ 이하	26,060.4	583					
	60㎡~85㎡	34,637.2	583					
	85㎡ 초과	21,478.9	292					
AA10-2	소계	38,625.0	1,188	25	50% 이하	175% 이하	탑상형, 중층배치	영구임대 국민임대
	60㎡ 이하	7,160.0	298					
	60㎡ 이하	31,465.0	890					
AA11	소계	76,618.0	1,259	25	50% 이하	185% 이하	건축물 직각배치, 중층배치	
	60㎡~85㎡	49,841.0	878					
	85㎡ 초과	26,777.0	381					
AA12-1	60㎡~85㎡	42,974.0	736	20	50% 이하	180% 이하	탑상형배치	
AA12-2	소계	88,622.0	1,417	20	50% 이하	180% 이하	탑상형배치	
	60㎡~85㎡	57,637.0	988					
	85㎡ 초과	30,985.0	429					
AA13-1	60㎡~85㎡	42,566.0	702	25	50% 이하	174% 이하	탑상형, 건축물 직각배치	
AA13-2	60㎡~85㎡	57,531.0	964	25	50% 이하	176% 이하	탑상형배치	
AA14	소계	55,091.5	905	25	50% 이하	185% 이하	탑상형배치	
	60㎡~85㎡	35,829.1	631					
	85㎡ 초과	19,262.4	274					
AA34	60㎡ 이하	55,778.0	1,746	25	50% 이하	195% 이하	건축물 직각배치	국민임대

획지번호	주택유형	획지면적(㎡)	세대수(호)	최고층수	건폐율(%)	기준 용적률(%)	배치구간	비 고
AA35-1	60㎡ 이하	30,257.0	855	30	50% 이하	175% 이하	건축물 직각배치, 중층배치	행복주택
AA35-2	소계	42,492.0	1,083	30	50% 이하	175% 이하	건축물 직각배치, 저층배치, 중층배치	국민임대 영구임대
	60㎡ 이하	27,243.0	593					
	60㎡ 이하	15,249.0	490					
AB1	소계	34,047.0	873	25	50% 이하	225% 이하	탐상형배치	
	60㎡ 이하	20,412.0	581					
	60㎡-85㎡	13,635.0	292					
AB2	소계	57,524.0	1,073	25 (일부 해발고도 105m 미만)	50% 이하	210% 이하	탐상형, 건축물 직각배치	
	60㎡-85㎡	37,403.0	748					
	85㎡ 초과	20,121.0	325					
AB3-1	소계	41,342.0	789	25 (해발고도 105m 미만)	50% 이하	215% 이하	건축물 직각배치	
	60㎡-85㎡	26,880.0	550					
	85㎡ 초과	14,462.0	239					
AB3-2	소계	65,934.0	1,229	25 (해발고도 105m 미만)	50% 이하	210% 이하	건축물 직각배치	
	60㎡-85㎡	42,828.0	856					
	85㎡ 초과	23,106.0	373					
AB4	소계	69,448.0	1,295	25 (일부 해발고도 105m 미만)	50% 이하	210% 이하		
	60㎡-85㎡	45,170.0	903					
	85㎡ 초과	24,278.0	392					
AB5	60㎡-85㎡	44,971.0	920	30	50% 이하	215% 이하		
AB6	60㎡-85㎡	45,732.0	936	30	50% 이하	215% 이하	탐상형배치	
AB9	소계	31,541.0	773	30	50% 이하	215% 이하	탐상형배치	
	60㎡ 이하	18,934.0	515					
	60㎡-85㎡	12,607.0	258					
AB10	소계	31,188.0	764	30	50% 이하	215% 이하	탐상형배치	
	60㎡ 이하	18,722.0	509					
	60㎡-85㎡	12,466.0	255					
AB11	소계	21,818.0	535	30	50% 이하	215% 이하	탐상형배치	
	60㎡ 이하	13,122.0	357					
	60㎡-85㎡	8,696.0	178					
AB12	소계	19,487.0	477	30	50% 이하	215% 이하	탐상형배치	
	60㎡ 이하	11,663.0	317					
	60㎡-85㎡	7,824.0	160					
AB13	소계	47,099.0	941	30	50% 이하	225% 이하	탐상형배치	
	60㎡-85㎡	30,626.0	656					
	85㎡ 초과	16,473.0	285					
AB14	60㎡-85㎡	74,574.0	1,455	30	50% 이하	205% 이하	건축물 직각배치	
AB15-1	60㎡-85㎡	65,087.0	1,301	30	50% 이하	210% 이하	건축물 직각배치	
AB15-2	60㎡-85㎡	59,667.0	1,193	30	50% 이하	210% 이하		
AB16	소계	85,540.0	1,557	30	50% 이하	205% 이하	건축물 직각배치	
	60㎡-85㎡	55,596.0	1,085					
	85㎡ 초과	29,944.0	472					

주1) 용적률은 부대복리시설이 포함된 것임

주2) 유형별 획지면적과 평균면적은 주택건설계획에 따라 변동이 가능함

2-2-2-4 주상복합용지 (변경없음)

도 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RC1, RC3, RC4	RC1, RC3, RC4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 용도는 <별표 4-1>에 따르며 세부기준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공동주택의 비율(당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에 대한 비율임)은 RC1의 경우 7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미만, RC3, RC4의 경우 8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흥 및 위락기능은 불허용도로 함 - 건축물 용도표시는 AC로 함 주거와 주거외 용도가 수직적으로 복합된 주상복합 건축물의 경우에는 주거 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주거동의 출입구·계단 등을 주거외 다른 용도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함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상복합부분의 주택 규모, 세대수, 건폐율, 용적률, 높이 계획 <별표 4-2>참조 전체적인 건축물의 높이는 상업용지와와의 조화를 도모토록 함
		기준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주택의 주택규모는 <별표 4-2>에 규정된 규모 이하로 하며, 주택건설사업권자(또는 건축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여된 세대수 범위 내에서 주택의 규모보다 작은 면적의 규모로 계획할 수 있음
		높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지별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제한은 <별표 4-2>를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음. 단 확정측량시 대지면적 감소에 따라 특정 블록의 용적률이 지구단위계획에 규정된 용적률을 초과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용적률을 충족한 것으로 봄
		건축기준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 확보에 따른 기준용적률 완화항목과 내용은 '시행지침 제1편 [1-2-4-1] 및 [1-2-4-2]'의 규정에 따름
		배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외 용도의 건축물은 가로활성화 유도를 위해 도로에 면하여 도로와 평행하게 배치하도록 권장한다. 단, 주거용도 건축물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동의 형태는 탑상형을 권장하며, 25층 이하 1개 주거동 입면적은 3,500제곱미터 이하, 주거동 1개층의 호수는 6호 이하로 함 주동의 지붕형태는 평지붕에 옥상녹화를 권장함 건축물 1층 상업시설의 외벽면은 50퍼센트 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하고, 셔터는 투시형 셔터를 설치함 담장설치는 불허함. 단 부득이하게 담장설치가 필요한 지역은 담장의 높이 1.2미터 이하의 생울타리, 자연재료 등 투시성이 높은 재료를 사용한 담장을 설치할 수 있다.
		색 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색채 및 옥외광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색채는 '시행지침 [3-6 도시색채]'의 기준을 따른다. -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은 '시행지침 제3편 [3-8 옥외광고물]'의 기준을 따름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서 지정한 건축한계선은 다음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변경이 가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근 대지의 일조, 프라이버시 등 주변지역의 거주환경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가로의 활성화를 위하여 변경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별표 4-1> 주상복합용지의 건축물 용도

구 분		주상복합용지
건축물 용도	도면표시	AC2 (준주거지역)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제외) - 문화및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판매시설 중 상점 - 의료시설 (정심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제외) -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연구소, 도서관 - 노유자시설 - 운동시설 - 업무시설 주1) -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 용도
해당블록		• RC1, RC3, RC4

주1)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은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20%에 한하여 설치가능

주2) 교육환경보호구역내에 위치한 주상복합용지의 경우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시설은 불허용도

<별표 4-2> 주상복합부분 주택규모, 세대수, 건폐율, 용적률, 높이

필지번호	주택유형	획지면적 (㎡)	세대수 (호)	최고층수	건폐율(%)	기준용적률(%)
RC1	소계	19,759.0	390	35	60	250% 이하 (공동주택 : 200% 미만)
	60㎡~85㎡	14,804.0	307			
	85㎡ 초과	4,955.0	83			
RC3	소계	18,448.0	447	35	60	300% 이하 (공동주택 : 270% 미만)
	60㎡~85㎡	12,956.0	333			
	85㎡ 초과	5,492.0	114			
RC4	소계	19,958.0	483	35	60	300% 이하 (공동주택 : 270% 미만)
	60㎡~85㎡	13,980.0	359			
	85㎡ 초과	5,978.0	124			
합 계		58,165.0	1,320			

2-2-2-5 상업용지(변경없음)

도 면 번 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C1~12	C1~12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 용도는 <별표 5-2>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며, 필지별 세부 기준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권장용도가 지정된 경우 지상 건축연면적의 30퍼센트 이상 권장용도를 확보하며, 건축연면적은 기계실, 공조실, 주차장 등 공용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함. 단 C9에 한해서는 가구 ①, ②를 통합하여 권장용도 비율 적용 상업시설용지내 광장 및 보행자전용도로변은 ‘판매시설’ 및 ‘제1종·제2종근린생활시설’을 1층 전면권장용도로 지정하며 1층부 전면권장용도가 지정된 경우에는 1층 건축연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을 권장용도로 확보하여야 함 상업시설용지의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는 상업시설용지에 건축이 가능한 최대규모로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초과 할 수 없으며 단, 도시계획조례 및 건축조례 등에 의거하여 용적률을 완화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적용함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 5-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기준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 5-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높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높이는 <별표 5-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건축기준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 확보에 따른 기준용적률 완화항목과 내용은 ‘시행지침 제1편 [1-2-4-1]’의 규정에 따름
		배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 전면 방향은 주요 간선가로, 보행자 전용도로, 광장, 공원 순으로 향하도록 함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옥상 및 지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시형 또는 철재 파라펫, 옥상조경을 활용하여 옥상시설물을 차폐하여야 하며, 안전시설도 함께 설치하여야 함 계단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옥외계단 등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다양한 재료와 색채를 사용하여 건축물과 일체감 있게 계획함 건축물의 주전면의 1층 바닥높이는 대지내 공지 또는 보도와 평균지반고 이상으로 20센티미터 이상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하며,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경사도 12분의 1이하로 경사로를 설치할 것을 권장함 실외기의 설치기준은 ‘시행지침 제2편 [2-3-4-7]’의 기준을 따름 환기탑의 설치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규모 건물의 공조시설에 부속되는 환기탑은 보행통행로에 설치하지 않음 보행로 주변에 설치할 경우에는 주변의 식재 등으로 충분히 차폐될 수 있도록하며 환기구가 노출될 경우에는 보행자보다 높이 설치함 환기구의 환기방향이 보행통행로를 향하지 않도록 함 건축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채 및 재료를 사용함
		색 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색채 및 옥외광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색채는 ‘시행지침 [3-6 도시색채]’의 기준을 따른다.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은 ‘시행지침 제3편 [3-8 옥외광고물]’ 기준을 따름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지외곽 경계 중 공원, 도로변 등의 공공공간과 인접할 경우 ‘가로활성화 및 가로 디자인 특화 조치’를 위해 건축한계선, 건축지정선 및 벽면지정선을 지정하며, 그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지구단위결정도에서 지정한 건축한계선, 건축지정선 및 벽면지정선은 다음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변경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근 대지의 일조, 프라이버시 등 주변지역의 거주환경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로의 활성화를 위하여 변경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업용지 중 문화재현상변경허용기준 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기준을 따름

<별표 5-1> 상업용지 건폐율·용적률·높이

구 분	일반상업지역(C)				
	S2(역세권)	S3(간선도로)		S4(이면도로)	
건폐율(%)	• 70%이하	• 70%이하		• 70% 이하	
기준용적률(%)	• 700%이하	• 600%이하		• 500% 이하	
최고층수	-	• 12층 이하	• 20층 이하	• 8층 이하	• 10층 이하
해당블록	• C9	• C3, C5, C8, C12	• C1	• C6, C7, C10, C11	• C2, C4

주1) S3~S4의 해당블록별 최고층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별표 5-2> 상업용지 건축물 용도

구분		일반상업지역 C		
		S2(역세권)	S3(간선도로)	S4(이면도로)
주거 및 업무시설군	단독주택	×	×	×
	공동주택	×	×	×
	업무시설	○	●	○
문화 및 집회시설군	문화 및 집회시설	● 제한상영관 제외	○ 제한상영관 제외	○ 제한상영관 제외
	종교시설	○ 종교집회장 (단, 당해용도가 건물의 부수용도인 경우에 한함)	○ 종교집회장 (단, 당해용도가 건물의 부수용도인 경우에 한함)	○ 종교집회장 (단, 당해용도가 건물의 부수용도인 경우에 한함)
	운동시설	○ 육외 철타미 설치된 골프연습장은 제외	○ 육외 철타미 설치된 골프연습장은 제외	○ 육외 철타미 설치된 골프연습장은 제외
	수련시설	×	×	×
	노유자시설	×	×	×
	관광휴게시설	○	○	×
판매시설군	판매시설	●	●	○ 상점 및 이와 유사한 용도에 한함
	위락시설	○	○	○
	숙박시설	○	×	○
교육연구 의료시설군	의료시설	○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제외)	○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제외)	○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제외)
	교육연구시설	○	○	○
산업시설군	공장	×	×	×
	창고시설	×	×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	×
기타 시설군	1종 근린생활시설	○	○	●
	2종 근린생활시설	○	○	●
	운수시설	×	×	×
	자동차 관련 시설	○ 주차장, 세차장에 한함	○ 주차장, 세차장에 한함	○ 주차장, 세차장에 한함
	교정 및 군사시설	×	×	×
	방송통신시설	○	○	○
	발전시설	×	×	×

주1) ●권장용도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용도 / X:불허용도

주2)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공원,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이외의 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으며, 거리의 산정은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른다

주3)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위치한 상업용지의 경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은 불허

2-2-2-5 업무 및 교육시설용지(변경없음)

도 면 번 호	위 치 (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업무1~6, 업무16~17	업무1~6, 업무16~17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 용도표시는 PU(업무용지)로 표시함 건축물 용도는 <별표 6-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며, 필지별 세부기준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존의 관계 법규에 따름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 6-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기준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 6-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높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높이는 <별표 6-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건축기준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 확보에 따른 기준용적률 완화항목과 내용을 '시행지침 제1편 [1-2-4-1]'의 규정에 따름
		배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사지에 위치한 건축물은 지형을 활용하여 배치할 것을 권장함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나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로 인한 보행안전성 문제 등 부득이할 경우 해당 승인권자 (또는 허가권자)가 승인을 거쳐 1.2미터 이하의 담장, 대문 설치 가능
		색 채	-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지외곽 경계 중 공원, 도로변 등의 공공공간과 인접할 경우 '사용자의 안전과 주행차량 소음 저감을 위한 조치'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자 건축한계선을 지정하며, 그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업무1~6, 업무16~17 7 유1~5, 유11, 초1~5, 중1~6, 고1~2, 교육1~2, 특1	유1~5, 유11, 초1~5, 중1~6, 고1~2, 교육1~2, 특1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 용도표시는 E(교육시설용지)로 표시함 건축물 용도는 <별표 6-2>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며, 필지별 세부기준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존의 관계 법규에 따름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 6-2>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기준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 6-2>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높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높이는 <별표 6-2>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배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시설의 경우 가급적 남향 배치를 권장 경사지에 위치한 건축물은 지형을 활용하여 배치할 것을 권장함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나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로 인한 보행안전성 문제 등 부득이할 경우 해당 승인권자 (또는 허가권자)가 승인을 거쳐 1.2미터 이하의 담장, 대문 설치가능
		색 채	-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지외곽 경계 중 공원, 도로변 등의 공공공간과 인접할 경우 '사용자의 안전과 주행차량 소음 저감을 위한 조치'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자 건축한계선을 지정하며, 그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교육시설용지 내 지정된 건축한계선은 소음저감을 위한 이격기능으로 경비실 및 담장은 건축한계선 적용을 제외함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시설용지 중 '대1'은 「사적 제202호 장릉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문화재청 고시 제2017-11호)」 구역에 해당하므로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해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현상변경 허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아울러 문화재보호법 등 문화재 관련 법령 및 문화재청에 고시된 기준의 제·개정으로 인해 본 지침과 부합되지 않을 경우 제·개정된 법령 또는 변경된 기준을 따름

<별표 6-1> 업무용지 건축물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구분		업무용지	
도면표시		PU1	PU2
건축물 용도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업무시설(주민자치센터, 119안전센터, 순찰지구대, 우체국, 수도사업소)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노유자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운동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가, 나, 다목에 한함)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업무시설(법원, 검찰청, 지방행정타운(자치행정, 교육청, 보건소, 세무서 등), 소방서, 경찰서)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노유자시설 교육연구시설 문화및집회시설 운동시설 방송통신시설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 용도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50%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60% 이하 	
기준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500% 이하 	
최고층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5층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층 이하 	
해당블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무1~2, 업무5~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무3~4, 업무16~17 	

주1) 운동시설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가, 나, 다목에 한함)을 계획하는 경우 두 용도의 건축물 연면적은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30% 미만으로 계획한다.

<별표 6-2> 교육시설용지 건축물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구분		교육시설용지			
도면표시		E1	E2	E3	E4
건축물 용도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한 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유치원의 경우 유아교육법에 따른 병설유치원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 용도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50%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50%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50%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50% 이하 	
기준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 이하 	
최고층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4층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5층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5층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5층 이하 	
해당블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1~5, 유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1~2 	

주) 유치원 용지의 경우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제2호에 규정된 용도를 복합하여 건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 규정에 따라 건축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을 유치원으로 건축하여야 함

<별표 6-2> 교육시설용지 건축물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계속)

구분		교육시설용지	
도면표시		E5	E6
건축물 용도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연구시설 (학교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연구시설 중 특수학교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 용도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50% 이하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80%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 이하 	
최고층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4층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5층 이하 	
해당블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1 	

주) 교육연구시설(교육1~2)은 준치시설로서 준치되는 동안에는 준치결정 당시 설치된 시설의 건축물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한시적으로 유지하며, 신축 및 개축시에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건축물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를 적용

2-2-2-6 기타시설용지 (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분	계 획 내 용
공 통	공 통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주변 환경과 서로 조화를 고려함 • 도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면한 대지경계부와 공공공지의 담장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필요시 녹지공간이나 수공간을 두어 담장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함 - 대지경계부에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 등을 고려한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1.2미터이하 높이의 화관목류 생울타리로 설치할 것을 권장함 • 건축물의 색채는 '시행지침 제3편 [3-6 도시색채]' 기준을 따름 •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은 '시행지침 제3편 [3-8 옥외광고물]' 기준을 따름
		건축기준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 확보에 따른 기준용적률 완화항목과 내용은 '시행지침 제1편 [1-2-4-1]'의 규정에 따름
종2~6, 종8~9, 종16	종2~6, 종8~9, 종16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교시설용지의 지붕 형태 및 옥탑 등에 관한 사항 - 옥상층의 부대시설(옥탑, 철탑 등)의 높이는 4.5미터를 초과할 수 없음 - 네온, 백열등류의 장식 등의 설치를 금지하며, 간접조명을 권장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용도표시는 RF(종교시설)로 표시함 • 건축물 용도는 <별표 7-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며, 필지별 세부기준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 7-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기준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 7-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높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높이는 <별표 7-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색 채	-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교용지 중 문화재현상변경허용기준 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기준을 따름
가2	가2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용도표시는 Z2(공급처리시설용지)로 표시함 • 건축물 용도는 <별표 7-2>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며, 필지별 세부기준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 7-2>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기준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 7-2>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높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높이는 <별표 7-2>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배치	-
		색채	-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오1	오1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용도표시는 Z5(공급처리시설용지)로 표시함 • 건축물 용도는 <별표 7-2>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며, 필지별 세부기준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 7-2>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기준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 7-2>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높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높이는 <별표 7-2>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배치	-
		색채	-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저1~2	저1~2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용도표시는 Z6(공급처리시설용지)로 표시함 • 건축물 용도는 <별표 7-2>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며, 필지별 세부기준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분	계 획 내 용
		건폐율	•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 7-2>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기준용적률	•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 7-2>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높이	• 건축물의 높이는 <별표 7-2>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배치	-
		색채	-
		건축선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위1~2, 위4~6	위1~2, 위4~6	용도	• 건축물 용도표시는 주유(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용지), 총(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용지)로 표시함 • 건축물 용도는 <별표 7-3>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며, 필지별 세부기준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 블록내 모든시설은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 이때 부대시설의 바닥 면적의 합계는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40퍼센트 이하로 함
		건폐율	•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 7-3>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기준용적률	•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 7-3>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높이	• 건축물의 높이는 <별표 7-3>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배치	-
		색채	-
		건축선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주2~3, 주5~18, 주36, 주47, 주53	주2~3, 주5~18, 주36, 주47, 주53	용도	• 건축물 용도표시는 P(자동차 관련시설용지)로 표시함 • 건축물 용도는 <별표 7-4>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며, 필지별 세부기준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 주차장용지의 건축물 용도는 '주차장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에 한해 건축하여야 하며, 주차장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와 '주차장법'이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함 - 주차전용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1호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장의사,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및 다중생활시설 제외), 운동시설(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정비공장 제외)(이하 근린생활시설 등이라 함)과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건축연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건폐율	•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 7-4>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기준용적률	•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 7-4>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높이	• 건축물의 높이는 <별표 7-4>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배치	• 근린생활시설 등을 배치할 경우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근린생활시설 등의 비율은 지상층 연면적에 대한 대지면적 비율(용적률)의 30퍼센트 미만이어야 함 - 근린생활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지상 1층부에는 바닥면적의 50퍼센트 이하로 하여야 함
		색채	-
		건축선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기타	• 주차장 중 문화재현상변경허가기준 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기준에 따름
도시16	도시16	용도	• 건축물 용도표시는 I(도시지원시설용지)로 표시함 • 건축물 용도는 <별표 7-5>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며, 필지별 세부기준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건폐율	•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 7-5>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기준용적률	•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 7-5>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높이	• 건축물의 높이는 <별표 7-5>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분	계 획 내 용
		배치	-
		색채	-
		건축선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유통1~3	유통1~3	용도	• 건축물 용도표시는 DC(물류유통시설용지)로 표시함 • 건축물 용도는 <별표 7-6>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며, 필지별 세부기준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건폐율	•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 7-6>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기준용적률	•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 7-6>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높이	• 건축물의 높이는 <별표 7-6>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배치	-
		색채	-
		건축선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통1	통1	용도	• 건축물 용도표시는 CF(통신시설용지)로 표시함 • 건축물 용도는 <별표 7-7>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며, 필지별 세부기준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건폐율	•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 7-7>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기준용적률	•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 7-7>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높이	• 건축물의 높이는 <별표 7-7>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배치	-
		색채	-
		건축선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문1	문1	용도	• 건축물 용도표시는 CH(문화재용지)로 표시함 • 건축물 용도는 <별표 7-8>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며, 필지별 세부기준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건폐율	•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 7-8>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기준용적률	•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 7-8>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높이	• 건축물의 높이는 <별표 7-8>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배치	-
		색채	-
		건축선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문복1	문복1	용도	• 건축물 용도표시는 CU(문화복합용지)로 표시함 • 건축물 용도는 <별표 7-9>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며, 필지별 세부기준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건폐율	•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 7-9>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기준용적률	•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 7-9>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높이	• 건축물의 높이는 <별표 7-9>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배치	-
		색채	-
		건축선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별표 7-1> 종교시설용지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구분		종교시설용지
건축물 용도	도면표시	RF1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다음의 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 종교시설(봉안당 제외) - 노유자시설 -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 용도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50% 이하
기준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 이하
최고층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4층이하, 해발고도 105m 이하(중1)
해당블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26, 종89, 종16

주1) 노유자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을 계획하는 경우 두 용도의 건축물 연면적은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30% 미만으로 계획한다.

<별표 7-2> 공급처리시설 및 하수도, 방재시설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구분		공급처리시설용지		
건축물 용도	도면표시	Z2	Z5	Z6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단에너지공급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수중계펌프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류지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 용도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 이하
기준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80%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80%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80% 이하
최고층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4층 이하 4층 이하, 해발고도 105m미만(가1) 	<ul style="list-style-type: none"> 4층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4층 이하
해당블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1~2

<별표 7-3>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구분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건축물 용도	도면표시	주유	총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다음의 시설 -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호에 의한 부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다음의 시설 -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3호에 의한 부대시설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 용도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50%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 이하
기준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0%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80% 이하
최고층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4층 이하 4층 이하, 해발고도 105m 미만(위4) 	<ul style="list-style-type: none"> 4층 이하
해당블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2, 위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1, 위6

<별표 7-4> 자동차 관련시설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구분		자동차 관련시설용지		
건축물 용도	도면표시	P1	P2	P3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 건축물 및 부속용도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 건축물 및 부속용도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 건축물 및 부속용도 포함)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외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외의 용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외의 용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허용도
건폐율(%)		• 80% 이하	• 80% 이하	• 80% 이하
기준용적률(%)		• 560% 이하	• 400% 이하	• 240% 이하
최고층수		• 7층 이하	• 5층 이하 (주14는 계획지반고에서 20m 이하)	• 3층 이하
해당블록		• 주8, 주10~13	• 주9, 주14	• 주2~3, 주5~7, 주15~18, 주36, 주47, 주53

주) 주14의 지붕은 옥상녹화를 권장한다.

<별표 7-5> 도시지원시설용지의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구분		도시지원시설용지
건축물 용도	도면표시	I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 공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및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시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5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 중 기숙사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회의장, 전시장 -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및 연구소 - 업무시설 - 운동시설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판매시설 중 상점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및 고시원 제외) - 방송통신시설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마~야항 원예시설 등 농업관련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기준용적률(%)		• 300% 이하
최고층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층 이하 • 10층 이하, 해발고도 105m 미만(도시1), 일부 해발고도 105m 미만(도시2~3)
해당블록		• 도시16

주1)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종류 및 규모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에 따름
 주2)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비율은 건축물 연면적의 30%와 업무시설로 조성되는 면적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주3) 판매시설 중 상점,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비율은 건축물 연면적의 20%를 초과할 수 없음

<별표 7-6> 물류유통시설용지의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구분		물류유통시설용지	
도면표시		DC1	DC2
건축물 용도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류유통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류단지시설 중 창고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점포 - 전문상가단지 - 집배송시설 - 공동집배송센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수산물도매시장 -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매시설 -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 창고시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및 고시원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 업무시설 - 운동시설(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유통1-2에 한함) - 노유자시설 중 어린이집(유통1-2에 한함)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 공장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및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시설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5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주) 유통1-1(서측3필지) : 대규모점포, 판매시설의 비율은 건축물 연면적의 50% 이상 확보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류유통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류단지시설 중 창고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점포 - 전문상가단지 - 집배송시설 - 공동집배송센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수산물도매시장 -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매시설(유통2에 한함) - 창고시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및 고시원 제외)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외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0%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0% 이하
기준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0%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0% 이하 	
최고층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해발고도 105m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발고도 105m 미만(유통2에 한함) 	
해당블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통1-1, 유통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통2~3 	

<별표 7-7> 통신시설의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구분		통신시설용지
건축물 용도	도면표시	CF1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다음의 시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통신용 시설 - 방송통신시설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50% 이하
기준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80% 이하
최고층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4층 이하
해당블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1

<별표 7-8> 문화재용지의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구분		문화재용지
건축물 용도	도면표시	CH1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득한 시설에 한함)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 이하
기준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50% 이하
최고층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층 이하
해당블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1

<별표 7-9> 문화복합용지의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구분		문화복합용지
건축물 용도	도면표시	CU1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미만), 전시장, 동·식물원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옥외점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및 다중생활시설 제외) 판매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미만) 중 소매시장, 상점(일반게임제공업 제외) 주) 문화 및 집회시설은 건축물 연면적의 30% 이상 확보해야 함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50% 이하
기준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 이하
최고층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4층 이하(계획지반고에서 20m 미만) ※옥상층 부대시설 높이 포함
해당블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복1

2-2-3 교통처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2-2-3-1 단독주택용지 (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대지내 차량 진·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량의 진·출입구는 필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의 각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음
부설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독주택용지의 부설주차장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및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함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및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 및 다음의 기준을 따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주식 주차장으로 소요주차대수를 확보함. 이때, 필지연접도로를 주차를 위한 진입도로로 간주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자동차의 회전이 용이하도록 주차 진·출입구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에 1미터 이상의 각각 전제를 한 곳 이상으로 함 주차장의 위치는 주차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인접필지 경계부에 위치하는 것을 권장하며, 이 경우 주차장 사이의 인접필지 경계부는 담장설치를 불허함. 단, 필지의 구분을 위한 경계석의 표시는 가능 3대 이상의 부설주차장을 확보해야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공용주차를 위하여 따로 정한 공간을 활용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음 주차장의 포장은 '투수성 포장'을 원칙으로 함 (단, 필로티 등 상부가 가려진 주차장 제외)

2-2-3-2 근린생활시설용지 (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대지내 차량 진·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량의 진·출입구에 대한 지침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르며, 도로의 각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음
부설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및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함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및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을 따름
자전거 보관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린생활시설용지에는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령'에 따라 자전거보관소를 확보하여야 함. 이때, 전면공지가 지정된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1층 근린생활시설에 인접한 전면공지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함 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 시설의 구조 ·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준용함

2-2-3-3 공동주택용지 (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대지내 차량진·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량의 진·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정한 차량출입 권장구간 내의 범위에 설치할 것을 권장함 차량 출입이 허용된 구간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간에서는 차량진·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로급 이상의 도로 및 대로급 도로 교차로로부터 30미터 이내, 중로급 도로 교차로로부터 10미터 단지내 공공보행통로 경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간 하천, 보행로, 버스정차대, 공원 경계부, 완충녹지대 등 공공의 시설이 설치된 곳 단지의 한 면이 생활가로와 접해 있는 경우 생활가로변에 진·출입구를 배치하고 그 주변으로 단지내 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배치함
대지내 차량동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함 간선도로와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권장함 단지내 부대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 등의 주차장은 간선도로에서의 직접 출입을 불허함 단지 출입구를 이용하는 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이 되고 출입구에 면하여 상가가 배치될 경우에는 단지내 도로의 기준 차선에 추가하여 1개의 차선을 상가에 면하여 설치함
부설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용도의 주차대수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차장법' 및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와 '교통영향평가'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이상을 설치한다. 단 국민임대주택 및 영구임대주택, 행복주택의 경우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별표4(주차장 설치기준)의 기준을 따름 주거용도 이외의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및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따라 설치함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및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 및 다음의 기준을 따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주택용지의 단지내 지하 주차장은 '인천광역시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건축심의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단지내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상주차장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단,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지하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는 자동차의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보장치를 설치하고, 지하주차장은 썬큰 혹은 천창 등을 설치하여 자연채광이 가능하고 범죄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함
자전거 보관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지 내 자전거 보관소는 복지관, 관리소, 상가 건물, 주동, 어린이놀이터, 운동시설과 연계하여 설치하도록 하며, 주동의 경우 필로티 공간을 활용할 수 있음 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 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함 자전거 보관소의 설치규모는 1개소 당 '시행지침 제2편<표2-4-6>자전거 보관소의 1개소 당 설치규모'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설치함

2-2-3-4 주상복합용지 (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대지내 차량진·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량의 진·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정한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의 범위에 설치함. 단,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음 차량 출입이 허용된 구간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간에서는 차량진·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천, 보행로, 버스정차대, 가감속차선 설치구간, 공원 경계부, 완충녹지대 등 공공의 시설이 설치된 곳
대지내 차량동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지내 도로와 간선도로와의 교차는 직각 교차를 원칙으로 하며, 단지내 도로와 보행로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자우선구조'로 조성함 대지내 상업기능과 주거기능을 위한 차량동선은 분리하여 계획함
부설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용도의 주차대수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차장법' 및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와 '교통영향평가'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이상을 설치한다. 주거용도 이외의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및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따라 설치함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및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 및 다음의 기준을 따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상복합용지 중 주거용도의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인 블록에 설치하는 지하주차장은 법적주차대수의 80퍼센트 이상을 지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주거이외 용도의 법적주차대수의 90퍼센트 이상을 지하에 설치함 지하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는 자동차의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진출입 통제장치를 설치함
자전거 보관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동의 자전거 보관소는 세대당 0.3대의 규모로 각 주동에서 사용이 편리한 위치에 설치함 상업시설 이용을 위한 자전거 보관소는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령'에 따라 자전거보관소를 확보하여야 함. 이때, 1층 전면공지가 지정된 상업시설의 경우 상업시설에 인접한 전면공지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함 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 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준용함

2-2-3-5 상업용지 (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대지내 차량진·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량의 진·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정한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의 범위에 설치하여야 함. 단,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음 차량출입불허구간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대지내 차량동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자우선구조'로 조성함 간선도로와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원칙으로 함 주차장은 간선도로에서의 직접 출입을 금함
부설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및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함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및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 및 다음의 기준을 따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아니 되며, 지하주차장의 진·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경보장치 또는 신호등을 설치하여야 함
자전거 보관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업시설 이용을 위한 자전거 보관소는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령'에 따라 자전거보관소를 확보하여야 함. 이때, 1층 전면공지가 지정된 상업시설의 경우 상업시설에 인접한 전면공지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함 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 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준용함

2-2-3-6 업무 및 교육시설용지 (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대지내 차량진·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량의 진·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정한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의 범위에 설치함. 단,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음 차량출입불허구간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의 대지에서는 차량출입허용구간 1개소마다 1개의 차량진·출입구만을 허용하고, 건축물의 주출입구는 단차 없이 접근이 가능하도록 함
보행자 동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량 및 보행자를 위한 출입구 외에 1개 이상의 보행자 출입구를 권장하며, 주출입구는 그 중 통행이 많은 곳으로 함 보행자 출입구는 학생들의 접근방향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보행자전용도로나 공원에 면한 학교의 경우에는 그와 연결되게 설치하도록 권장함 대지내 보행자 통행로는 자동차도로와는 반드시 분리되어야 하고, 교차가 불가피한 경우 보행자 우선이 보장되는 구조로 설치함
부설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및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함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및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과 다음의 기준을 따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지내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하주차장 진·출입구는 전면도로 측 대지경계선에서 3미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함. 이때, 대지경계선에서 지하주차장 진·출입구의 시작점까지의 차도는 보도와 단차가 없도록 평탄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함
자전거 보관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무시설 및 교육시설 이용을 위한 자전거 보관소는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령'에 따라 자전거보관소를 확보하여야 함 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 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따름

2-2-3-7 기타시설용지 (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대지내 차량 진·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의 진·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정한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의 범위에 설치하여야 함. 단,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음 • 도로 건너편 단지의 차량의 진·출입구로부터 30미터 이상의 거리를 이격하여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십자형 교차로 함. • 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의 대지에서는 차량출입허용구간 1개소마다 1개의 차량 진·출입구만을 허용함
부설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및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함 •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및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과 다음의 기준을 따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상주차장은 투수성 포장 등 환경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여성 및 장애인을 위한 주차장을 접근이 용이한 곳에 따로 설치할 것을 권장함 - 대지내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하주차장 진·출입구는 전면도로 측 대지경계선에서 3미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함. 단, 전면도로에서 3미터 이상 이격하여 건축한계선을 설치하여야 함. 이때, 대지경계선에서 지하주차장 진·출입구의 시작점까지의 차도는 보도와 단차가 없도록 평탄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함 - 지하주차장 설치시 주차장의 진·출입구에는 감시장치(CCTV), 차량출입차단기를 설치를 권장하고,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경보장치, 신호등 등)을 설치하여야 함 - 지하주차장 내에는 밝은 색채를 사용하며, 시야를 가리는 기둥, 벽을 배제하고, 이동경로, 진·출입구 등의 표지판을 설치함
자전거 보관소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의료복합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도시지원시설, 물류유통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시설 이용을 위한 자전거 보관소는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령’에 따라 자전거보관소를 확보하여야 함 • 자전거 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 시설의 구조 ·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제16조의 규정에 따름

2-2-4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2-2-4-1 일반형 단독주택용지 (변경없음)

도 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E1~E2, F1~F3, F15	E1~E2, F1~F3, F15	대지내공지	-
		기타사항	• 시행지침 [1-1-5-81], [2-1-7]

2-2-4-2 근린생활시설용지 (변경없음)

도 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근생1~8, 근생24, 근생27	근생1~8, 근생24, 근생27	대지내공지	• 시행지침 [1-1-5-39], [1-1-5-40], [2-3-5]
		기타사항	• 시행지침 [1-1-5-81], [2-3-7]

2-2-4-3 공동주택용지 (변경없음)

도 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AA1~5, AA8~14, AB1~6, AB9~16	AA1~5, AA8~14, AB1~6, AB9~16	대지내공지	• 시행지침 [1-1-5-39], [1-1-5-40], [1-1-5-41], [1-1-5-42], [2-4-6]
		기타사항	• 시행지침 [1-1-5-81], [1-1-5-82], [1-1-5-83], [2-4-8]

2-2-4-4 주상복합용지 (변경없음)

도 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RC1, RC3, RC4	RC1, RC3, RC4	대지내공지	• 시행지침 [1-1-5-39], [1-1-5-40], [2-5-6]
		기타사항	• 시행지침 [1-1-5-81], [1-1-5-82], [1-1-5-83], [2-5-8]

2-2-4-5 상업용지 (변경없음)

도 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C1~C12	C1~C12	대지내공지	• 시행지침 [1-1-5-39], [1-1-5-40], [2-6-5]
		기타사항	• 시행지침 [1-1-5-81], [1-1-5-82], [1-1-5-83], [2-6-7]

2-2-4-6 업무 및 교육시설용지 (변경없음)

도 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업무1~6, 업무16~17, 유1~5, 유7~11, 초1~12, 중1~6, 고1~4, 교육1~2, 특1, 대1	업무1~6, 업무16~17, 유1~5, 유7~11, 초1~12, 중1~6, 고1~4, 교육1~2, 특1, 대1	대지내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행지침 [1-1-5-39], [1-1-5-40], [1-1-5-41], [2-7-5]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행지침 [1-1-5-81], [1-1-5-82], [1-1-5-83], [2-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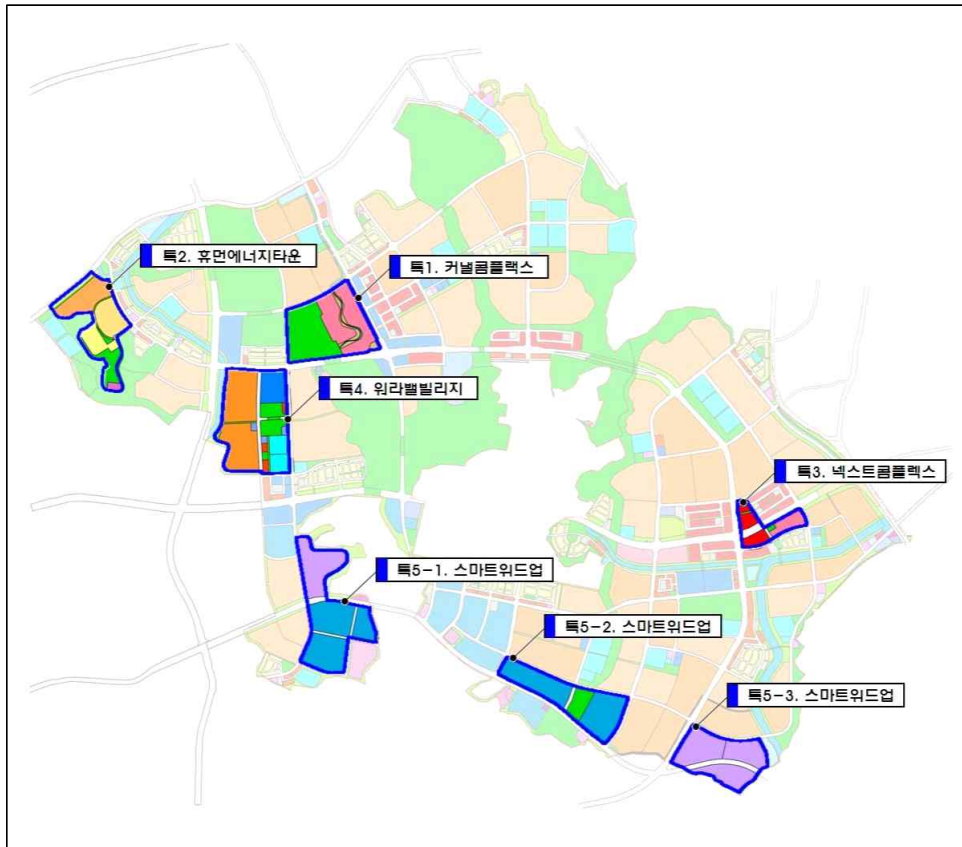
2-3 특별계획구역의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2-3-1 특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구분	면적(㎡)	위치	비고
합계	559,073	-	-
특3	59,136	1. C1, C9, RC1, 문공1	-
특5(1~3)	499,937	2. 가1, 근4, 도시1, 도시2, 도시13~15, 유통1~3	-

2-3-2 특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사유서

도면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특3	• C1, C9, RC1, 문공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양천을 중심으로 상업 및 주거기능의 남부 생활권 중심지 조성 상업, 주거, 커뮤니티 등이 수변공간과 어우러진 친수형 복합단지 조성 	• 특화구역별 도시건축 기본구상안 반영
특5	• 가1, 근4, 도시1, 도시2, 도시13~15, 유통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4차 산업혁명 관련 지식산업 성장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첨단산업 성장지원 클러스터 구축 	



<그림2> 특별계획구역도

2-3-3 특별계획구역별 지침

2-3-3-1 특별계획구역3 : 넥스트 콤플렉스

① 목적

- (가) 역세권 중심의 문화, 쇼핑 등 다양한 용도의 복합개발을 통한 문화도심공간 조성
- (나) 지능형 빌딩시스템 및 에너지관리시스템이 접목된 미래지향적 스마트빌딩 건립
- (다) 수직적 기능 융복합 및 창의적 건축물 계획을 통한 남부생활권의 랜드마크 구축

② 개요

- (라) 위치 : 인천검단지구 계양천 북측
- (마) 지정면적 : 59,136.0㎡
- (바)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 (사) 토지이용계획



<특별계획구역3 토지이용계획표>

구분	면적(㎡)	비율(%)	비고
합계	59,136.0	100.0	
상업용지	27,988.5	47.3	
주상복합	19,759.0	33.4	
공원	1,791.8	3.0	
도 로	9,596.7	16.2	

(아) 상업시설 및 주차장 건축계획

<특별계획구역3 건축계획>

필지번호	면적(㎡)	건폐율	용적률	연면적(㎡)	최고층수
합계	47,747.5	-	-	236,830.0	-
C1	12,975.0	70%	600%	77,850.0	20층 이하
C9	15,013.5	70%	700%	105,105.0	-
RC1	19,759.0	60%	250% (주거200%)	53,875.0	35층 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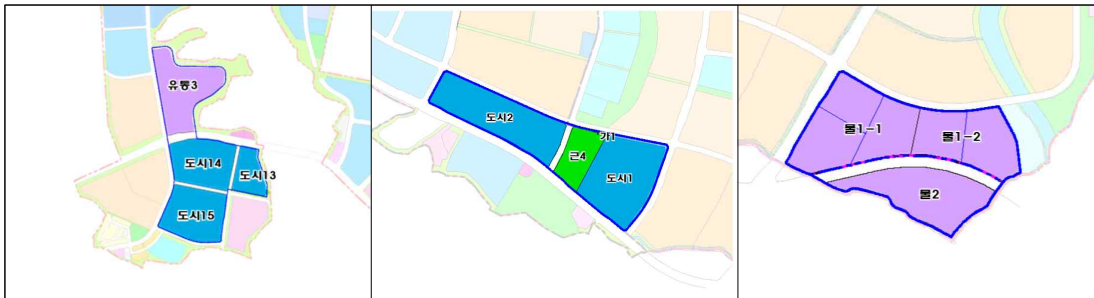
2-3-3-2 특별계획구역5 : 스마트 위드업

(2) 목적

- (가) 검단신도시의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첨단산업단지 조성
- (나) 4차 산업혁명 관련 지식산업 성장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클러스터 구축
- (다) 물류·유통·업무기능이 복합된 첨단물류 유통기지 건립

① 개요

- (라) 위치 : 인천지하철 2호선 독정역 인근 및 검단지구 남단, 계양천 인근
- (마) 지정면적 : 499,937m²
- (바) 용도지역 :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 (사) 토지이용계획



<특별계획구역5 토지이용계획표>

구분	면적(m ²)	비율(%)	비고
합계	499,937	100.0	
도시지원시설용지	253,300	50.7	
물류유통시설용지	195,059.6	39.0	
가스공급설비	25	0.0	
공원	20,931	4.2	
기타 용지	30,621.4	6.1	도로

(아) 도시지원시설 및 물류유통시설 계획

<특별계획구역5 도시지원시설 및 물류유통시설 계획>

구역 (필지번호)	면적(m ²)	건폐율	용적률	연면적(m ²)	최고층수
합계	448,359.6	-	-	1,343,463	
도시1, 도시2, 도시13~15	253,300	60%	300%	758,307	10층 이하 해발고도 105m 미만(도시1), 일부 해발고도 105m 미만(도시2)
유통1-1, 유통1-2	91,490.6	60%	300%	274,449	일부 해발고도 105m 미만
유통2~3	103,569	60%	300%	310,707	해발고도 105m 미만(유통2)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4-119호

도시관리계획(당하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당하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서구청(도시계획과, ☎ 032-560-6873)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4. 6. 1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I. 결정(변경)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마목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II.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1064-4번지 일원

III.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없음)
 -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없음)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	당하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마전동,백석동 일원	807,660.5	

나.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없음)

가)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 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계	807,660.5	100.0		
일반 주거지역	소계	588,089.1	72.8	
	제1종일반주거지역	95,566.5	11.8	
	제2종일반주거지역	291,426.6	36.1	
	제3종일반주거지역	201,096.0	24.9	
준주거지역	91,613.5	11.3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88,916.8	11.0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39,041.1	4.8	

나)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없음)

(1) 교통시설

(가) 도로

■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광로	3	23	40~52	주간선	7,167(992)	동축행장구역계(원당동 8-2답)	중2-495(마전동 499-3도)	일반도로		98.6.12.	
기정	광로	3	27	40	주간선	2,877(1,302)	대2-61	광3-24	일반도로		98.6.12.	
기정	중로	1	137	20	집산	774	광3-27	광3-23	일반도로		00.6.26.	
기정	중로	1	138	20	집산	505	중1-137	중1-139	일반도로		00.6.26.	
기정	중로	1	139	20	집산	967	광3-27	광3-23	일반도로		00.6.26.	
기정	중로	2	166	15	집산	271	광3-27	지구계	일반도로		99.6.23.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167	18	집 산	32	지구계	광3-27	일반도로		01.8.30.	
기정	중로	2	168	15	집 산	131	중1-139	소2-22	일반도로		08.12.1.	
기정	중로	3	95	12	집 산	241	중3-96	중1-137	일반도로		99.6.23.	
기정	중로	3	96	12	집 산	355 (25)	대2-61	소2-7	일반도로		99.6.23.	
기정	중로	3	101	12	집 산	354 (229)	중3-96	중1-137	일반도로		00.6.26.	
기정	중로	3	102	12	집 산	359	광3-23	광3-27	일반도로		00.6.23.	
기정	중로	3	103	12	집 산	144	중1-139	소3-12	일반도로		08.12.1.	
기정	소로	1	1	10	국 지	258	중1-138	중1-138	일반도로		99.6.23.	
기정	소로	1	2	10	국 지	244	중1-138	중1-139	일반도로		99.6.23.	
기정	소로	2	1	8	국 지	605	지구계	중3-102	일반도로		99.6.23.	
기정	소로	2	2	8	국 지	198	지구계	중3-102	일반도로		99.6.23.	
기정	소로	2	3	8	국 지	198	지구계	중3-102	일반도로		99.6.23.	
기정	소로	2	4	8	국 지	214	지구계	중3-102	일반도로		99.6.23.	
기정	소로	2	5	8	국 지	113	소2-1	소2-4	일반도로		99.6.23.	
기정	소로	2	6	8	국 지	35	지구계	일반주택지	일반도로		99.6.23.	
기정	소로	2	7	8	국 지	68	중3-96	소2-6	일반도로		01.8.30.	
기정	소로	2	8	8	국 지	243	소2-12	중3-95	일반도로		99.6.23.	
기정	소로	2	9	8	국 지	156	중3-301	일반주택지	일반도로		99.6.23.	
기정	소로	2	10	8	국 지	49	지구계	소2-8	일반도로		99.6.23.	
기정	소로	2	11	8	국 지	265	대2-61	소2-10	일반도로		99.6.23.	
기정	소로	2	12	8	국 지	225	소2-11	중3-301	일반도로		99.6.23.	
기정	소로	2	13	8	국 지	40	중1-137	영남탑스빌	일반도로		99.6.23.	
기정	소로	2	14	8	국 지	121	중1-137	주거지역	일반도로		99.6.23.	
기정	소로	2	15	8	국 지	308	중1-137	소2-15	일반도로		99.6.23.	
기정	소로	2	18	8	국 지	127	중1-139	지구계	일반도로		99.6.23.	
기정	소로	2	19	8	국 지	219	소2-20	소2-20	일반도로		01.8.30.	
기정	소로	2	20	8~15	국 지	584	중1-139	중1-138	일반도로		99.6.23.	
기정	소로	2	21	8	국 지	59	소2-20	중1-139	일반도로		99.6.23.	
기정	소로	2	22	8	국 지	400	중1-139	지구계	일반도로		99.6.23.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26	8	특 수	221	중1-137	광3-27	보행자 전용도로		99.6.23.	
기정	소로	2	27	8	특 수	216	39호 어린이공원	중1-139	보행자 전용도로		99.6.23.	
기정	소로	2	28	8	국 지	333	광3-23	소2-18	일반도로		08.12.1.	
기정	소로	3	1	6	국 지	179	소2-6	지구계	일반도로		99.6.23.	
기정	소로	3	2	6	국 지	43	지구계	소3-1	일반도로		99.6.23.	
기정	소로	3	3	6	국 지	34	지구계	소3-1	일반도로		99.6.23.	
기정	소로	3	4	6	특 수	81	소2-12	중1-137	보행자 전용도로		99.6.23.	
기정	소로	3	5	4	특 수	28	광3-23	소2-1	보행자 전용도로		99.6.23.	
기정	소로	3	6	4	특 수	67	광3-23	소2-1	보행자 전용도로		99.6.23.	
기정	소로	3	7	4	특 수	65	광3-23	소2-1	보행자 전용도로		99.6.23.	
기정	소로	3	8	4	특 수	33	소2-1	광3-27	보행자 전용도로		99.6.23.	
기정	소로	3	9	4	특 수	308	중3-95	광3-23	보행자 전용도로		99.6.23.	
기정	소로	3	10	4	특 수	21	소3-1	소3-9	보행자 전용도로		01.8.30.	
기정	소로	3	11	4	특 수	62	광3-27	소2-20	보행자 전용도로		99.6.23.	
기정	소로	3	12	4	특 수	20	중3-103	지구계	보행자 전용도로		99.6.23.	
기정	소로	3	13	4	국 지	21	대2-61	일반주택지	일반도로			

■ 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1	주차장	마전동 1055-3번지	1,525.3	99.6.23.	
기정	2	주차장	당하동 1097-5번지	1,925.3	99.6.23.	
기정	3	주차장	당하동 1078-7번지	1,696.7	99.6.23.	
기정	4	주차장	당하동 1114-1번지	1,229.6	99.6.23.	

(2) 공간시설

(가) 공원

■ 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공 원 명	시 설 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1	제1호공원	근린공원	당하동 1097-1번지 일원	28,760.8	ˆ 99.6.23.	
기정	2	제2호공원	어린이공원	마전동 1062-1번지	1,956.3	ˆ 99.6.23.	
기정	3	제3호공원	어린이공원	당하동 1099-4번지	2,163.5	ˆ 99.6.23.	
기정	4	제4호공원	어린이공원	당하동 1112-1번지	2,456.2	ˆ 99.6.23.	
기정	5	제5호공원	어린이공원	당하동 1077-10번지	5,865.3	ˆ 99.6.23.	
기정	6	제6호공원	어린이공원	당하동 1075-21번지	1,669.2	ˆ 99.6.23.	
기정	7	제7호공원	어린이공원	당하동 1087-1번지	2,565.9	ˆ 99.6.23.	

■ 녹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 설 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1	녹 지	완충녹지	마전동 1065-3번지	790.1	ˆ 99.6.23.	
기정	2	녹 지	완충녹지	마전동 1066-7번지	1,120.4	ˆ 99.6.23.	
기정	3	녹 지	완충녹지	당하동 1075-1번지	2,679.3	ˆ 99.6.23.	
기정	4	녹 지	완충녹지	당하동 1099-1번지	3,250.3	ˆ 99.6.23.	
기정	5	녹 지	완충녹지	당하동 1100-1번지	906.3	ˆ 99.6.23.	
기정	6	녹 지	완충녹지	당하동 1090-6번지	3,790.6	ˆ 99.6.23.	
기정	7	녹 지	완충녹지	당하동 1091-4번지	1,209.0	ˆ 99.6.23.	
기정	8	녹 지	완충녹지	당하동 1113-3번지	6,558.9	ˆ 99.6.23.	
기정	9	녹 지	완충녹지	마전동 1053-2번지 일원	3,302.0	ˆ 99.6.23.	
기정	10	녹 지	완충녹지	당하동 1083-14번지	1,661.2	ˆ 99.6.23.	
기정	11	녹 지	완충녹지	당하동 1086-5번지	310.0	ˆ 99.6.23.	
기정	12	녹 지	완충녹지	당하동 1091-3번지	1,556.2	ˆ 99.6.23.	
기정	13	녹 지	경관녹지	당하동 1097-6번지	69.2	ˆ 01.9.3.	
기정	14	녹 지	경관녹지	당하동 1097-14번지	929.3	ˆ 01.9.3.	
기정	15	녹 지	경관녹지	당하동 1076-2번지	367.9	ˆ 01.9.3.	
기정	16	녹 지	경관녹지	당하동 1088-2번지	39.8	ˆ 01.9.3.	

■ 공공공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1	공공공지	마전동 1060-10번지	213.1	12.4.9.	
기정	2	공공공지	마전동 1061-9번지	89.7	12.4.9.	
기정	3	공공공지	마전동 1064-5번지	135.4	12.4.9.	
기정	4	공공공지	마전동 1065-4번지	62.6	12.4.9.	
기정	5	공공공지	당하동 1100-8번지	119.4	12.4.9.	
기정	6	공공공지	당하동 1102-5번지	149.8	12.4.9.	
기정	7	공공공지	당하동 1103-2번지	101.0	12.4.9.	
기정	8	공공공지	당하동 1104-3번지	79.5	12.4.9.	
기정	9	공공공지	당하동 1105-4번지	130.3	12.4.9.	
기정	10	공공공지	당하동 1106-13번지	162.8	12.4.9.	

(3) 공공·문화체육시설

■ 학교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1	학교	초등학교	당하동 1107-1번지	12,649.8	99.6.23.	
기정	2	학교	초등학교	당하동 1084-1번지	13,025.6	99.6.23.	
기정	3	학교	중학교	당하동 1076-1번지일원	13,056.8 (7,255.0)	99.6.23.	

※ ()안은 사업지구내 면적임

■ 공공청사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1	공공청사	동사무소 소방파출소 파출소	당하동 1097-2번지일원	3,362.9	99.6.23.	

2)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 단독주택용지(A-1, A-2)(변경)

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위치	면적(㎡)	
7	7	4,524.9	1	389.5	
			2	165.6	
			3	237.1	
			4	166.0	
			5-1	265.1	
			5-2	265.0	
			6	400.3	
			7	379.2	
			8	356.0	
			9	305.7	
			10	355.2	
			11	362.2	
			12	331.3	
			13	343.2	
14	203.5				
8	8	2,510.8	2	370.0	
			3	330.9	
			4	269.9	
			5	248.0	
			6	425.9	
			7	308.5	
			8-1	319.3	
			8-2	238.3	
9	9	3,939.3	1	328.3	
			2	313.3	
			3-1	232.4	
			3-2	330.6	
			3-3	269.0	
			4-1	243.9	
			4-2	357.3	
			5	241.6	
			6	328.2	
			7-1	261.3	
			7-2	344.1	
8	234.4				
9	454.9				

변 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10	10	2,028.6	1	302.2	
			2	304.9	
			3	310.5	
			4	390.2	
			5	335.2	
			6	385.6	
11	11	3,354.7	1	464.4	
			2-1	308.9	
			2-2	309.0	
			2-3	309.3	
			4	314.8	
			5	398.2	
			6	458.9	
			7	401.9	
12	12	2,797.6	1	290.0	
			2	238.4	
			3	165.3	
			4	224.3	
			5	240.5	
			6	440.4	
			7	655.1	
			8	543.6	
13	13	2,014.1	1	288.6	-
			2	564.8	
			3-1	414.5	
			3-2	423.0	
			4	323.2	
14	14	1,324.4	1	479.6	-
			2	843.8	

변 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34	34	2,370.5	1	391.3	
			2	167.1	
			3	308.9	
			4-1	184.9	
			4-2	189.5	
			4-3	268.8	
			4-4	190.5	
			4-5	190.2	
			5-1	234.9	
			5-2	244.4	
48	48	7,639.6	1	479.9	-
			2-1	427.6	
			2-2	488.0	
			3	517.0	
			4	522.8	
			5	1,337.1	
			6-1	395.1	
			6-2	343.6	
			7-1	474.0	
			7-2	374.7	
			8-1	485.9	
			8-2	427.9	
			9	346.1	
			10-1	610.5	
10-2	409.4				
50	50	1,233.8	1	1,233.8	
51	51	1,055.4	1	527.7	
			2	527.7	
52	52	1,480.4	1	614.4	
			2	592.3	
			3	273.7	

변 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53	53	4,506.3	1-1	373.0	
			1-2	364.1	
			1-3	404.2	
			1-4	407.7	
			2-1	239.0	
			2-2	271.4	
			3-1	431.5	
			3-2	431.7	
			3-3	367.9	
			4-1	413.0	
			4-2	426.3	
			4-3	376.5	
54	54	1,437.9	7	396.5	
			8	344.5	
			9	340.1	
			10	356.8	
55	55	3,348.0	1	407.6	
			2	247.3	
			3	285.3	
			4	287.1	
			5	264.0	
			6	299.2	
			7	252.9	
			8	248.9	
			9	290.0	
			10	282.6	
			11	238.9	
			12	244.2	
56	56	2,899.4	1	321.4	
			2	327.5	
			3	233.6	
			4	258.8	
			5	210.7	
			6	221.3	
			7	334.6	
			8	344.6	
			9	167.7	
			10-1	239.4	
			10-2	239.8	

변 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57	57	6,276.9	1	446.1	환지도로 (5LT)
			2	391.3	
			3	329.2	
			4	510.5	
			5	125.8	
			7	808.2	
			8	262.8	
			9	215.7	
			10	238.3	
			11	443.6	
			12	412.9	
			13	467.3	
			14-1	187.1	
			14-2	433.9	
			15-1	217.0	
			15-2	283.2	
16	504.0				
58	58	3,377.7	1	556.8	
			2	448.2	
			6	438.6	
			7-1	339.9	
			7-2	339.8	
			8	384.9	
			9	383.8	
			10	485.7	

■ 결정(변경) 사유서

가구 번호	기정		변경		변경사유
	위치	면적(㎡)	위치	면적(㎡)	
13	3	837.5	3-1	414.5	○ 획지계획 변경을 통해 단독주택(다중주택)을 신축함으로써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
			3-2	423.0	

■ 공동주택용지(B-2, B-3)(변경 없음)

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필지				
			위치	면적(㎡)	비고	위치	면적(㎡)	비고		
1	1	18,308.5	2	18,308.5	-	-	-	-		
3	3	27,350.3	1-1	27,350.3	-	-	-	-		
15	15	34,492.6	-	-	-	1075-2	4,513.3	※ 공동 개발 지정		
						1075-3	777.8			
						1075-4	188.3			
						1075-5	515.3			
						1075-6	416.4			
						1075-7	1,676.6			
						1075-8	2,418.1			
		9	23,986.8	-	9	23,986.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	22	35,146.3	-	-	-	1	14,997.3	-		
						2	10,049.2			
						3-1-1	687.1			
						3-1-2	687.0			
						3-1-3	687.0			
						3-2-1	794.0			
						3-2-2	787.7			
						3-2-3	772.0			
						3-3-1	657.0			
						3-3-2	437.1			
						3-4	2,716.4			
						3-5	504.9			
						3-6	556.8			
						3-7	489.7			
3-8	323.1									
26	26	9,240.9	2-1	695.8	-	-	-	-		

변 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필 지		
			위치	면적(㎡)	비고	위치	면적(㎡)	비고
			2-2	660.2		-	-	
			2-3	617.4		-	-	
			3-1	384.0		-	-	
			3-2	426.9		-	-	
			4	970.6		-	-	
			5-1	635.8		-	-	
			5-2	660.5		-	-	
			6-1	566.8		-	-	
			6-2	623.2		-	-	
			6-3	696.7		-	-	
			7-1	997.2		-	-	
			7-2	975.0		-	-	
			8	330.8		-	-	
			27	27		9,021.6	2-1	
2-2	662.7	-			-			
2-3	636.6	-			-			
2-4	619.4	-			-			
2-5	611.4	-			-			
2-6	612.4	-			-			
2-7-1	837.4	-			-			
2-7-2	838.0	-			-			
2-7-3	839.1	-			-			
6-1	631.6	-			-			
6-2	632.4	-			-			
6-3	640.3	-			-			
6-4	761.7	-			-			
29	29	15,711.1			1-1		816.1	9LT (환지 도로)
			1-2	426.7	-	-		
			2	1,047.3	-	-		
			3-1	661.9	-	-		
			3-2	661.0	-	-		
			3-3	661.0	-	-		
			3-4	661.0	-	-		
			3-5	665.0	-	-		
			4-1	835.2	-	-		

변 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필 지		
			위치	면적(㎡)	비고	위치	면적(㎡)	비고
			4-2	754.1		-	-	
			4-3	751.9		-	-	
29	29	15,711.1	5-1	707.8	9LT (환지 도로)	-	-	-
			5-2	487.5		-	-	
			5-3	678.9		-	-	
			5-4	702.3		-	-	
			6	194.8		-	-	
			7	524.1		-	-	
			8-1	756.5		-	-	
			8-2	788.8		-	-	
			8-3	791.9		-	-	
			8-4	794.4		-	-	
			8-5	797.0		-	-	
			9	545.9		-	-	
30	30	47,891.0	1	36,188.1	-	-	-	-
			2	1,407.0		-	-	
			3	5,353.5		-	-	
			4	128.0		-	-	
			5	4,814.4		-	-	
31	31	1,371.0	1-1	891.0	-	-	-	-
			1-2	480.0		-	-	
32	32	6,457.1	1	638.3	-	-	-	-
			2	595.2		-	-	
			3	1,227.3		-	-	
			4	482.9		-	-	
			5-1	358.9		-	-	
			5-2	372.8		-	-	
			5-3	380.6		-	-	
			7	550.1		-	-	
			8	626.8		-	-	
			9-1	623.9		-	-	
9-2	600.3	-	-					

변 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²)	획 지			필 지		
			위치	면적(m ²)	비고	위치	면적(m ²)	비고
33	33	5,698.8	1	1,016.7	-	-	-	-
			5	552.6		-	-	
			6	1,238.0		-	-	
			7	489.5		-	-	
			9	1,767.0		-	-	
			10	635.0		-	-	
37	37	8,094.6	2	424.1	-	-	-	-
			3-1	2,608.0		-	-	
			3-2	2,550.0		-	-	
			3-3	2,512.5		-	-	
44	44	15,303.7	1	10,085.0	-	-	-	-
			2	5,218.7		-	-	
46	46	50,087.0	2	31,824.8	-	-	-	-
			3	18,262.2		-	-	
47	47	4,117.0	2-1	921.0	2-6LT (환지 도로)	-	-	-
			2-2	840.1		-	-	
			2-3	861.5		-	-	
			2-4	739.5		-	-	
			2-5	365.2		-	-	
			2-6	59.5		-	-	
			3	330.2		-	-	
60	60	44,025.8	1	3,188.5	-	-	-	-
			2	40,837.3		-	-	

■ 상업용지(C-2)(변경 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19	19	12,130.5	1	363.5	-
			2	5,083.2	
			5	395.5	
			6	414.6	
			7	328.2	
			8	3,081.5	
			10	674.9	
			11	589.2	
			14	431.1	
			15	430.3	
			16	338.5	
20	20	4,551.4	1	842.9	-
			4	921.3	
			5	1,179.7	
			6	1,236.8	
			8	370.7	
21	21	7,267.2	1	1,312.9	-
			2	1,730.0	
			3	672.6	
			4	464.7	
			5	1,098.1	
			6	966.7	
			7	275.9	
			8	271.4	
			9	483.9	
38	38	11,332.0	1	541.7	-
			2	844.4	
			3	746.0	
			4	244.6	
			5	249.4	
			6	343.4	
			7	673.3	
			8	299.4	
			9	543.2	
			10	834.8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11	1,424.8	
			13	1,093.2	
			14	385.7	
			15	885.6	
			16	390.6	
			17	325.9	
			18	261.4	
			19	332.1	
			20	165.6	
			21	409.4	
			22	337.5	
39	39	3,180.1	1	1,133.7	-
			2	402.5	
			3	416.1	
			4	553.8	
			5	674.0	
40	40	3,950.2	1	388.7	-
			2	217.3	
			3	335.0	
			4	794.7	
			5	684.0	
			6	785.7	
			7	744.8	
41	41	1,167.3	1	335.9	-
			2	393.2	
			3	438.2	
42	42	1,279.6	1	273.1	-
			2	708.3	
			3	298.2	

■ 근린생활시설용지(C-1)(변경 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19	19	12,130.5	1	363.5	-
			2	5,083.2	
			5	395.5	
			6	414.6	
			7	328.2	
			8	3,081.5	
			10	674.9	
			11	589.2	
			14	431.1	
			15	430.3	
			16	338.5	
20	20	4,551.4	1	842.9	-
			4	921.3	
			5	1,179.7	
			6	1,236.8	
			8	370.7	
21	21	7,267.2	1	1,312.9	-
			2	1,730.0	
			3	672.6	
			4	464.7	
			5	1,098.1	
			6	966.7	
			7	275.9	
			8	271.4	
			9	483.9	
38	38	11,332.0	1	541.7	-
			2	844.4	
			3	746.0	
			4	244.6	
			5	249.4	
			6	343.4	
			7	673.3	
			8	299.4	
			9	543.2	
			10	834.8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11	1,424.8	
			13	1,093.2	
			14	385.7	
			15	885.6	
			16	390.6	
			17	325.9	
			18	261.4	
			19	332.1	
			20	165.6	
			21	409.4	
			22	337.5	
39	39	3,180.1	1	1,133.7	-
			2	402.5	
			3	416.1	
			4	553.8	
			5	674.0	
40	40	3,950.2	1	388.7	-
			2	217.3	
			3	335.0	
			4	794.7	
			5	684.0	
			6	785.7	
			7	744.8	
41	41	1,167.3	1	335.9	-
			2	393.2	
			3	438.2	
42	42	1,279.6	1	273.1	-
			2	708.3	
			3	298.2	

■ 학교용지(D-1)(변경 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합 계		38,732.2 (32,930.4)		38,732.2 (32,930.4)	() 사업지구내
18	18	13,056.8 (7,255.0)	1	13,056.8 (7,255.0)	-
27	27	13,025.6	1	13,025.6	
54	54	12,649.8	1	12,649.8	

■ 공공청사용지(D-2)(변경 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43	43	3,362.9	2	3,362.9	-

■ 종교집회장용지(D-3)(변경 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49	49	2,247.4	1	656.5	-
			2	643.0	
			3	499.0	
			4	448.9	
54	54	2,023.9	2	418.7	-
			3	412.4	
			4	452.9	
			5	336.7	
58	58	1,401.8	6	403.2	-
			3	258.7	
			4	323.2	
			5	819.9	

■ 주차장용지(D-4)(변경 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3	3	1,525.3	2	1,525.3	
43	43	1,925.3	6	1,925.3	
20	20	1,696.7	7	1,696.7	
61	61	1,229.6	1	1,229.6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
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A-1 (단독주택용지)	7, 8(2~8), 9, 10(1~6) 11(1,2-1~3,4~8) 12(1~8), 13(1~4) 14(1,2) 48(1~5,6-1,6-2,7-1,7-2, 8-1,8-2,10-1,10-2) 50(1), 51(1,2), 52(1~3) 53(1-1~4,3-1~3,4-1~3) 54(7~10), 55(1~5,7~12) 56(1~7,9,10-1,10-2) 57(2~5,7~16) 58(1~2,6~10)	용 도	허용용도 ○ 별표1의 A-1의 허용용도
			불허용도 ○ 별표1의 A-1의 불허용도
		건 폐 율	○ 60%이하
		용 적 률	○ 150%이하
		높 이	○ 3층 이하 (단,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피로티 부분은 층수에서 제외)
		배 치	○ 별표2의 A
		형 태	○ 별표3의 A
		색 채	○ 별표4의 A
		건 축 선	○ 각 가구별 1m 후퇴
		A-2 (단독주택용지)	34, 48(9) 53(2-1,2-2) 55(6), 56(8), 57(1)
불허용도 ○ 별표1의 A-2의 불허용도			
건 폐 율	○ 60%이하		
용 적 률	○ 150%이하		
높 이	○ 3층 이하 (단,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피로티 부분은 층수에서 제외)		
배 치	○ 별표2의 A		
형 태	○ 별표3의 A		
색 채	○ 별표4의 A		
건 축 선	○ 각 가구별 1m 후퇴		

주) ()는 획지번호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B-1 (공동주택 용지 연립 및 다세대)	26(2-1~3,3-1,3-2,4,5, 6-1~3,7-1,7-2,8) 27(2-1~6,2-7-1~3,6-1~4) 29(1-1,1-2,3~7,8-1~8-5,9) 31(1) 32(1~4,5-1~3,7,8,9-1,9-2) 33(1,5~7,9,10) 37(2,3) 22(3-1~3-8) 단, 37(2,3)은 연립주택	용 도	허용용도	○ 별표1의 B-1의 허용용도
			불허용도	○ 별표1의 B-1의 불허용도
		건 폐 율	○ 연립 및 다세대: 60%이하	
		용 적 률	○ 연립 및 다세대: 200%이하	
		높 이	○ 4층 이하 (단,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피로티 부분은 층수에서 제외)	
		배 치	○ 별표2의 B	
		형 태	○ 별표3의 B	
		색 채	○ 별표4의 B	
		건 축 선	○ 20m이상 간선도로변: 3m후퇴 지정	
			○ 20m미만 도로변: 1m후퇴 지정 단, 22가구 2획지와 접한 3-1, 3-4, 3-6획지에 한하여 2획지로부터 건축한계선 1m 지정	
B-2 (공동주택 용지, 아파트)	1(2), 3(1), 44(1, 2) 46(2, 3), 60(1,2)	용 도	허용용도	○ 별표1의 B-2의 허용용도
			불허용도	○ 별표1의 B-2의 불허용도
		건 폐 율	○ 30%이하	
		용 적 률	○ 250%이하	
		높 이	○ 20층 이하	
		배 치	○ 별표2의 B	
		형 태	○ 별표3의 B	
		색 채	○ 별표4의 B	
		건 축 선	○ 20m이상 간선도로변: 3m후퇴 지정 단, 주된 개구부가 있는 경우: 15m후퇴 지정	
			○ 20m미만 도로변: 1m후퇴 지정	

주) ()는 획지번호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B-1 (공동주택 용지 연립 및 다세대)	26(2-1~3,3-1,3-2,4,5, 6-1~3,7-1,7-2,8) 27(2-1~6,2-7-1~3,6-1~4) 29(1-1,1-2,3~7,8-1-8-5,9) 31(1) 32(1~4,5-1~3,7,8,9-1,9-2) 33(1,5~7,9,10) 37(2,3) 22(3-1~3-8) 단, 37(2,3)은 연립주택	용 도	허용용도	○ 별표1의 B-1의 허용용도
			불허용도	○ 별표1의 B-1의 불허용도
		건 폐 율	○ 연립 및 다세대: 60%이하	
		용 적 륜	○ 연립 및 다세대: 200%이하	
		높 이	○ 4층 이하 (단,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피로티 부분은 층수에서 제외)	
		배 치	○ 별표2의 B	
		형 태	○ 별표3의 B	
		색 채	○ 별표4의 B	
		건 축 선	○ 20m이상 간선도로변: 3m후퇴 지정	
			○ 20m미만 도로변: 1m후퇴 지정 단, 22가구 2획지와 접한 3-1, 3-4, 3-6획지에 한하여 2획지로부터 건축한계선 1m 지정	
B-2 (공동주택 용지, 아파트)	1(2), 3(1), 44(1, 2) 46(2, 3), 60(1,2)	용 도	허용용도	○ 별표1의 B-2의 허용용도
			불허용도	○ 별표1의 B-2의 불허용도
		건 폐 율	○ 30%이하	
		용 적 륜	○ 250%이하	
		높 이	○ 20층 이하	
		배 치	○ 별표2의 B	
		형 태	○ 별표3의 B	
		색 채	○ 별표4의 B	
		건 축 선	○ 20m이상 간선도로변: 3m후퇴 지정 단, 주된 개구부가 있는 경우: 15m후퇴 지정	
○ 20m미만 도로변: 1m후퇴 지정				

주) ()는 획지번호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B-3 (공동주택용지 아파트)	15(2~18, 20), 22(1, 2), 30(1~5)	용 도	허용용도	○ 별표1의 B-3의 허용용도	
			불허용도	○ 별표1의 B-3의 불허용도	
		건 폐 율	○ 30%이하		
		용 적 륜	○ 200%이하		
		높 이	○ 15층 이하		
		배 치	○ 별표2의 B		
		형 태	○ 별표3의 B		
		색 채	○ 별표4의 B		
		건 축 선	○ 20m이상 간선도로변: 3m후퇴 지정 단, 주된개구부가 있는 경우: 15m후퇴 지정		
○ 20m미만 도로변 : 1m후퇴 지정					
C-1 (근린생활 시설용지)	2, 4~6, 24, 25, 33(2~4), 43(8~14), 45, 61(2~6), 62	용 도	허용용도	○ 별표1의 C-1의 허용용도	
			불허용도	○ 별표1의 C-1의 불허용도	
		건 폐 율	○ 60%이하		
		용 적 륜	○ 250%이하		
		높 이	○ 5층 이하		
		배 치	○ 별표2의 C		
		형 태	○ 별표3의 C-1		
		색 채	○ 별표4의 C		
		건 축 선	○ 20m이상 간선도로변: 2m후퇴 지정		
○ 20m미만 도로변: 1m후퇴 지정 단, 24와 25사이 도로와 접한 대지는 2m후퇴 지정					

주) ()는 획지번호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C-2 (상업용지)	19(1~8,10,11,14~17), 20(1~6,8) 21, 38~42	용 도	허용용도	○ 별표1의 C-2의 허용용도
			불허용도	○ 별표1의 C-2의 불허용도
		건 폐 율	○ 70%이하	
		용 적 륜	○ 25m이상 도로변: 650%이하	
			○ 25m미만 도로변: 330%이하	
		높 이	○ 25m이상 도로변: 10층 이하	
			○ 25m미만 도로변: 5층 이하	
		배 치	○ 별표2의 C	
		형 태	○ 별표3의 C-2	
		색 채	○ 별표4의 C	
건 축 선	○ 25m이상 도로변: 3m후퇴 지정			
	○ 20m~25m 도로변: 2m후퇴 지정			
	○ 20m미만 도로변: 1m후퇴 지정			
D-1 (학교용지)	18, 27(1), 54(1)	용 도	허용용도	○ 별표1의 D-1의 허용용도
			불허용도	○ 별표1의 D-1의 불허용도
		건 폐 율	○ 30%이하	
		용 적 륜	○ 100%이하	
		높 이	○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 축 선	○ 소음에 지장이 있는 주된개구부가 없는 경우: 3m후퇴 지정 ○ 소음에 지장이 있는 주된개구부가 있는 경우: 30m후퇴 지정			

주) ()는 획지번호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D-2 (공공청사용지)	43(2)	용 도	허용용도	○ 별표1의 D-2의 허용용도
			불허용도	○ 별표1의 D-2의 불허용도
		건 폐 율	○ 60%이하	
		용 적 률	○ 200%이하	
		높 이	○ 4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 축 선	-	
D-3 (종교집회장 용지)	49(1~4), 54(2~6), 58(3~5)	용 도	허용용도	○ 별표1의 D-3의 허용용도
			불허용도	○ 별표1의 D-3의 불허용도
		건 폐 율	○ 60%이하	
		용 적 률	○ 150%이하	
		높 이	○ 3층이하	
		배 치	○ 별표2의 D-3	
		형 태	○ 별표3의 D-3	
		색 채	○ 별표4의 D-3	
		건 축 선	○ 각 가구별 1m 후퇴	

주) ()는 획지번호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D-4 (주차장용지)	3(2), 20(7), 43(6), 61(1)	용 도	허용용도	○ 별표1의 D-4의 허용용도			
			불허용도	○ 별표1의 D-4의 불허용도			
		건 폐 율 용 적 륜 높 이	구분	건폐율(%)	용적률(%)	높이	
			3(2), 61(1)	60	300	5층(20m)이하	
			43(6)	60	240	4층(16m)이하	
		20(7)	70	350	5층(20m)이하		
		배 치	○ 별표2의 D-4				
		형 태	○ 별표3의 D-4				
		색 채	○ 별표4의 D-4				
		건 축 선	○ 20m이상 간선도로변: 3m후퇴 지정 ○ 20m미만 도로변: 1m후퇴 지정				

주) ()는 획지번호

다)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없음)

■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A-1, A-2, B-1, B-2, B-3, C-1, C-2, D-3, D-4	1~15, 19~22, 24~27, 29~34, 37~62	○ 별표5의 전면공지, 공개공지, 삼지공원 대지안의 조정	

■ 차량 및 주차 계획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A-1, A-2, D-3	7~14, 34, 48~58	○ 별표6의 A 차량 및 주차계획	
B-1, B-2, B-3	1, 3, 15, 22, 26, 27, 29~33, 37, 44, 46, 47, 60	○ 별표6의 B 차량 및 주차계획	
C-1, C-2, D-4	2, 4~6, 19~21, 24, 25, 33, 38~43, 45, 61, 62	○ 별표6의 C 차량 및 주차계획	

■ 보행동선에 관한 계획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A-1, A-2, B-1, B-2, B-3, C-1, C-2, D-3	1~15, 19~22, 24~27, 29~34, 37~62	○ 별표7의 보행자전용도로, 보차혼용도로	

■ 단지내 시설물 배치 계획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	당하지구단위계획구역	○ 별표8의 식재, 가로장치물, 조명, 포장, 도시안내표지시설	

■ 기타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및 건축조례에 따른다.

3) 건축물의 용도·형태·배치 등에 대한 계획: (별표참조)

- 【별표1】 건축물 용도 분류표
- 【별표2】 건축물 배치계획
- 【별표3】 건축물 형태분류
- 【별표4】 건축물의 색채
- 【별표5】 전면공지, 공개공지, 쌈지공원, 대지안의 조경
- 【별표6】 차량 및 주차계획
- 【별표7】 보행동선에 관한 계획
- 【별표8】 단지내 시설물 계획

【별표1】 건축물 용도 분류표

구 분		허 용 용 도	불 허 용 도		건폐율 (%)이하	용적율 (%)이하	높 이
			전층 불허용도	1 층 불허용도			
제1종 일 반 주 거	단독 주택 용지	A-1 ○ 단독주택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60	150	○ 3층 이하 (단,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피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
		A-2 ○ 단독주택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60	150	○ 3층 이하 (단,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피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
제2종 일 반 주 거	공동 주택 용지	B-1 연립 및 다세대 ○ 다세대·연립주택 (주택법 적용) ○ 37가구는 연립주택 (주택법 적용)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60	200	○ 4층 이하 (단,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피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
		B-2 아파트 ○ 공동주택 중 아파트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30	250	20층이하
		B-3 아파트 (주택법 적용)			30	200	15층이하
준 주 거	근린 생활 시설	C-1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인천시 도시계획조례 적용)	○ 주택(주상복합제외) ○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철도역사, 공항시설, 항만시설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장례식장 ○ 공장(인천시 건축조례 허용용도 제외)아파트형공장, 창고시설 ○ 자동차 관련시설 (주차장, 세차장, 매매장 제외)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식물관련시설 제외) ○ 교정 및 군사시설 ○ 발전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단, 주유소 및 석유 판매소 제외)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제한용도(정화구역에 한함)		60	250	5층이하

구 분		허 용 용 도	불 허 용 도	건폐율(%) 이하	용적율(%) 이하	높이		
제2종 일 반 주 거 · 제3종 일 반 주 거 · 준주거 · 일반 상업	주차장	D-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법 제2조에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 ○ 지평식 설치시 허용용도 -관리사무소, 주차장의 관리 · 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 주차전용건축물 건축시 허용용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비율이 건축연면적의 70%이상이어야 함 -단독 [20(7)은 주거용이 8/10이하로 타용도 복합 시 가능] · 공동주택 [20(7)은 불허] -제1종 · 제2종근린생활 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장의사, 총포사, 종교시설, 옥외골프연습장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또는 자동차관련시설 [3(2),43(6),61(1)은 주차장만 허용]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상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내 제한용도 (정화구역에 한함)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구분	건폐율(%)	용적률(%)	높이
					3(2), 61(1)	60	300	5층(20m) 이하
					43(6)	60	240	4층(16m) 이하
					20(7)	70	350	5층(20m) 이하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완화적용에 관한 사항

- 본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서 상업 및 근린생활시설용지에 대해서 간선도로변에 접근을 제한하도록 일부 획지에 대해 공동건축을 유도
- 또한 연립 및 다세대 용지는 쾌적성 및 양호한 주거환경을 위해 연립주택을 유도 하고자 일정규모 이상(2,500㎡)이 되도록 공동건축을 권장
- 이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제2항제3호 규정에 의거 일부 획지의 용적률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으로 완화하여 적용
- 단독, 연립 및 다세대 주택 건축시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피로티 설치시 층수에서 제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다음의 비율까지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다.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공공시설부지로 제공되는 면적÷당초의 대지면적)이내
- ②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는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1+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당초의 대지면적)이내
 2. 생략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의 권고에 따라 공동개발을 하는 경우: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배 이내
 - 가. 지구단위계획에 2필지 이상의 토지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 나. 지구단위계획에 맞벽건축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 다. 지구단위계획에 주차장, 보행자통로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2필지 이상의 토지에 건축물을 동시에 건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③ 생략
- ④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는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건축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된 건축물의 높이×(1+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당초의 대지면적)이내
 2. 생략
- ⑤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는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종류,규모 등을 별표 2 내지 별표 17(각 용도지역별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에 규정된 범위안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관련법규 개정시 개정 법률에 따름

【별표2】 건축물 배치계획

구분	건축물의 배치
A-1 A-2 D-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주방향은 남향 또는 남동향을 주로 하되, 남향 또는 남동향 배치가 불가능한 구획도로에 접한 획지는 진입구변으로 옥외주차장 및 마당을 설치하여 가능한 도로와의 이격 유도
B-1 B-2 B-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의 전면길이는 일조 및 조망을 고려하여 조정배치하고, 변화 있는 층고 배치로 경관 및 식별성이 제고되도록 함 ○ 단조로운 경관을 탈피하기 위한 단지내 층수변화를 두어 Sky-Line을 형성토록 유도 ○ 주민의 프라이버시 침해나 밀폐감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된 건물의 향과 직각 또는 변화 있는 방향이 되도록 유도 ○ 22가구 3-1, 3-4, 3-6획지는 2획지 경계로부터 1m 건축선 지정
C-1 C-2 D-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주된 벽면의 방향은 접한 전면가로와 방향과 일치 ○ 2개 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는 위계가 높은 도로에 면하여 건축물 전면이 향하도록 함

【별표3】 건축물 형태 분류

구분	건축물의 형태
A-1 A-2 D-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주택용지의 모든 건축물은 경사지붕을 권장하여 조화로운 주거지 경관을 창출 - 지붕색은 원색사용을 금지함으로써 돌출색채에 의한 주거지경관의 악화 방지 - 옥상 물탱크를 FRP조로 설치하거나 옥외 창고 등을 설치시 조적 등으로 구획하여 보이지 않게 함 (단,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의 경우 옥상이나 옥탑에 설치금지) ○ 담장 및 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장과 대문은 가로공간의 개방성을 확보하고 주택의 과도한 폐쇄감을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를 1.2m 이하로 규제 - 담장과 대문의 형태는 투시형을 하되, 가급적 생울타리 등 자연요소를 활용하도록 권장 ○ 외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의 외벽은 건축물별로 동일한 재료를 사용토록 권장(외벽 색상은 원색사용 지양) - 구조는 무피복철골조, 컨테이너 등을 제한하여 가로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함 - 북쪽에 도로가 있을 경우 설비배관의 노출을 자제하고 가능한 측면벽을 이용함
B-1 B-2 B-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각적 개방감 부여 및 심리적 중압감 배제 등을 위해 주동의 최대길이는 80m이내로 제한 ○ 지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사지붕(박공지붕)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지붕면적의 70%이상을 경사지붕으로 설치 - 경사지붕 설치 시 옥상의 설비기기 등 경관불량요소는 건축물 전면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 ○ 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블록 외곽도로에 면한 단지 경계부에 단지의 관리와 안전을 위해 투시형이나 생울타리 담장으로 1.2m이하로 설치(단, 공공보행통로를 확보할 경우 공공보행통로 내에 설치 금지) - 보행으로 연결되는 교차지점 담장 설치 금지 - 동일 블록 내 담장은 유사한 색상과 재료사용, 통일화된 형태로 블록별 일체감 부여 ○ 외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외벽은 건축물별로 동일한 재료 사용 권장 (원색사용 지양) - 다세대주택에서 북쪽에 도로가 있을 경우 설비배관의 노출을 자제하고 가능한 측면벽을 이용함

구분	건축물의 형태
C-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m이상의 간선도로에 접하는 대지내의 건축물은 입면형태가 주변건축물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유도 ○ 건축물 입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선도로에 면한 대지의 신축 시 가로변의 기존건물과 형태, 재료, 색채조화를 권장하여 간선도로의 경관향상 및 연속성 강조 - 20m이상의 간선도로에 위치하는 건축물의 1층 전면의 경우 벽면의 50%이상을 투시형을 조성하여 보행자 공간과의 교류 유도 ○ 조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부문이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조명시설 설치를 선도하고 민간부문도 일정규모이상의 건물은 건물외벽 및 주변환경(조형물·수목·보도)에 조명을 투사하여 야간경관 제고
C-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m이상의 간선도로에 접하는 대지내의 건축물은 입면형태가 주변건축물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유도 ○ 건축물 입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m이상의 간선도로에 면한 대지의 신축시 가로변의 기존건물과 형태, 재료, 색채조화를 권장하여 간선도로의 경관향상 및 연속성 강조 - 25m이상의 간선도로에 위치하는 건축물의 1층 전면의 경우 벽면의 50%이상을 투시형을 조성하여 보행자 공간과의 교류 유도 ○ 조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부문이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조명시설 설치를 선도하고 민간부문도 일정규모이상의 건물은 건물외벽 및 주변환경(조형물·수목·보도)에 조명을 투사하여 야간경관 제고
D-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외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 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함 -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함 - 주차용도층의 외벽은 차량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자동차 배기가스 등이 자연적으로 배출되도록 밀폐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주변 가로망과 일관된 통경축이 형성되도록 하여 건축물 입지로 인한 폐쇄감이 들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가로변 및 공지 등 조립식 경량철골조(샌드위치 판넬), 무피복철골조, 컨테이너 등의 구조인 건축물과 가설건축물 설치불가

구분	옥외광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형 간판은 건물 각층에 대하여 규격 및 부착장소를 일관성 있게 통일하여 설치하되 1개의 업소에는 1개의 간판만 허용(꼭각지점에는 2개 허용) ○ 가로형 간판 재질중 후렉스(flex)의 사용을 제한함. 다만 로고 및 픽토그램에 한하여 사용 가능 ○ 가로형 간판의 경우 한 건물에 같은 층에 설치되는 간판의 세로폭은 동일하게 표시되어야 함. 단 입체형, 조각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예외 (1층의 경우에 한함) ○ 건물정면에 부착하는 판류형 가로형 간판의 세로크기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세로(벽면) 폭의 80% 이내로 함. 단 중간 벽면높이가 1m미만인 경우엔 창문을
A-1	
A-2	가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80cm이하로 함
B-1	○ 창문이용광고물 및 세로형 간판, 현수막은 부착금지. 다만 세로형 간판의 경우에는
B-2	건물정면의 주출입구 기능 양측 1곳에 한하여 건물형이나 비영리단체의 명칭에
B-3	한하여 비조명으로 설치하는 것만 허용
C-1	○ 1개 건물 1개의 지주를 이용한 종합연립간판 허용 (종합사인보드)
C-2	○ 공연간판은 공연 등을 위한 건축물에 설치하되 일반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D-3	간선도로변 건축물 정면에 1개소만 허용
D-4	○ 현수막, 벽보는 일반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간선도로변에 설치하는 지정 현수막
	게시대, 벽보판에만 설치가능
	○ 선전탑, 옥상간판, 애드벌룬 및 이취 광고물은 사안에 따라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
	○ 공공시설이용 광고는 허용
	○ 광고물의 색채는 가능한 파랑, 회색, 녹색, 적황색 계통 등의 색을 사용하되 적색,
	검정색 등 원색사용 금지

주) 1. 간선도로라 함은 폭원이 25m이상인 도로를 말함

2. 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기타 옥외광고물에 대한 사항은 「옥외광고물법」 및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의해 적용함

【별표4】 건축물의 색채

구분	건축물의 색채
A-1 A-2 D-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능한 파랑색, 회색, 녹색, 적황색 계통 등의 색을 사용하되 원색사용을 금하며 (강조색은 가능) 저채도 색채를 사용 ○ 건축물의 좌우배면은 전면색채와 동일계통의 색채를 사용 ○ 검정색 계통의 벽돌사용을 지양하며 밝고 명량한 분위기의 도시경관 창출 유도
B-1 B-2 B-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선도로변과 사업지구 진입부를 강조할 수 있는 Landmark기능 및 단지내 쾌적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밝고 명량한 색조계열 사용 ○ 가능한 파랑색, 회색, 녹색, 적황색 계통 등의 색을 사용하되 활동적이고 따뜻하고 산뜻하며 주의도가 높은 배색이 되도록 함. ○ 사업지구의 상징적인 부분으로 진입부의 이미지와 친근감이 있도록 계획
C-1 C-2 D-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선도로변과 사업지구 진입부를 강조할 수 있는 Landmark기능이 가능하도록 색채계획 ○ 가능한 파랑색, 회색, 녹색, 적황색 계통 등의 색을 사용하되 활동적이고 따뜻하고 산뜻하며 주의도가 높은 배색이 되도록 함

【별표5】 전면공지, 공개공지, 쌈지공원, 대지안의 조경

구 분	내 용
	<p>전면공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지경계선과 건축선 후퇴사이의 공지를 전면공지로 조성하되 인도부속형과 차도부속형을 나누어서 적용 ○인도부속형 전면공지의 경우 전면인도와 동일한 포장재료 및 패턴사용을 유도하고 보행에 장애가 되는 시설물(화단, 담장, 노상주차장 등) 설치 금지 ○차도부속형 전면공지의 경우 전면차도와 단차를 없애고 동일한 포장재료 사용 등으로 차량통행의 장애요소 제거 ○전면공지 지정 시 지상에 대한 공공의 이용권을 확보하고 지하는 민간개발이 가능하도록 허용
<p>A-1 A-2 B-1 B-2 B-3 C-1 C-2</p>	<p>공개공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 제67조에 의한 공개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구단위계획과 관계없이 건축물 용도별 일정규모이상일 경우 대지면적의 일정 비율이상을 확보하여야 함 (건축법상의 최소규모, 조성방식 등이 결정되어 있음) ○주요간선가로변, 주요 결절부 및 대형필지에 공개공지를 확보하여 보행 활성화 유도 ○공개공지는 위치 및 최소면적 지정에 의하여 확보하도록 유도 ○공개공지의 설치형태는 일반적 형태(선형), 피로티구조, 쌈지공원구조 등 다양한 형태로 조성 가능 ○공개공지의 조성은 전면의 인도 및 전면공지와 조성형태를 통일시켜서 조성하게 하며, 인접대지의 공개공지나 쌈지공원이 있는 경우에는 연계 조성을 권장 ○공개공지 조성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는 개별건축물에 대한 심의 시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따르도록 유도하여 확보에 따른 융통성을 부여하며 조성 시 인센티브 부여
<p>D-3 D-4</p>	<p>쌈지공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5m이상의 간선가로변 대지에서 건축법 제32조, 시행령 제27조에 의해 설치되는 조정부분과 건축법 제67조에 의한 공개공지를 공공이 24시간 이용 가능한 가로변 소공원 일명 ‘쌈지공원’ 으로 조성할 것을 대지면적에 따라 규제 또는 권장 ○인접대지와 연계조성 권장(연접한 공지로 조성) ○조성방식을 공개공지 조성방식과 동일하게 적용 -쌈지공원은 공개공지로 조성할 경우에는 45㎡이상, 대지내 조경으로 조성할 때에는 25㎡이상 설치하여야 함 ○대지면적 500㎡이상의 대지는 대지면적의 5%이상을 쌈지공원으로 조성토록 유도
	<p>대지안의 조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면적에 따라 인천광역시건축조례기준 이상으로 조경면적을 확보 ○단, 단독주택의 경우 대지면적의 5%이상을 조경면적으로 확보 ○조경수는 인천시의 시화인 장미 또는 서구 구목인 은행나무 등을 포함한 식재를 권장하며, 투시형 담장이인 경우 넝쿨장미의 식재를 권장 ○25m이상 도로에 인접한 아파트등 대단위 시설에는 도로와 건축선 사이에 식재로 수림대 조성 ○아파트 지상주차장이 넓은 경우 사이에 화단 등을 조성, 식재함으로써 경관을 창출

【별표6】 차량 및 주차계획

구 분	차 량 및 주 차 계 획
A-1 A-2 D-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의 진출입으로 인한 혼잡이 예상되는 가구의 장·단변 교차로 부근에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 옥내주차장 보다는 옥외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함으로써 주차장의 타 용도로의 전용을 방지, 이때 옥외주차장은 담장 밖에 설치하도록 권장 ○ 인접대지와 공동주차장 설치 유도 ○ 복합주택의 경우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법정주차면수에 1면을 추가적으로 확보 유도하며, 다가구주택의 경우 가구당 1면 이상 확보 권장
B-1 B-2 B-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선도로변, 주요 교차점 부근 등 차량교통량이 많은 지역에는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지정 ○ 차량출입구는 단지별로 최소한만 허용함으로써 차량혼잡을 방지하고 보행자의 안전성을 확보 ○ 단지내 통과교통을 배제하고 차량동선과 보행동선과의 상충을 최소화 ○ 단지내 진입도로와 외곽도로는 T자형 교차를 원칙으로 하되, 단지내 교차점간 거리가 35m 미만일 경우 +자형 교차가 되도록 함 ○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제시한 설치기준을 적용하되 1가구 1면이상 확보를 권장 ○ 지하주차장은 가능한 자연채광이 가능하도록 함
C-1 C-2 D-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동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 25m이상의 도로에서 주차출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부득이하게 주차출입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동주차통로설치(통로의 폭은 대지경계선에서 각각 3m 이상, 단독 획지의 경우는 4m 이상 확보) 권장 - 폭 20m이상의 도로가 교차하는 교차각각부의 경우 각 15m 구간에서의 주차출입을 금지(단, 필지의 규모가 협소하여 차량출입이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를 인정) - 통로주차램프 및 카 엘리베이터의 시작부분은 도로와 접하는 건축선에서 최소 3m이상 이격시켜 대기주차에 의한 보행장애 방지 ○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30㎡이하의 대지가 옥외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2개 대지별로 공동으로 주차장 설치를 권장하여 주차장의 효율을 높이고 주차출입구의 개소 축소 - 주차장의 용도를 설치할 경우 주차장의 용도 이용을 위한 주차공간을 구분되게 설치하여야 함 (D-4에 한함)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출입 불허구간이 표시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구간에서는 차량진입구 설치를 불허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폭 10m 이상 도로의 교차로 측단으로부터 10m이내의 구간 2. 버스정류장, 기타 승하차시설, 지하도 입구, 횡단보도 전후 10m이내의 구간 ○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 차량 진출입구는 도로의 폭이 좁은 도로에 설치 ○ 보도구간에 차량출입구가 불가피하게 설치될 경우에는 야간 식별이 가능한 보행횡단표시, 과속방지턱 등의 충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해당출입구는 인접 보도와 유사한 재질로 조성

【별표7】 보행동선에 관한 계획

구분	보행동선에 관한 계획	
A-1 A-2 B-1 B-2 B-3 C-1 C-2 D-3	공공보행통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지 내 보행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주요 접근로 및 주요시설 주변 및 세장비가 긴 가구 내에 원거리 이동으로 보행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경우 공공보행통로를 설치 (최소 4m이상) ○ 건축법상의 대지안의 조경면적을 활용하여 영세필지의 부담저감 ○ 필지간의 단차 및 경계선의 상황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통로개설 유도 ○ 공공보행통로에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담장, 계단, 화단, 환기구 등 보행자의 통행에 장애를 주는 일체의 구조물은 설치금지 ○ 공동주택 용지 도로변의 공공보행통로는 전면인도 및 전면공지와 동일하게 조성하고 인접대지의 공개공지나 쌈지공원이 있는 경우에는 연계 조성을 권장 ○ 보차혼용도로 및 공공보행통로의 경우 제공되는 면적에 대한 조경면적 및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 공공성이 있는 건축물에는 장애인 램프설치를 고려 대지의 높이와 주출입구의 높이차를 15cm 이내로 권장
	보행자전용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의 통행이 전혀 허용되지 않는 도로로서 독특한 장식, 포장패턴이나 상징적인 환경장치물 설치를 유도하여 장소성과 활동성을 제고 ○ 녹지조성보다는 포장 및 시설물 위주로 설치하고 인접대지내 공지 및 전면공지와 연계조성 ○ 기존 차도의 폐쇄 및 건축한계선 지정을 통해 확보 (최소 4m이상)
	보차혼용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계획상 보행자전용도로에 접해 있는 획지에 차량진입을 위해 지정 ○ 보행자전용도로와 일체형으로 조성

【별표8】 단지내 시설물 계획

구 분	단 지 내 시 설 물 계 획
식 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폭 12m이상, 보도폭 3m이상인 도로에 가로수 식재를 원칙으로 하되 도로의 여건에 따라 융통성 있게 조정 ○가로조명과 교통안내표시판, 가로장치물 등이 차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식재 배치계획 ○간선도로의 교차부분에서는 운전자와 보행인이 도로 변화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수목 식재를 배제하여 시야를 개방 ○2열식재(건물 앞 식재포함)를 원칙으로 하고 일반가로변 식재는 간격 6~8m를 유지하되 버스정차장 주위에는 이용객 및 운전자의 시야확보를 위해 일정거리(20m이상)를 후퇴하여 식재 계획 ○가로변 독자성과 식별성 구현을 위해 일정구간을 기본단위로 수종선택 및 배식기법의 다양화 유도 ○보행밀도가 높은 곳의 가로수는 생육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수목보호대를 폭 1~2m이하로 설치하고 수목보호대를 이용한 다용도 휴게벤치공간(쌈지공원)을 조성 ○지하 공동구와 같은 구조물이 있는 인공 지반 위에 식재 할 경우 1.2m의 토심과 주당 최소 9㎡의 면적을 확보 ○건물과 건물 사이에 가려져 있는 녹지 및 조형물의 전방배치를 유도하여 승/하차장 주변 위주로 POCKET-PARK 형식의 정적 휴게공간 설치를 유도
가 로 장치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로상에 배치되는 각종 가로장치물간의 형태적 부조화를 방지하고, 가로변 이미지의 제고를 위해 가로장치물의 형태, 자료, 색상을 통합, 조절하는 가로장치물 개발 기본전략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이를 가로장치물 설계에 반영토록 함 ○가로별 특화를 위해 가로의 성격에 따라 특정 가로단위로 작성하여 가로별 재료, 형태의 동질화가 이루어져야 함 ○상호보완적 가로장치물은 가급적 통합 설치하여 보도 구간 내에 각종 시설물의 난립을 방지함 ○주요시설 입구, 대중교통수단 승하차지점, 횡단보도 등 주요 집분산 지점에 가로장치물을 집중 설치하여 집약적 효과를 도모하여야 함
조 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의 성격, 기능, 폭원에 따라 적합한 광원, 조도, 배치방식, 간격, 높이 등을 결정하여 설치 ○가로변에는 일정간격으로 설치하며 교차로, 곡선부 로타리, 횡단보도 등 도로구조가 변화하는 곳과 교통안전시설이 집중 설치되는 지점 및 사고다발 예상지점에는 밝은 조명을 설치함 ○보도의 보행자용 가로등은 상호 교호형식으로 배치하고 조명이 발산하는 색감은 가로특성에 알맞게 유도 조정함 ○가로등주를 현재의 Single-arm Bracket에서 부분적으로 Double-arm Bracket으로 개선하여 보도의 조명을 높이고 현재 수은등으로 되어 있는 광원은 보강함

구분	단지내 시설물 계획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는 일반포장구간과 특별포장구간으로 구분하여 가로의 일정 공간단위별로 특화포장하고 휴먼스케일을 고려한 일정 모듈을 개발하여 조성 ○ 가로위계별, 장소별 특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통문양, 새, 꽃 등의 각종 포장패턴을 사용하여 밝은 가로분위기를 조성하고 단순한 형태의 기본패턴과 3~4종의 변형패턴을 조합하도록 함 ○ 대로변 보도는 가로수 식재간격인 8m를 기본모듈로 한 단순한 형태미를 갖은 패턴의 반복을 기본으로 하되 시각적 흥미유발과 방향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보차공존구간은 보행자의 안전이 요구되는 지점에는 거친 재질을 이용하여 서행운전을 유도하고 보행특성에 따라 포장재료의 질감을 다르게 조성함 ○ 보도와 차도가 교차되는 보차혼용통로의 입구 및 공동주차장 출입구 전면의 보도포장은 견고하고 식별성이 용이한 유색 포장재료의 사용을 권장하며, 차도보다는 보도의 연속성이 강조되어야 함
도시안내 표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괄설계 및 통합배치를 통한 형태적 통일성을 기하여 효과적으로 정보전달을 할 수 있어야 함 ○ 안내표지판의 높이, 크기, 형태, 색채, 재질 등 식별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주행 및 보행속도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계 배치 ○ 안내표지판은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유사형태의 안내표지판을 통일하여 일관성을 유지하고 안내판의 크기는 단계를 두어 신축성있게 규격화하여야 함 ○ 식별성과 지역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심볼, 로고 등 그래픽요소를 개발 활용

IV. 지형도면: 게재 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인천광역시 서구 제2024-1159호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차량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제1항 위반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정지 요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22조(운행정지명령대상 자동차의 확인)에 따른 운행정지명령대상 차량으로 확인되었기에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제3항 제4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06. 10.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공 고 기 간 : 2024. 06. 10. ~ 2024. 06. 25.(16일간)

2. 공 고 내 용

1. 행정처분제목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2. 대상차량	등록번호	03거9364 등 13건(붙임 참조)	
	차명		
3. 운행정지사유	소유자의 요청 등		
4. 법적근거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5. 관할관청	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청	담당부서 차량민원과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99(심곡동) (☎ 032-560-4872, FAX 032-560-2793)	

3. 유 의 사 항

-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2)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3) 운행정지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이 가능하며 말소 등록된 자동차(무등록 자동차)를 운행 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4.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서구청 차량민원과 차량관리팀(☎ 032-560-4872)

■ [붙임] 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

연번	자동차등록번호	차명	소유자명	운행정지명령 등록일
1	03거9364	BMW 740d xDrive	이**	2024.05.02.
2	274노9124	BMW X7 xDrive 30d M Sport Package	송**	2024.05.03.
3	40조7929	Golf 1.6 TDI BMT	이**	2024.05.08.
4	86두6557	봉고III 1톤	(**	2024.05.08.
5	16저9042	스파크 1.0 DOHC	이**	2024.05.10.
6	10서3587	E220 d	하**	2024.05.13.
7	243나3621	Tiguan 2.0 TDI	케**	2024.05.13.
8	152다5992	Mercedes-Benz E220 d 4MATIC	하**	2024.05.17.
9	62모8949	i30	백**	2024.05.23.
10	83거0345	포터II 냉동탑차 (PORTER II)	문**	2024.05.23.
11	19보4514	제네시스(GENESIS)	이**	2024.05.28.
12	40나0888	K9	김**	2024.05.29.
13	25서2815	A6 45 TDI quattro	김**	2024.05.30.